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17.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01.8조원, 총지출 384.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추경 전망보다 각각 14.4조원, 16.3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별 결산, 국세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 분석 등 유형별 분석주제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재정 지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46개 주요 공공기관의 결산 분석을 추가하여 재정 전반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정리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분석시리즈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I. 결산 개요 / 3

- 1. 현 황 3
-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6
-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8

II. 주요 현안 분석 / 10

- 1. 성과가 미흡한 대국민 홈페이지 및 앱서비스의 정비 필요 10
 - 1-1. 행정자치부 및 각 부처 정책포털의 통합적 운영 필요 12
 - 1-2. 이용률이 저조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비 필요 14
 - 1-3. 이용실적이 저조한 행정자치부 앱(어플) 서비스의 정비 필요 16
- 2. 정부3.0 추진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19
 - 2-1.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20
 - 2-2. 정부3.0 관련 홍보비 지출 과다 23
 - 2-3.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25
 - 2-4. 정부3.0추진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 및 성과 미흡 27
- 3.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9
 - 3-1.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필요 31
 - 3-2. 행정자치부 시스템 위주의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에 대한 개선 필요 33
 - 3-3. 일부 시스템 구축사업의 활용성과 저조 35



4.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8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39
4-2.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제도의 문제점	43
4-3. 국가시책특별교부세 추진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46

III. 개별 사업 분석 / 49

1. 정부상징 교체 사업의 사업계획 부실	49
2.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	52
3.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의 성과 미흡	55
4.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 집행	58
5.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	61
6.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성과 및 연구용역 공개율 미흡	65
7. 생활공감정책의 국민신문고와의 유사중복 부적정	69
8.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의 성과 제고 필요	73
9.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운영 사업의 성과 미흡	77
10.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중 전문기관 인건비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81
11. 성과가 불확실한 UN전자정부 평가 대응의 개선 필요	83
12. 신기술 적용·확산 사업의 부처간 유사중복 부적정	86
13. 국제IT협력센터구축운영 사업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90
14.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92
15.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의 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95
16. 지자체 대상 성과관리 사업의 통합적 운영 필요	98
17.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사업과 외교부 ODA사업의 유사중복	101



CONTENTS

[인사혁신처]

I. 결산 개요 / 105

- 1. 현 황 105
-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09
-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0

II. 주요 사업 분석 / 111

- 1.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1

III. 개별 사업 분석 / 117

- 1.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사업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117
- 2. 인사혁신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과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 건전육성 사업의 차별성 부족 119
- 3. 해외공직설명회의 실효성 미흡 121
- 4.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연례적인 초과지출 승인 부적정 123
-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사업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125
- 6.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사업범위 조정에 따른 이월 126
- 7. 기금수익 총당금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128



[경찰청]

I. 결산 개요 / 133

1. 현 황	133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6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7

II. 주요 현안 분석 / 138

1.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 인건비 집행의 문제점	138
2. 치안서비스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2
3.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47
3-1. 재정조기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당겨배정 예산집행 부적절	148
3-2.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전용내역 국회보고 시한 준수 필요	152
3-3. 재정집행관리의 내실화 필요	153
3-4. 지방경찰청별 재정정보 공표 필요	156
4.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추진상 문제	158
4-1. 경찰관 상시학습 사업의 적정성 검토	159
4-2. 각 부서 실시 교육사업의 집행방식 부적절	164
5. 경찰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집행 개선 필요	167
5-1. 본청 석유저장소용 석유류 구입비 지출방식 개선 필요	168
5-2. 경찰차량 수리비 중 정기검사비 및 검사대행비 집행 개선 필요	170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172

1.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방안 강구 필요	172
2. 실종아동등 유괴·실종 경보 발령시 유관부처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필요	174
3.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개선 필요	177
4. 무인교통단속장비 임차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179
5.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 제작경비 절감 방안 강구 필요	181
6.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의 급량비 집행 개선 필요	185
7. 예산편성 시 정보화사업의 내용 명시 필요	187
8. 방탄방검복 구입 공고의 문제점	190
9. 경찰업무용 휴대폰 구입 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95
10. 경무인사기획관 관서운영경비 과목정정 집행 개선 필요	198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소관)]

I. 결산 개요 / 203

1. 현 황	203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6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7



II. 주요 현안 분석 / 208

(現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공통 소관)

1. 보전금 지급근거 마련 및 집행관리 필요 208
 - 1-1. 보전금의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 필요 208
 - 1-2. 예산편성내역에 맞는 보전금 집행 필요 210
2. 위촉연구원 보수지급방식 개선 필요 212
 - 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촉연구원 보수지급방식 개선 필요 212
 - 2-2.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위촉연구원 보수지급방식 개선 필요 214

III. 개별 사업 분석 / 217

(現 행정안전부 소관)

1.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공정관리 및 타당성검토 강화 필요 217
2. 민간단체 지원 적절성 재검토 필요 221
3. 체계적인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필요 223

(現 소방청 소관)

4. 안정적인 국가인명구조견 양성 추진 필요 226
5. 119특수구조대 신축청사 지연 및 자산취득 집행 부적절 2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결산 개요 / 237

- 1. 현 황 237
-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9
-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0

II. 주요 현안 분석 / 241

- 1.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241
 - 1-1. 세목조정으로 추진한 일부 내역사업의 비효율적 집행 244
 - 1-2. 국회의원선거 평가회의 사업의 과다집행 246
- 2.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249
 - 2-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관리인력 미확보 250
 - 2-2.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253
- 3.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미흡 255
 - 3-1.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경선관리의 대규모 불용 255
 - 3-2. 민간 위탁선거경비 관련 제도개선 필요 258

III. 개별 사업 분석 / 260

- 1. A-WEB 운영경비의 회원국간 재정분담체계 개선 필요 260
- 2.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263
- 3. 예비금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265



행정자치부
(現 행정안전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¹⁾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1,600만원(0.7%)이 감소한 450억 9,400만원이다.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44억 4,700만원(43.3%)이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79,541	45,410	45,410	45,094	△316	△34,447

자료: 행정자치부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88억원(0.1%)이 증가한 38조 7,196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1,577억 700만원(5.9%)이 증가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정부조직법」 개정(2017.7.26.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됨.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36,561,910	36,883,422	38,690,817	38,719,617	28,800	2,157,707

자료: 행정자치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4억 1,000만원이며, 471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3%인 450억 9,4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3,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0,852	40,852	40,852	45,761	44,146	1,615	0	108.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558	4,558	4,558	0	0	0	0	0.0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369	948	421	0	-
합 계	45,410	45,410	45,410	47,130	45,094	2,036	0	99.3

자료: 행정자치부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조 7,753억 1,4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38조 7,196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321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5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569,526	38,376,921	38,388,774	38,344,060	22,264	22,451	99.9
지역발전특별회계	313,896	313,896	386,540	375,558	9,911	1,072	97.2
합 계	36,883,422	38,690,817	38,775,314	38,719,617	32,174	23,522	99.9

자료: 행정자치부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2017.7.26. 시행)에 따라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²⁾

2) 동 보고서의 결산 현황은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보고서에 따라 조직개편 이전인 舊 행정자치부의 소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가상징선양, ② 정부3.0 변화관리지원, ③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국가상징선양 사업의 내역 중 정부상징체계 교체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상징체계 단일화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15억 1,000만원이 감액(75억 8,000만원 → 60억 7,000만원)되었고¹⁾, 정부3.0 변화관리지원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시·홍보성 예산 1억 2,000만원이 감액(41억 2,500만원 → 40억 500만원)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은 회의운영경비 등 일부 내역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1억 5,000만원이 감액(75억 3,900만원 → 73억 8,900만원)되었다.²⁾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 ②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등이 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 사업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 162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³⁾,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내역 중 개방형·표준형 전환 및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6억원이 증액(190억 7,400만원 → 216억 7,400만원)되었다.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민운동 3단체 지원 사업이 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관련 법령, 사업특성, 지원체계 등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3)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4)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공익적 효과를 제고하고, 국고지원이 효율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⁵⁾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지방교부금(프로그램) 사업이 있다. 지방교부금(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는 추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될 예산이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 사업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⁶⁾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9.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는 ①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혁신 선도, ② 지자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증진,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한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 ④ 정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과학수사의 신뢰 제고를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의 일부 성과가 미흡한 정책포털과 대국민 홈페이지 및 앱의 정비와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24(www.gov.kr)’과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같은 정책포털은 성격과 유형이 비슷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온라인 창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3.0 서비스 알리미(gov30.go.kr)’,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 ‘정보공개포털(open.go.kr)’ 등 대국민 홈페이지는 이용률 기준으로 성과가 매우 저조함에도 계속해서 운영되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둘째, 행정자치부가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추진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등은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라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여 행사경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정부3.0 홍보비를 당초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지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셋째,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는 연례적으로 전자정부지원 사업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지출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시스템 구축의 성과가 미흡하였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추진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가 기 구축 운영중인 3개 시스템만의 통합이고 복지·노동·교육과 같은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통합적 운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넷째, 최근 들어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자체노력 반영액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과 세출절감·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센티브의 반영액이 과도해지면 재정부족액의 보전이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일부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와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운영’,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여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새마을운동세계화(ODA)’ 등의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타 부처 사업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성과가 미흡한 대국민 홈페이지 및 앱서비스의 정비 필요

행정자치부는 행정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위하여 2016년 말 현재 총 114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크게 백오피스(Back Office) 시스템,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시스템, 대국민 온라인 포털시스템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백오피스 시스템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정부문서 유통, 전자결재 등), 하모니시스템(행정자치부 내부 직원용 문서유통, 정보보고 등),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정부 영상회의 처리)과 같이 중앙부처 및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며,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은 민원24(온라인 민원신청, 생활정보제공 등)와 같이 대국민 민원신청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국민 온라인 포털시스템은 국가대표포털(www.korea.go.kr)¹⁾,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행정자치부 기관 홈페이지(www.moi.go.kr)와 같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업무관련 정보제공과 사업홍보를 위한 포털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2016년에 총 2,618억원을 집행하였다. 이 중 백오피스 시스템을 제외한 대국민 홈페이지(프론트 오피스 시스템 상의 대국민 홈페이지와 대국민 온라인 포털시스템의 대국민 홈페이지)는 1365자원봉사포털, 내고장알리미, 생활공감 국민행복 등 총 20개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대국민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6년에 15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15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와 별개로 행정자치부는 정부24, 스마트위택스, 디엠지기 등 12개의 대국민 정보제공 앱(어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앱 서비스의 구축·운영은 대부분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집행되고 있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2017년 4월부터 국가대표포털이 ‘정부24(www.gov.kr)’로 개편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홈페이지명	홈페이지 주소	2016		2017 예산	방문자수(명) /페이지뷰(건)
			예산	결산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운영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	75	75	75	907,392
자원봉사1365 시스템 운영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1,740	1,737	830	약 3,000,000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운영	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	219	219	219	14,088
지방세정보화	위택스	www.wetax.go.kr	1,496	1,496	1,339	1,075,173
정부포상	대한민국 상훈	www.sanghun.go.kr	88	84	164	110,268
생활공감정책추진	생활공감 국민행복	www.happylife.go.kr	143	122	127	6,857
전자민원문서시스템	민원24	www.minwon24.go.kr	2,971	2,923	3,573	9,678,875/ 104,443,253
정부30변화관리지원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www.gov30.go.kr	28.6	28.6	45	8,287
정보공개 활성화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865	848	1,041	9,382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938	938	939	96,594/ 593,740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	대한민국정부포털	www.korea.go.kr	2,204	1,961	2,421	1,418,976/ 145,077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공공I-PIN센터	www.gpin.go.kr	1,798	1,798	1,319	145,077(가입) 207,587(인증)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www.privacy.go.kr	439	439	439	136,358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go.kr	693	693	898	225,185
지방행정공동 정보시스템지원	지방행정데이터개방	www.localdata.kr	200	200	200	4,720
행정공간정보 시스템유지보수	생활공감지도	www.gmap.go.kr	356	356	356	10,282/ 47,406
정보화마을조성 및 활성화	정보화마을(invil)	www.invil.org	407	407	325	269,866/ 1,234,431
국가기록서비스 정보화추진	국가기록포털	www.archives.go.kr	307	285	308	1,093,692/ 4,345,530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구축	대통령기록포털	www.pa.go.kr	350	330	350	200,856/ 341,235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국민대통합위원회	www.pcnc.go.kr	132	125	120	약7,000/ 약74,000
합 계			15,450	15,065	15,088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앱(어플) 서비스의 유지보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앱(어플)명	2016년		누적 다운로드 건수(건)
		예산	결산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운영	정부24(구 민원24)	2,204	1,961	측정불가
지방세정보화(정보화)	스마트위택스	1,496	1,496	640,162
지역발전활성화	자전거 행복나눔	165	165	측정불가
전자민원문서시스템	민원24 모바일	2,971	2,923	2,454,170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주소찾아(juso)	144	144	측정불가
정부3.0변화관리지원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28.6	28.6	770,000
접경권발전지원	디엠지기	88	88	측정불가
정보공개 활성화	정보공개	865	848	5,339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운영	대한민국정부포털	2,204	1,961	53,950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공공I-PIN서비스	10	10	407,779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인허가자가진단	356	356	53,573
	생활불편신고			1,391,922

자료: 행정자치부

1-1. 행정자치부 및 각 부처 정책포털의 통합적 운영 필요

가. 현 황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홈페이지 중 정부24(www.gov.kr), 정부3.0 서비스 알리미(www.gov30.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은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원신청 및 제안기능을 수행하며,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포털은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책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포털이 정부24, 정책브리핑, 경제혁신포털 등 7개이고, 민원신청 및 제안기능을 수행하는 포털이 정부24,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7개, 복지·일자리 정보제공 및 신청 포털이 워크넷, 창업넷 등 3개, 기타 정보제공 포털이 4개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포털들은 각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신청 및 접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포털 현황]

유형	포털명	주관기관	주요내용	도메인
정책정보 제공	대한민국정부포털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 및 정부소식	korea.go.kr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뉴스 및 일일브리핑	korea.kr
	비정상외 정상화	국무조정실	기관별 정상화 과제소개	normal.go.kr
	경제혁신포털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economy.go.kr
	규제정보포털	국무조정실	규제정보	better.go.kr
	정부3.0	행정자치부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gov30.go.kr
	위민넷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지원정책	women.go.kr
민원신청 및 제안	정부24(구 민원24)	행정자치부	민원포털	gov.kr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제안	epeople.go.kr
	안전신문고	국민안전처	안전관련 신고 및 제안	safepeople.go.kr
	규제개혁신문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고 및 제안	better.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등록 등의 신고	efamily.scourt.go.kr
	온라인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청구 및 사건조회	simpan.go.kr
	위택스	행정자치부	지방세 신고납부 포털	wetax.go.kr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신청	worknet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보	work.go.kr
	창업넷	중소기업청	창업포털	k-startup.go.kr
	복지로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신청	bokjiro.go.kr
기타 정보 제공	온나라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포털	onnara.go.kr
	문화포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	culture.go.kr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자치부	공공정보개방포털	data.go.kr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포털	kosis.kr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신청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포털을 가능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민원업무 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들이 각기 운영하고 있는 정부포털들은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신청 및 접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민원을 신청하는 온라인 창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대표포

털(www.korea.go.kr)'과 '정책브리핑(www.korea.kr)'은 정부정책과 정부뉴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정책포털이지만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행동요령 정보를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정부포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중 어디에 방문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정부포털이 분야별로 정책정보, 민원정보, 복지·일자리 정보 등으로 나뉘고 분야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포털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자정부 대국민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자정부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 등은 정부포털 운영의 방향을 국민들이 가급적 '하나의 정부(One Government)' 아래 필요로 하는 정보와 민원을 신청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모든 행정기관의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gov.uk)으로 통합하여 각 기관별 홈페이지와 콘텐츠가 대표 도메인의 하위로 운영되는 통합형 방식으로 정부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는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주제별, 서비스 혜택별로 통합하는 부분통합형 방식으로 정부포털을 운영하고 있다.²⁾

1-2. 이용률이 저조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비 필요

가. 현 황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20개의 대국민 홈페이지들은 행정자치부의 개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온라인상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업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민원 24, 대한민국 상훈, 1365자원봉사포털 등)와 행정자치부 및 정부 전체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기관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내고장알리미,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생활공감 국민행복 등)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일부 성과가 미흡하고 콘텐츠가 유사한 홈페이지들에 대해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도메인 go.kr 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2차 도메인(예컨대, 행정자치부는 www.moi.go.kr, 기획재정부는 www.mosf.go.kr)을 부여받아 각 기관별 대표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 중 정부3.0 서비스 알리미(gov30.go.kr),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 정보공개포털(open.go.kr), 국민대통합위원회(pcnc.go.kr) 등은 2016년 기준 월평균 방문자수(로그수)가 1만건 미만, 일평균 접속건수가 333건 미만이다. 또한 내고장알리미(laiis.go.kr), 지방행정데이터개방(localdata.kr), 생활공감지도(gmap.go.kr) 등은 월평균 페이지뷰가 5만건 미만이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일부 대국민 홈페이지는 이용률이 매우 낮아 대국민 정보제공과 민원처리 창구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매년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 집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일부 홈페이지가 이용률 기준 성과가 저조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기존에 타 부처 또는 타 사업과 유사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 홈페이지와 유사 홈페이지의 내용 비교]

행정자치부 소관 홈페이지명	수록 콘텐츠	유사 홈페이지	
		홈페이지명(소관)	수록 콘텐츠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gov30.go.kr)	정부3.0 정부정책 및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정부24 (gov.kr, 행자부)	분야별 정부정책 및 공 공서비스 맞춤형 검색
생활공감 국민행복 (happylife.go.kr)	생활공감 관련 민원 신 청 및 정책제안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권익위)	분야별, 주제별 정부정 책 개선사항 제안
지방행정데이터개방 (localdata.kr)	지자체 인·허가 관련 업종별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행자부)	공공부문 분야별 데이 터 개방 포털
내고장알리미 (laiis.go.kr)	지자체별 행정지표 (행정구역, 지방재정 등)	국가통계포털 (kosis.kr, 통계청)	지역통계(지자체 및 지 방지표 등) 종합 포털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예컨대, 정부3.0 서비스 알리미(gov30.go.kr)는 정부3.0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성별, 연령별 등 맞춤형 혹은 조건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포털로 기존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대표포털(korea.go.kr)과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 공감이 갈 만한 제안사항 등을 신청·접수하는 홈페이지로서 분야별, 주제별 정부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차별성이 미흡하다. 다음으로, 지방행정데이터개방(localdata.kr)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를 개방하는 포털인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유기적인 연동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내고장알리미(laiis.go.kr)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단체별 행정지표(행정구역, 지방재정 등)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포털이지만,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도 지자체 및 지방지표와 관련된 각종 지역통계를 제공하고 있다.³⁾

1-3. 이용실적이 저조한 행정자치부 앱(어플) 서비스의 정비 필요

가. 현 황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은 총 1,265개이며, 앱당 평균 개발비용은 6,900만원, 총 구축비용은 643억원, 앱당 평균 유지율⁴⁾은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앱의 평균 다운로드 수(누적)는 97,307건, 이용자수(누적)는 평균 19,342명이었다.

이러한 공공앱 중 행정자치부가 운영중인 앱은 정부24, 스마트위택스, 디엠지기 등 12개이다.

3) 뿐만 아니라 내고장알리미의 월평균 페이지뷰가 1,501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실적이 매우 미흡하였다.

4)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이후 삭제하지 않고 사용 중인 비율

[우리나라 공공앱 현황(2016년 말 현재)]

구 분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 앱		1,265개	297개	595개	373개
신규개발('16년) 앱		175개	39개	87개	49개
다운로드 수	합계	122,996,153	43,665,415	11,762,882	67,567,856
	평균	97,307	147,518	19,770	181,147
이용자 수	합계	24,447,808	8,592,128	3,058,029	12,797,651
	평균	19,342	29,027	5,140	34,310
유지율(%)		19.8	19.6	25.9	18.9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일부 대국민 앱은 국민들의 실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일부 앱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다운로드실적과 유지실적이 저조하였고, 일부 앱서비스는 타 공공앱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정부3.0알리미서비스’, ‘정보공개청구’, ‘디엠지가’ 등의 앱서비스는 앱 개발 및 배포연도(서비스 개시일)가 2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총다운로드 건수가 5만 여건 이하로서 공공앱의 평균인 97,307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엠지가’의 경우 총 다운로드 건수가 1,058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디엠지가’는 이용자수가 1만 여명 이하로서 공공앱의 평균인 19,34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디엠지가’의 경우 이용자수가 354명에 불과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운영중인 앱서비스의 실적 현황(2017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

앱서비스 명	총다운로드수(A)	이용자수(B)	유지율(B/A)	서비스개시일
정부24모바일	2,438,443	338,539	13.9	2013.05.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1,042,761	275,444	26.4	2012.01.
스마트위택스	606,657	301,327	49.7	2014.07
공공-I-PIN서비스	407,779	469,907	115.2	2012.06.
주소찾아	289,156	332,933	115.1	2012.06.
자전거행복나눔	128,240	38,107	29.7	2013.01.
정부3.0알리미서비스	50,926	22,307	43.8	2013.09.
인허가자가진단	57,766	10,466	18.1	2012.08.
정보공개청구	5,423	958	17.7	2013.01.
디엠지기(DMZ)	1,058	354	33.5	2014.12.

주: 이용자수는 다운로드 받은 앱을 삭제하지 않은 사람의 수입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3.0이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부처간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¹⁾ 정부는 2013년 6월 ‘정부3.0 비전선포식’, 2014년 9월 ‘정부3.0 발전계획 수립’ 및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2015년 7월 ‘정부3.0 가속화 계획’ 등을 통해 정부3.0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 성과공유 및 교육, 행정기관 평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전자정부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정부3.0 추진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16년 행정자치부의 사업 중 정부3.0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사업은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전자정부지원 등 6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 중 정부3.0 추진 관련 내역의 2016년 예산액은 421억 400만원, 집행액은 393억 500만원이다.

[2016년 행정자치부 정부3.0 추진 관련 사업의 내역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정부3.0 추진 관련 내역	2016	
		예산액	집행액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정부3.0 성과공유 및 확산·교육	2,462	2,779
	정부3.0 컨설팅·평가단 운영 및 지자체 확산	923	621
	정부3.0 국민참여형 정책운영(국민디자인단)	520	510
	정부3.0 일하는방식 개선 및 협업 확산	100	63
	소 계	4,005	3,97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데이터 품질 개선 등	21,674	21,674
행정생산성 향상 지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확산	649	545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1,028	520
정보공개활성화	원문정보공개서비스	1,014	994
전자정부지원 (정부3.0 추진관련과제)	정책정보(행정서비스)통합제공	11,700	9,709
	법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경영)구축	2,034	1,890
	소 계	13,734	11,599
합 계		42,104	39,305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행정자치부(2017.5),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행정자치부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정부3.0으로 인해 정부3.0 추진기반이 확산되고(정부3.0 국민인지도 2015년 47.2% → 2016년 72.0%), 투명한 정부가 구현되었으며(2016년 OECD 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 1위 달성), 서비스 정부가 구현되었고(2016년 정부3.0 서비스알리미 모바일앱 서비스 개시), 유능한 정부가 구현되었다고(부처 영상회의 2013년 1.3만회 → 2016년 9만회) 설명하였다.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정부3.0 추진의 주요 성과]

분야	주요 성과
정부3.0 추진기반 마련 및 확산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 제정(2013년)
	정부3.0 평가대상 확대(2014년 288개 → 2015년 535개)
	정부3.0 체험마당(2015년 1회, 2016년 2회)를 통한 국민체감 제고
	정부3.0 국민인지도 제고(2015년 47.2% → 2016년 72.0%)
투명한 정부 구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3개 전면개방(2015년 11개 → 2016년 22개)
	원문정보공개제도 세계 최초 시행(2014년)
	OECD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 1위 달성(2016년)
서비스 정부 구현	안심상속 서비스 13만건, 행복출산 서비스 19만건
	공공요금 감면 신청 대행 60만명
	정부3.0 서비스알리미 모바일앱 서비스 개시(2016년)
유능한 정부 구현	고용복지+센터 확대(2016년 70개소)
	공동이용 행정정보 확대(2016년 153종)
	부처 영상회의 확산(2013년 1.3만회 → 2016년 9만회)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가. 현 황

행정자치부는 정부3.0 변화관리 지원사업²⁾의 내역으로 2016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 추진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3.0 관련 각 부처별, 지자체별, 공공기관별 핵심사업과 핵심주제에 대한 체험관을 마련하여 전시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체험관 전시 이외에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3.0 국제컨퍼런스 등 부대행사도 같이 개최하였다.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3-307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당초 예산은 15억원(1회당 7억 5,000만원씩 2회)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 집행액은 18억 6,8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장 구성(전시관·부스 설치, 부대행사 등)에 15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홍보비로 3억 9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관련 예산편성 및 실제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실제집행	
내역	예산액	내역	집행액
국민체험마당 행사장 구성 및 운영	1,177	국민체험마당 행사장 구성 및 운영	1,559
개막행사(주무대 구성 등)	100	국민체험마당 대행용역	675
행사장 체험관, 전시부스 설치 등	560	행사장 공용시설물 설치	599
행사장 운영(행사진행, 안전관리 등)	189	행사장 체험관 설치 등	44
부대행사	118	행사장 등록데스크 등 설치	71
주행사장, 부대회의장 임차	210	영상장비 임대 등 기타	170
국민체험마당 홍보 등	323	국민체험마당 홍보 등	309
가로등 배너 및 현수막 등 설치	70	가로등 배너 및 현수막 등 설치	54
대중교통이용 광고	40	광역버스 광고 제작·설치	43
온라인 활용홍보	25	홈페이지 제작 및 네이버 검색광고 등	55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50	온라인기자단 운영 및 이벤트 등	41
포스터 제작	30	국민체험마당 포스터 제작 및 배송	25
동영상 제작	30	지하철 광고 제작·설치 등	56
전단지 및 안내책자 제작	38	육교현판, 옥외홍보 제작·설치	22
사전홍보이벤트 및 기타 업무추진 등	40	키비주얼 디자인 및 바레이션	13
합 계	1,500	합 계	1,868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첫째, 행정자치부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여 행사경비를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행사는 정부3.0 대국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는 2016년 2회에 걸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약 14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부3.0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6년 6월과 11월에 2회 개최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체험관 운영과 각종 부대행사 개최 등 이벤트와 정부 정책 홍보가 주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6월에 개최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서울 COEX)에서는 열림관, 생애관, 맞춤관, 데이터관 등 6개 체험관과 100개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11월에 개최된 정부3.0 국민체험마당(부산 BEXCO)에서는 중앙·공공·지방 대표성과, 정부혁신특별관 등 87개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당초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예산액은 15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6,800만원을 초과한 18억 6,800만원이었다.

국회는 201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사업의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³⁾, 이에 따라 당초 행정자치부가 행사개최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안도 1억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가 관련 집행액을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경비로 사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행사 경비를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행사 경비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체험콘텐츠 및 전자정부 수출관 구축을 위해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사업의 예산 8,500만원을 사용하였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맞춤형 서비스관과 미래정부서비스관 제작을 위해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의 예산 6,000만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원 기본경비’, ‘기록물보전시설관리’ 사업 등의 예산을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전시관과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과학수사감정지원’ 사업의 예산을 체험마당 수출관 제작, 과학수사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계획에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행사 경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이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행사개최와 부합한다고 보기에 어렵다.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2015.11),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최 관련 다른 세부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정부3.0 체험마당 관련 내역	집행액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국민체험마당 체험콘텐츠 제작, 전자정부 수출관 장비 렌탈료 등	85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체험마당 맞춤형 서비스관, 미래정부 서비스관 기획 및 제작	60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및 콘텐츠 제작	60
기록정보서비스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콘텐츠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18
기록원기본경비	국민체험마당 차량임차	1
기록물보전시설관리	국민체험마당 전시부스 제작	20
과학수사감정지원	국민체험마당 수출관 제작, 과학수사체험교실 운영 등	30
합 계		274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2-2. 정부3.0 관련 홍보비 지출 과다

가. 현 황

행정자치부는 정부3.0 변화관리 지원사업의 내역으로 정부3.0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비를 지출하였다. 2016년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은 6억 2,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6억 8,400만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정부3.0 홍보사업을 통해 정부3.0 대국민 인지도가 2015년 47.2%에서 2016년 말 기준 72.0%로 상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는 성과가 불확실한 홍보사업비를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예산에 편성한 홍보사업의 예산액 6억 2,500만원보다 5,900만원을 초과한 6억 8,400만원을 홍보사업에 지출하였다.

홍보사업 집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등의 인쇄물 제작으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웹진 및 온라인 홍보로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밖에 범정부적 성과공유 홍보, 정부3.0 홍보대사 위촉, 정부3.0 달인 인증패 제작 등 추가적인 홍보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예산과 계획보다 많은 금액과 물량의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인쇄물 제작과 일회성 홍보이벤트가 주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정부3.0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일방향적인 대규모 물량투입 중심의 홍보라는 점에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쌍방향적인 가치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업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정부3.0 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실제 집행	
내역	내용	예산	내역	집행액
홍보동영상 제작	25백만원×2회	50	홍보대사 영상자료 및 홍보영상 제작 정부3.0 알리미 홍보영상 등	146 17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제작	브로슈어 4,000부, 리플릿 6,000부 포스터 2,000부	42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기념품 제작	69
국민접점 지역 홍보물 제작	극장광고 제작 및 송출 유동인구 밀집지역 홍보	220	-	0
웹진 및 온라인 홍보	SNS이벤트 운영 및 광고	84	정부3.0 홈페이지 및 서비스 알리미 앱 운영 웹콘텐츠 제작 등	171
박람회 전시부스 참가	5백만원×5회	25	ICA서울총회 전시부스 제작	15
방송 등 광고비	TV,라디오 광고 제작 및 송출지면광고	94	TV, 광고료, 일간지 등	129
정부 3.0 홍보기획 컨설팅	40백만원×2회	80	범정부적 성과공유 홍보	109
정부 3.0 국민디자인 과제 홍보	언론 홍보프로그램 실행	30	정부3.0 홍보대사 위촉식 등 정부3.0 달인 인증패 제작 등	23 5
합 계		625	합 계	684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3.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의 제안·결정·집행 등 정책의 모든 단계에 국민·디자인·공무원이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부터 정부3.0 변화관리 지원사업의 내역으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왔다. 이와 관련된 2016년 예산액은 5억 2,000만원으로 이중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예산은 전액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집행되었다.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수요자) 입장에서 개발하기 위해 팀별로 7명 내외(공무원 1명, 서비스디자이너 2~3명, 국민디자이너 2~3명)로 구성된다. 2016년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275개 기관이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참여하였고 총 382개 과제에 대하여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수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정책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였지만, 활동기간과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382개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및 과제의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우수사례라고 밝힌 내역들을 살펴본 결과, 국민디자인단의 성과가 대부분 ‘홈페이지 개발 및 앱서비스 개발 제안’⁴⁾,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제안’,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추가기능 개선 제안’, ‘사업명칭 변경 혹은 사업구역 디자인’⁵⁾ 등으로 대부분 홍보 및 추가기능 개선 제안이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취지가 정부의 정책 및 과제의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

4) 정부3.0 국민서비스디자인단 우수사례 중 “Life Detox 농촌여행 힐링시스템(농림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약처)” 등의 사례임.

5) 정부3.0 국민서비스디자인단 우수사례 중 “온정있는 도민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 배려 정책’ 만들기(전라남도)”, “주민-구청 협력 원룸 주변 무단배출 쓰레기 저감대책(광주광역시 동구)” 등의 사례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실제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디자인단의 활동기간이 3~5개월이고, 정책형성과정에서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홍보나 기능개선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향후 국민디자인단이 지속가능한 제도로써 운영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이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디자인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현황 및 운영 성과]

과제명	주관	국민디자인단 운영 성과
“Life Detox” 농촌여행 힐링시스템 -수요자 맞춤형 농촌관광 서비스 제공	농림부	SNS이벤트 등을 통한 정보접근 채널 확대 ‘월촌’포털 사이트 기능개선 등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식약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임신부의 날 정보제공 SNS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등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통합 서비스	관세청	해외직구 정보통합 서비스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용자 중심 디자인 설계, 단계별 검색기능 강화 등)
요리, 가공, 수출을 통한 6차산업화 및 농가소득 향상	농진청	홍보기획(소비자 중심 홍보 강화), 품목개발, 버섯 맛집(메뉴개발 등)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디자인단 브랜드화, 골목특성에 따른 골목유 형화(골목 이름짓기) 등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협의회 구성, ‘관악구 안심골목길’ 브랜드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우리마을 교육나눔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추진
주민-구청 협력 원룸 주변 무단배출 쓰레기 저감대책	광주광역시 동구	분리배출함 미설치 원룸 현황파악, 분리수거 홍 보, 플래카드 긍정 문구 도안 등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전라북도 익산시	문화예술거리 후보지 답사 및 후보지 선정
온정있는 도민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 배려 정책’ 만들기	전라남도	실버존 재설계(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명칭 변경 (노인보호구역 → 어르신보호구역) 등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4. 정부3.0추진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 및 성과 미흡

가. 현 황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사업⁶⁾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10억 2,800만원 중 4억원은 이용감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50.6%인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3.0 추진의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각 부처가 실행력있게 추진하게 하는 등 정부3.0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회이다.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1,028	1,028	0	△400	628	520	0	108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정부3.0추진위원회의 2016년도 회의 개최 및 의제발굴 실적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의 2016년 예산과 계획에는 본위원회를 12회 개최하고 회의당 8명(민간위원)이 참석하며, 분과(전문)위원회를 162회 개최하고 회의당 4명(민간위원)명이 참석하며, 전문가간담회를 12회 개최하고 회의당 10명(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총 2억 9,940만원의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회는 10회 개최되고 회의당 평균 5.7명이 참석하였으며, 분과(전문)위원회는 84회 개최되고 회의당 평균 3.9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위원회와 분과(전문)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회의당 평균 참석인원도 저조하여 회의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의 집행액은 9,019만원에 그쳤다.

6)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3-308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회의개최 관련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당초 예산내역			실제 집행내역		
	참석수당 (산정내역)	안건검토수당 (산정내역)	소계	참석수당	안건 검토수당	소계
본위원회	14,400 (150천원×8명×12회)	19,200 (200천원×8명×12회)	33,600	7,200 - 10회 개최 - 평균 57명 참석	10,400	17,600
분과위원회	97,200 (150천원×4명×9분과×18회)	129,600 (200천원×4명×9분과×18회)	223,800	41,350 - 84회 개최 - 평균 39명 참석	31,240	72,590
전문가간담회	18,000 (150천원×10명×12회)	24,000 (200천원×10명×12회)	42,000			
합 계			299,400	합 계		90,190

자료: 행정자치부

또한 본위원회가 10회 개최되었지만 이 중 7회는 민간회의(서면회의)였고 3회의 본위원회 정기회의에서의 심의·의결은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1건에 불과하였으며, 회의안건의 대부분은 각 부처 및 정부3.0 추진 단위의 업무계획 보고와 검토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3.0추진위원회의 정부3.0 추진과 관련된 의제발굴과 의결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개최가 전반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대부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석 및 컨퍼런스 개최 등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 또한 당초 계획에는 분과별로 4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2건의 연구용역만을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

[2016년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본위원회 정기회의 안건내역]

날짜	회차	회의안건
1.28	7차	-검토(4): 정부 3.0 7대 핵심과제 추진 및 예산사업 관리, 정부3.0 생활화 전략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정부3.0 통합홍보 추진방향
4.28	8차	-보고(4): 정부 3.0 7대 핵심과제 추진상황(위원회), 정부3.0 인프라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미래부) 2016년 정부3.0 체험마당 추진계획(행자부) 정부3.0 성과평가 추진방향(행자부)
8.19.	9차	-심의·의결(1):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보고(5): 정부3.0 발전방안 추진계획(안) 정부3.0추진위원회 2기 운영계획(안)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모바일앱 개통 하반기 정부3.0 체험마당 기본계획(안), 정부3.0 기관 성과지표 보고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자치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부처 간 연계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6년도 예산은 1,237억 500만원이며, 전액 출연금(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으로 집행되었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전체 추진계획과 성과관리 및 지원예산을 검토·확정하고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관리, 감리 및 사업비 집행을 수행한다. 전자정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후보사업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주관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구축·완료된 시스템 결과물을 인수·운영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4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집행하였다. ①‘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야는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구축’(16억 3,200만원),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50억 7,900만원) 등 6개 사업을 집행하였고, ②‘실시간 대응으로 안전한 사회 실현’ 분야는 ‘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 구축’(261억 7,800만원),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87억 9,300만원) 등 8개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③‘기관간 칸막이 해소로 유능한 정부 구현’ 분야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e-호조)’(20억 7,100만원) 등 10개 사업을 집행하였고, ④‘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인프라 확대’ 분야는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75억 1,700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36억 6,400만원) 등 7개 사업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 분야별 내역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연번	사 업 명	주관기관	2016	
				예산	집행
맞춤형 서비스 (6)	1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산업부	1,909	1,632
	2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국토부·법원·행정처	5,288	5,079
	3	소비자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공정위	3,200	3,215
	4	정책정보(행정서비스)통합제공	행자부	11,700	5,566
	5	수혜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과제포함 1,2차로 발주)			4,636
	6	종합취업정보 및 연관정보 포털	고용부	1,000	965
안전한 사회 (8)	7	국가수문기상 통합관리시스템	국토부 등	2,579	2,356
	8	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 구축	안전처	27,290	24,008
	9	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 구축 신축공사-건설공사			2,170
	10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산림청	4,970	4,786
	11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환경부	3,750	3,168
	12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처	1,500	1,415
	1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3,500	2,291
	14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안전처	9,100	8,793
유능한 정부 (10)	15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행자부	3,200	2,718
	16	국가자금세탁방지시스템구축	금융위	3,290	3,163
	17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구축	통계청	5,734	5,171
	1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e-호조)	행자부/교육부	4,744	2,071
	1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에듀파인)			2,521
	20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종합DB 구축	농식품부	3,140	2,643
	21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법무부	1,433	1,191
	22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확산 사업	외교부	1,800	1,740
	23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	3,050	2,885
	24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조달청	2,280	2,204
전자정부 인프라 (7)	25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행자부	1,540	1,498
	26	법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경영)구축	행자부	2,034	1,964
	27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체계 강화	행자부	1,000	822
	28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환구축	행자부	1,949	1,595
	29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행자부	7,142	7,517
		* 과제포함: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보안성 강화		800	
	3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행자부	1,000	939
	31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	행자부	3,783	3,664
30개 과제 31개 사업 합계				123,705	114,388

자료: 행정자치부

3-1.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사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직접사업비 이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자정부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6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 중 관리비로 배정된 예산액은 48억 5,800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 4,500만원이다. 이러한 관리비의 세부내역별 집행액은 사업운영비 17억 7,000만원, 교육비 2,200만원, 용역비 12억 5,700만원, 비정규직보수 6억 9,600만원 등이다. 관리비의 실집행주체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다.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 및 직접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예산액 및 집행액			잔액
	세부항목	배정액	집행액	
관리비	소계	4,858	3,745	1,113
	사업운영비	2,397	1,770	627
	교육비	81	22	59
	용역비	1,383	1,257	126
	비정규직보수	997	696	301
직접사업비		118,847	110,643	8,204
합 계		123,705	114,388	9,317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2012년까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의 3% 이내에서 관리비를 편성하였지만, 2014~2016년까지는 3.67%에서 4.27%까지 관리비 편성비율을 늘렸다. 이에 따라 관리비의 배정액은 2012년 32억원에서 2016년 4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 및 관리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108,659	68,847	83,922	121,487	123,705
관리비	3,235	2,907	3,580	4,463	4,858
(비율)	(2.98%)	(4.2%)	(4.27%)	(3.67%)	(3.92%)

주: 비율은 예산액 대비 관리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2016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 중 일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지출하였다.

2016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 중 사업운영비는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7억 1,900만원, 전산처리관리비 2억 8,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989만원 등으로 집행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전산처리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출연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자정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력과 업무량에 따라 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산처리관리비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체의 전산자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체의 경상운영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전자정부지원 사업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16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 중 사업운영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소모성 물품, 인쇄비 등	사무용 물품, 인쇄비, 사용료 등	163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전문가 자문대가, 사업 평가 등	719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화요금, 수도전기요금 등	100
임차료	행사 장소 및 차량 임차 등	33
전산처리관리비	그룹웨어,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 유지보수 비용	282
국내여비	업무수행 관련 출장 비용	250
일반업무비	회의 및 행사관련 기타 잡비	137
기타	광고료, 특근매식비, 국외업무여비, 연구기자재비	86
합 계		1,770

자료: 행정자치부

다음으로, 2016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 중 용역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자정부 사업관리로 4억 2,900만원, 정책연구로 7억 8,300만원 등으로 집행되었다.

이 중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전자정부 거버넌스 개선방안 및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 ‘바람직한 전자정부 모델 연구’, ‘전자정부 50년사 편찬’, ‘전자정부서비스 수준진단모델 개발’ 등은 내용상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관리비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16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 중 용역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집행액
전자정부 사업관리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292
	전자정부지원 사업 이용자만족도 조사	35
	전자정부지원 사업 사업관리지원체계 개선	102
정책연구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117
	전자정부 거버넌스 개선방안 및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	40
	바람직한 전자정부 모델 연구	36
	전자정부 50년사 편찬	210
	2017년 전자정부 트렌드 조사	17
	전자정부 이슈매거진 'D.gov' 제작 및 배포	29
	전자정부서비스 수준진단모델 개발	30
	행정·공공기관 등의 전자정부서비스 정비·개선	101
	2016년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사무국 운영	203
합 계		1,212

자료: 행정자치부

3-2. 행정자치부 시스템 위주의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에 대한 개선 필요

가. 현 황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한곳에서 통합안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은 2015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내역인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BPR/ISP 수립(2015년 집행액 9억 4,800만원)'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내역인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1차 및 2차 사업(2016년 집행액 97억 900만원)으로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1차(52억 4,700만원) 사업을 통해 행정자치부 내 시스템인 민원24, 대한민국 정부포털, 알려드림e를 통합하고 통합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2차(44억 6,200만원) 사업을 통해 타기관 서비스 연계, 인증수단 개선, 기반체계 보안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집행액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1차	3개 시스템(민원24, 대한민국 정부포털, 알려드림e) 통합, 통합 포털 홈페이지 구축	5,247
	서비스 접근채널 다양화(모바일 강화)	
	민원24 전자정부표준 시범적용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 확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2차	다양한 인증수단(디지털 ID)	4,462
	온오프라인(O2O) 서비스 시범제공	
	타 시스템 행정서비스 연계(22종 서비스)	
	기반체계 보안강화	
합 계		9,709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을 통해 구축한 3개 시스템 통합포털의 명칭을 ‘정부24(www.gov.kr)’로 명명하고 2017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나. 분석의견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구축은 행정자치부가 기 구축 운영중인 3개 시스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통합적 운영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은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일일이 13,000여개에 달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단일한 온라인 대국민 창구를 통해 행정수혜서비스·민원사무·생활정보를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반면에 타 부처가 구축 운영중인 복지로(보건복지부), 워크넷(고용노동부), 기업마당(중소기업청), 네이스(NEIS)(교육부), 홈텍스(국세청) 등과의 연계 및 통합은 2015년 말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향후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통해 구축한 ‘정부24’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고용, 복지 수혜서비스의 목록을 연령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뿐이고, 실제 서비스의 신청은 관련 부처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오프라인 상에서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창구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보유기관의 협조를 통해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3. 일부 시스템 구축사업의 활용성과 저조

가. 현 황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과제로 추진한 사업 중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은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실거래신고, 등기 등의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6년 집행액은 48억 9,700만원이다.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은 각종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하여 범정부적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6년 집행액은 84억 5,800만원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은 2016년 시범사업 결과 시스템 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된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2016년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표준화가 계발되었고 상반기에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의 6대 광역시로 시범사업이 확대된 바 있다.

그런데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서울 서초구의 시범운영(2016년 8월 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건수가 540건으로 시스템 활용률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구축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공인중개사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사용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 등 소득이 파악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따라서 동 사업은 기능개선이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통한 고도화보다 시스템 활용률이 전

반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국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전자계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사업내역		
	사업 내역	예산액	집행액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원인증서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전자등기관리시스템 구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 유관시스템 연계 및 안전거래 시스템 구축	5,288	4,897

자료: 행정자치부

둘째,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은 재난안전체계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국민안전처의 부서별 소관 시스템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에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인 국민안전처는 전자지도(GIS) 기반의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확대, 재난관리 업무지원 및 재난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확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확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공공헬기 공동 활용시스템 고도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기능보강 및 서비스 확대 등 6가지의 개별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국민안전처의 12개 부서에서 운용중인 것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스템간 연계와 통합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개별 시스템의 확대 또는 고도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사업내역		
	사업 내역	예산액	집행액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	① 전자지도(GIS) 기반의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확대 ② 재난관리 업무지원 및 재난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대 ③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확대 ④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⑤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 고도화 ⑥ 재난영상전송시스템 기능보강 및 서비스 확대	9,100	8,458

자료: 행정자치부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인해 전체 사업의 성과점검이 어렵고 통합 재난안전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와 성과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난안전체계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재난관련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 절차, 공유정보의 범위, 공유 기준 등 업무표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한 재난안전체계의 연계와 통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 국민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정보 관련 포털은 ‘국민안전처 기관포털(www.mpss.go.kr)’,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안전신문고(www.safepople.go.kr)’, ‘생활안전지도 포털(www.safemap.go.kr)’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방교부세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시책, 재난관리),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¹⁾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같이 정산 및 반납절차가 없으며 사용내역에 대해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의 2016년 집행액은 총 37조 9,673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2016년 집행액은 35조 237억원이다. 특별교부세 중 ①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2016년 집행액은 4,333억원이고, ②국가시책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2016년 집행액은 1,083억원이며, ③재난관리특별교부세는 2016년 집행액이 5,416억원이다. 그밖에 부동산교부세의 2016년 집행액은 1조 4,457억원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4,147억원이다.

[2016년 지방교부세 종류별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16		
	당초예산	추경예산	집행액
보통교부세	33,243,790	35,023,661	35,023,661
특별교부세	1,028,158	1,083,206	1,083,206
- 지역현안	411,263	433,282	433,282
- 국가시책	102,816	108,321	108,321
- 재난관리	514,079	541,603	541,603
부동산교부세	1,445,711	1,445,711	1,445,711
소방안전교부세	414,700	414,700	414,700
총 계	36,132,359	37,967,278	37,967,278

주: 재난관리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안전처 소관임.

자료: 행정자치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이며, 해당 재원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40%)와 국가시책특별교부세(10%), 재난안전특별교부세(50%)로 구분되며, 지역현안특별교부세와 국가시책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국민안전처가 운영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교부하며, 행정자치부가 운영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며, 국민안전처가 운영한다.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가. 현 황

보통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액은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보통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액 산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노력(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요자체노력 반영항목은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등 8종이며, 수입자체노력 반영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 등 6종이다.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수요자체노력은 인센티브가 7,960억원, 패널티가 2,953억원이며, 수입자체노력은 인센티브가 6,035억원, 패널티가 2조 7,523억원이다. 따라서 수요자체노력은 인센티브의 규모가 패널티보다 커서 5,007억원의 순인센티브가 반영되었고, 수입자체노력은 패널티의 규모가 인센티브보다 커서 2조 1,488억원의 순패널티가 반영되었다.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수입 자체노력 반영내역]

(단위: 억원)

수요자체노력			수입자체노력		
반영항목	인센티브(+)	패널티(-)	반영항목	인센티브(-)	패널티(+)
인건비 절감	692	44	지방세 징수율 제고	2,308	1,596
지방의회 경비절감	45	3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	19,130
업무추진비 절감	397	0	경상세외수입 확충	3,335	180
행사축제경비 절감	454	1,693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345	4,504
지방보조금 절감	3,971	1,059	탄력세율 적용	15	1,494
지방청사 관리운영	2,331	10	지방세감면액 축소	0	619
읍면동 통합*	73	2			
민간위탁금 절감	0	144			
합 계	7,960	2,953	합 계	6,035	27,523

주: 읍면동 통합은 2013년 통계치만 반영됨.

자료: 행정자치부(2017.4),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과 세출절감·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수요·수입자체노력 반영액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추세이므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한 액수로 산정된다. 또한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는 수요 및 수입자체노력이 반영된다.²⁾ 또한 행정자치부는 2016년부터 수요·수입자체노력의 13개 항목 중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세 징수율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6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였다.³⁾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요 및 수입 자체노력 반영액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통교부세 및 수요·수입 자체노력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보통교부세 ((A-C)×조정률)
	기준재정 수요액(A)	수요자체노력 반영(B)	비중 (B/A)	기준재정 수입액(C)	수입자체노력 반영(D)	비중 (D/C)	
2013	634,091	2,581	0.4	291,454	8,559	2.9	314,480
2014	693,310	3,488	0.5	338,930	16,308	4.8	318,845
2015	705,488	2,379	0.3	349,684	9,771	2.8	320,509
2016	726,941	3,470	0.5	369,079	12,037	3.3	332,438
2017	757,850	4,495	0.6	373,166	13,420	3.6	375,775
연평균 증가율	4.6	14.9		6.4	11.9		4.6

주: 보통교부세 산정시 조정률은 보통교부세 총액에 따라 해마다 달리 적용됨.

자료: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조정률

기준재정수요액=기초수요+보정수요+수요자체노력, 기준재정수입액=기초수입+보정수입+수입자체노력

3)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의 항목은 2016년부터 종전 150%에서 180%로 확대하였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수요자체노력 반영액은 2013년 2,581억원(0.4%)에서 2017년 4,495억원(0.6%)로 연평균 14.9%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기준재정수요액은 연평균 4.6% 증가하였다. 또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수입자체노력 반영액은 2013년 8,559억원(2.9%)에서 2017년 1조 3,420억원(3.6%)로 연평균 11.9%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기준재정수입액은 연평균 6.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수요·수입자체노력 반영액의 규모와 비중이 최근 들어 상당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교부되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이자 자율재원이다. 그런데 수요 및 수입자체노력과 같은 인센티브 반영액이 과도해지면 재정부족액의 보전이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수입자체노력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2016년 133억원)⁴⁾’와 ‘국가시책특별교부세 정책성과 인센티브(2016년 429억원)’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요·수입자체노력 반영과 차이가 있지만, 세출절감, 세입증대 및 재정운용효율화 등 지자체의 특정 재정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수요·수입자체노력 반영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현황]

(단위: 억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국가시책특별교부세 정책성과 인센티브
근거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교부세법」 제9조
평가기준	- 세출효율화: 인건비 절감 등 - 세입확충: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 세출절감, 세입증대 우수 - 공기업개혁 등 - 재정분석 우수단체	- 정부합동평가(재정효율화 등) - 규제개혁 - 정부 3.0(추진역량 등) - 조기집행실적
재원규모	기준재정수요액: 3,470 기준재정수입액: 12,037	133	429
인센티브 반영방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에 반영	보통교부세와 관계없이 별도 심사를 통해 교부	보통교부세와 관계없이 별도 심사를 통해 교부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결과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다 지출이나 수입징수 태만이 지적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교부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미감액 지자체에 대한 재원보전과 건전재정운영 촉진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자체 재정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별도 재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에 적용되는 수요·수입자체노력 반영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수요·수입자체노력 반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통교부세 수입자체노력은 패널티 위주로 운영되어 세입증대 노력을 유도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반영항목 중 일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수입자체노력 반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 위주로 반영되어 지자체의 세입증대 노력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입자체노력의 패널티에서 인센티브를 뺀 순효과는 2011년 8,277억원, 2013년 1조 7,800억원, 2015년 1조 8,487억원, 2017년 2조 1,487억원으로 동 기간 중 모두 순패널티가 적용되었고 순패널티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자체노력의 제도취지는 지자체의 세입 확충 노력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가 대규모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보통교부세 수입자체노력 반영 및 순효과 내역]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인센티브	패널티	순효과	인센티브	패널티	순효과	인센티브	패널티	순효과
지방세징수율 제고	4,863	755	-4,108	4,093	652	-3,441	2,308	1,596	-71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52	16,827	16,575	6	16,554	16,548	32	19,129	19,09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8	6,036	5,908	774	4,611	3,837	345	4,504	4,159
수입자체노력 총액	8,557	27,044	18,487	7,623	24,647	17,024	6,036	27,523	21,487

주: 순효과의 부호가 양(+)이면 패널티가 인센티브보다 커서 순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순효과의 부호가 음(-)이면 인센티브가 패널티보다 커서 순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함.

자료: 행정자치부(2017.4),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다음으로 수입자체노력 반영항목 중 탄력세율⁵⁾ 적용은 제도운영 현실상 지자체의 세입확충 노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2011~2015년 동안 세율인상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자체노력의 인센티브가 반영된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세율인상 탄력세율을 적용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 밖에 없다. 그 외 나머지 241개 지자체는 동 기간 중 모두 세율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자체노력의 패널티가 부여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세율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세입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은 보통교부세 수입자체노력 반영항목으로서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효용성 제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4-2.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제도의 문제점

가. 현 황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결과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다지출이나 수입정수 태만이 지적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교부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미감액 지자체에 대한 재원보전과 건전재정운영 촉진재원으로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의 규모는 2015년 303억원, 2016년 382억원, 2017년 489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총 382억원의 감액재원 중 133억원을 건전 재정운영 촉진재원으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49억원은 미감액 지자체에 재원보전을 위해 교부하였다.

[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의 규모와 내역]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건전재정운영 촉진재원	15,000	13,300	21,350
재정보전	15,272	24,894	27,557
계	30,272	38,194	48,907

자료: 행정자치부

5) 지방세 탄력세율은 「지방세법」 각 조항에 의해 지방세목 중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적용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통교부세 수입자체노력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항목은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는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이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첫째, 건전 재정운용 촉진재원의 규모와 용도가 법령상에 명문화·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의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효율화 대화’,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으로 각각 139억원과 150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되었다. 2016년에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42개 지자체에게 83억원이,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38개 지자체에게 31억원이, ‘재정분석 우수단체’로 5개 지자체에 19억원이 지급되어 총 133억원이 지급되었다.

[연도별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개)

연도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 사용 내역	지자체 지급액	지자체수
2014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세체납액 축소	13,905	109
2015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세체납액 축소	15,000	134
2016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공기업 혁신	13,300	63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 건전재정운용 촉진 재원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개)

구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공기업 혁신			재정분석 우수	계
	소계	세출절감 우수	세입증대 우수	벤치마킹 분야	기타	소계	공기업 구조개혁	상하수도 경영개선		
배정액	8,300	2,900	3,100	1,400	900	3,100	1,450	1,650	1,900	13,300
지자체수	42	15	15	6	6	38	12	26	5	85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은 법령위반 지자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⁶⁾,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은 감액재원을 미감액 지자체의 재원보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⁷⁾ 그러나 현행 법령상 감액재원의 규모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향후 행정자치부가 감액재원을 건전재정운영 촉진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용도 및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으로 2016년에 추진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와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평가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비효율적라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에 83억원, ‘재정분석 우수’에 1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두 가지 인센티브의 분야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세출절감-건전성, 세입증대-효율성 등으로 유사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는 점에서 형식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유사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두 가지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와 재정분석 우수의 분야 및 평가항목 비교]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재정분석 우수	
분야	세부 평가항목	분야	세부 평가항목
세출절감	세출 절감 사례분석을 통한 심사	건전성	수지관리 3개 지표 채무(부채)관리 4개 지표 등
세입증대	세입 증대 사례분석을 통한 심사	효율성	세입효율 6개 지표 세출효율 8개 지표
기타	벤처마킹 및 지자체간 협업 우수사례	책임성	재정법령준수 5개 지표 등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⑥법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3. 국가시책특별교부세 추진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가. 현 황

행정자치부는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지방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시책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국가시책특별교부세의 재원은 특별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3%)의 20%이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은 총 1,08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체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국가 행사 등에 대한 지원으로 409억원이 교부되었고, 정부3.0 맞춤형서비스 확산,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등 국가·지방 정책협력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245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정부3.0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책성과 인센티브로 429억원이 교부되었다.

[2016년 국가시책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명	지자체 교부액
국제·국가 행사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청주시)	93.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창원시)	73.3
	전국체전 지원(충남, 충북)	24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158.5
	특별재난지역 지원	60.0
	소 계	409.3
국가·지방정책협력	정부3.0 거점 지자체 발굴·육성	14.0
	정부3.0 맞춤형서비스 확산	30.0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15.0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16.0
	고향희망심기 등 더불어사는 공동체사업	35.0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10.5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0.0
	마을공방 육성	14.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20.0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31.2
	저출산 극복 지원	29.0
	소 계	244.7

구분	사 업 명	지자체 교부액
정책성과 인센티브	정부3.0 평가	45.0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35.0
	지자체 합동평가	185.0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및 이자보전	43.0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21.0
	소 계	429.0
합 계		1,083.0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첫째, 행정자치부가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일부 국가·지방 정책협력 사업들은 사업선정 및 사업수행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16년에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3.0 거점 지자체 발굴·육성’(14억원), ‘정부3.0 맞춤형서비스 확산’(30억원) 등을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였다. 정부3.0 거점 지자체 발굴·육성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부3.0 서비스 알림관 설치와 지자체 간 협업관련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3.0 맞춤형서비스 확산 사업은 지자체의 국민디자인과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3.0 서비스 알림관과 맞춤형서비스 확산은 정부3.0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홍보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집행하였는데, 별도로 특별교부세로도 정부3.0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16억원), ‘골목경제활성화’(15억원) 등은 총사업비의 50%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방비 부담 방식의 사업추진에 국고보조사업의 수행방식으로서, 지방재원인 지방교부세 사업을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31억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실제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한 내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간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간판교체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내용상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관련되어 국회심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평가결과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집행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전년도 사업에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정부상징 교체 사업의 사업계획 부실

가. 현 황

국가상징선양 사업¹⁾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무궁화 등의 체계적 관리 및 선양·교육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상징선양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21억 2,900만원 중 86.4%인 18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으로는 국가상징 선양·교육, 정부상징(ministry identity: MI) 교체,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등이 있다. 정부상징 교체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과 특별행정기관의 정부상징물(간판, 현판 등)을 [태극기]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은 60억 7,000만원이었으나 이용감 43억원을 통해 예산현액은 17억 7,000만원이고 이 중 14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가상징선양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상징선양	6,479	6,479	0	△4,350	2,129	1,839	0	290
정부상징(MI)교체	6,070	6,070	0	△4,300	1,770	1,488	0	282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정부상징 교체 사업은 부처별로 상이한 정부상징을 통일하여 정부 이미지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이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031-303

부실하였고 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부상징 교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42개 중앙부처, 716개 특별행정기관의 정부상징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관당 800만원, 총 6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6년 초 정부상징 교체 수요조사 결과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소모성 정부상징물의 교체는 부처별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급성이 있는 외부 현판 및 간판의 교체는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노동부 등 81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정부상징물(옥외간판·현판·담장상징물)의 교체지원으로 위탁사업비 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자치부 본부, 정부청사 및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의 정부상징 교체는 동 사업 예산 중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8억 8,400만원을 행정자치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재배정 형식으로 집행하였다.

[정부상징 교체사업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비목	집행액	집행내역
정부상징 교체대상 지원	위탁사업비	552	81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187개 정부상징물(옥외간판·현판·담장상징물) 교체 지원
행정자치부 소관 정부상징 교체대상 지원 (재배정)	일반수용비	453	행정자치부 본부 및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국과수, 이북5도위의 정부상징물 교체 지원
	시설장비유지비	431	
기타 경비	위탁사업비, 일반수용비	52	정부상징 교체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용역
합 계		1,488	

자료: 행정자치부

동 사업의 예산이 뒤늦게 행정자치부에 편성되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교체필요성이 있는 간판 및 현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당초 정부상징 교체의 대상이

되는 상징물의 각 부처별 수요, 교체대상 상징물의 원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소모성 물품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정부상징물 관련 소모성 물품 교체는 기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본부,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지방행정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등에 정부상징교체 예산으로 1억 2,981만원을 재배정하였다. 주요 집행내역은 명패, 기구안내도, 부서 안내 사인물 등 행정자치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소모성 물품 구입이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세웠던 소모성 물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 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정부상징을 적용·확산시켜야 하는 주무부처로 선도적으로 대외홍보 등 적용·확산을 위한 모범 사례 제시가 필요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만을 대상으로 정부상징 교체 관련 소모성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타 부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상징 교체사업 행정자치부 재배정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재배정 기관	집행내역	집행액(일반수용비)
운영지원과	행자부 정기, 명패, 기구안내도, 사인물 등	29,995
지방행정연수원	직원명패 스티커, 기관기, 근조기, 임용장 및 상장 등	7,983
국가기록원	복도 게시판, 부서 안내 사인물 등	70,000
이북5도위	이북5도위원회 깃발(2종) 등	3,921
국과수	기관기, 공무수행 표찰 등	17,907
합 계		129,806

자료: 행정자치부

가. 현 황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¹⁾은 국민고객 만족도 및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0억 2,600만원 중 94.7%인 9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으로는 고객만족관리와 이미지제고가 있다. 고객만족관리는 정책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미지제고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와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지제고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4,100만원이며, 이 중 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00만원이다.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	1,026	1,026	0	0	1,026	972	0	54
고객만족관리	185	185	0	0	185	169	0	16
이미지제고	841	841	0	±17	841	803	0	38

자료: 행정자치부

이미지제고 사업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 신문·잡지·인터넷·SNS 등 매체 홍보비로 4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정부3.0, 세계기록총회, 마을세무사, 도로명주소 등 정책사업을 홍보하였다. 또한 위탁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온·오프라인 통합홍보사업, 행정자치부 대국민 기관인지도 제고 컨설팅, 2017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사업 계획 컨설팅 등으로 1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자치부의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전략수립 및 홍보컨설팅을 수행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033-301

[이미지제고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내역	내용	집행액
일반 수용비	신문·잡지 광고	정부3.0, 세계기록총회, 마을세무사, 도로명주소 등 정책홍보	243
	인터넷 광고	도로명주소 정책홍보	30
	홍보물	행자부 인쇄홍보물, 업무보고, 멀티미디어 제작, 카드뉴스 등	64
	온라인 홍보	국민참여단 운영, 온라인 광고 및 이벤트	54
	기타	정책설명회 운영경비 등 기타	52
	소 계		443
위탁 사업비	온·오프라인통합 홍보사업	멀티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핵심과제 전략수립 및 홍보 컨설팅	173
	대국민 기관인지도 제고 컨설팅	언론보도 온라인분석 등	10
	2017년 대한민국 행정홍보 대전 사업계획 컨설팅	행정홍보대전 전시회 용역 컨설팅, CI 디자인 제작비 등	10
	소 계		193
합 계			636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2016년 추진한 행정자치부의 이미지제고 사업은 기존 매체 홍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토대로 핵심과제를 홍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위탁사업비로 추진한 온·오프라인통합 홍보사업의 일부 내역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홍보라는 당초 사업의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5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홍보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민간 아이디어와 홍보기법을 활용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통합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2016년에 추진한 주요 내역으로는 5개 핵심과제 홍보 컨설팅 이외에 홍보콘텐츠(웹툰, 카드뉴스, 동영상, 카카오톡이미지 등)를 제작하고, 홍보전단, 백드롭 및 광고디자인을 제작하며,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물 제작,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은 이미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던 매체활용 정책광고, 온라인 홍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서도 추진하였던 것으로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다.

[2016년 온오프라인통합 홍보사업 추진내역 현황]

주요 추진내역	내용
핵심과제 홍보 컨설팅 및 홍보전략 수립 지원	- 5개 핵심과제 홍보 컨설팅 - 온라인 채널 활용화 전략 수립
행자부 총괄 홍보계획 수립	-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홍보계획 수립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 홍보콘텐츠 제작(웹툰, 카드뉴스, 동영상, 카카오톡이미지) - 홍보전단, 백드롭, 광고디자인 등 제작
대국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	-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퀴즈이벤트, 영상 공유이벤트
기타	-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작성 지원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2017.3)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행정자치부가 위탁사업비로 추진한 ‘2017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사업계획 컨설팅’은 당초 예산과 계획에 없는 것으로서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을 총괄하는 행자부 이미지를 강화·제고하기 위해 ‘(가칭) 2017 행정홍보대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2016년 하반기에 이에 대한 사업계획 컨설팅을 동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행정홍보대전이 행정자치부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동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가. 현 황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¹⁾은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과 우리나라의 우수 공공행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2억 2,000만원 중 89.0%인 10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 2억 5,600만원, ‘공공행정협력단’ 3억 5,200만원,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1억원, ‘행정한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5,000만원, ‘정부3.0 국제컨퍼런스 개최’ 3억 2,700만원 등이다.

내역별 사업내용은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은 한-중남미 행정장관회의 및 한-중앙아시아 행정장관회의 등 우리나라와 권역별 국가들간 행정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이고, 공공행정협력단은 주요 부처별 우수 행정혁신사례와 인프라를 협력대상국가에 전시하여 행정한류 콘텐츠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3.0 국제컨퍼런스 개최는 정부 3.0의 개념과 성과를 외국에 소개하여 정부3.0을 행정혁신의 브랜드로 확산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1,220	1,220	0	0	1,220	1,085	0	135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	350	350	0	0	350	256	0	94
공공행정협력단	360	360	0	0	360	352	0	8
행정한류 콘텐츠개발	100	100	0	0	100	100	0	0
행정한류 우수사례경진대회	50	50	0	0	50	50	0	0
정부3.0 국제컨퍼런스 개최	360	360	0	0	360	327	0	33

자료: 행정자치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036-303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은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집행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최근 3년 동안 권역별(혹은 대륙별) 행정장관회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회의의 정례화와 공공행정분야 협력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12월 한-아세안(1+10) 행정장관회의, 2015년 3월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2016년 5월에는 한-중남미 공공행정 협력단, 2016년 8월에는 한-중앙아시아 공공행정협력단을 추진한 바 있다.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써 개최된 행사로 후속조치가 미흡하였으며,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역시 각국 행정장관 면담 이외에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2016년의 당초 계획에는 중남미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남미(1+5)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중남미 지역의 지카바이러스 유행으로 다자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대신 한-중남미 공공행정협력단과 연계하여 멕시코·콜롬비아와의 장관 등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회의의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중앙아시아 공공행정협력단과 연계하여 한-중앙아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하였으나 CIS 국가간 갈등관계로 인하여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前 대통령 예방, 아제르바이잔 아르튀르 총리 예방 등 고위급 협력활동을 통한 후속사업 논의 및 발굴을 추진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7년에 한국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중미국가가 사전에 다자간 의제를 발굴하여 한-중미 행정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장관회의를 정례화 하기 위해서는 한-중미 장관회의와 같이 해당 국가들 간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다자간 의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향후 행정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2016년에 추진하였던 공공행정협력단 사업은 2016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협력단은 핵심 협력국에 다수 부처 공공행정 혁신 관련 우수 콘텐츠를 전시하고 민간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5월에 한-중남미 공공행정협력단을, 2016년 8월에 한-중아시아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파견하였고 관련 예산으로 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공공행정협력단의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공공행정 협력포럼이라는 대규모 행사 개최, 고위급 예방 및 차관급 회담 개최, 현지 한국기업 시찰 등 일회적인 사업들이 주요 내용이었다.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 ICT 위크숍, 콜롬비아 법제협력 MOU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향후 국가간 협력을 지속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공공행정협력단의 주요 활동 내역]

구분	협력대상 국가(계기)	한국측 참여기관	주요 행사 및 활동 내역
한-중남미 공공행정 협력단(16.5)	멕시코(16.4, 대통령 순방)	행자부, 식약처 법제처, 권익위 경찰청	- 공공행정 협력포럼 (기조연설, 정부3.0 소개 등) - 5개 참여기관 부대전시 - 공공행정 양자회담(차관급) - 분야별 현지 기관방문 (내무부, 경찰청, 감사원 등)
	콜롬비아(15.4, 대통령 순방)		
한-중아시아 공공행정 협력단(16.8)	우즈베키스탄(15.5, 대통령 순방)	행자부, 복지부 특허청, 인사처 법무부, 법제처 우정사업본부	- 공공행정협력 포럼(기조연설 등) - 대통령(우즈벡), 총리(아제르) 예방 - 검찰총장 등 고위급 면담 - 현지 한국기업 시찰 등
	아제르바이잔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¹⁾은 정부의 조직·인력·기능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조직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5억 2,500만원 중 93.9%인 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과학적 조직진단 추진’을 목적으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 8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7,100만원이다.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조직진단관리	525	525	0	0	525	493	0	32
연구개발비	276	276	0	0	276	271	0	5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추진한 연구용역과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연구용역과제 중 일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하여 연구용역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으로 추진한 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주요 선진국가 정부인력 규모비교 연구계획’, ‘효율적인 항공관제체계 구축방안 연구’, ‘아동학대 대응 기능수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간위탁 법·제도 개선 연구’ 등 4개의 과제를 비공개로 처리하였다. 행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1-300

정자치부에 의하면, 해당 연구용역과제가 정부부처 조직규모와 직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수행한 선진국가 정부인력의 규모, 아동학대대응 기능수행체계, 항공관제체계, 민간위탁 관련 조직 등에 관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현황과 체계에 관한 연구로서 정부부처 조직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 연구용역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	연구내용	공개 여부	계약 방법	프리즘 등록	집행액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공개	수의	등록	45
주요 선진국가 정부인력 규모 비교 연구계획	주요 선진국가 정부인력 규모 비교 연구	비공개	수의	미등록	40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분석	정부조직 적정규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공개	수의	등록	28
정부 인력진단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인력진단 핵심 점검사항 및 업무 유형별 인력진단 모델 마련	공개	수의	등록	34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	해외 책임운영기관 제도 현황과 운영실태 파악을 통하여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개	수의	등록	35
효율적인 항공관제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항공기 관제 및 항공교통 흐름관리 수행 기관 기능 및 조직 분석, 기관 간 업무 연계 체계 등 분석·연구	비공개	수의	등록	2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연구과제	연구내용	공개 여부	계약 방법	프리즘 등록	집행액
아동학대 대응 기능수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아동학대 대응 실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비공개	수의	등록	20
민간위탁 법·제도 개선 연구	민간위탁 실태 조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 안 마련,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	비공개	수의	미등록	50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일부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과학적 조직진단 추진’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방안(45백만원)’은 조직관리정보시스
템 고도화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으로서 동 사업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과제
이며, 기관 운영경비나 기본경비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35백만원)’은 해외 책임운영기관 제도 현황과 운영실태 파악을 통
하여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서 과학적 조직진단 추진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가. 현 황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¹⁾은 행정제도 개선, 국민제안제도 활성화,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확산,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8억 8,000만원 중 86.8%인 7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행정제도개선 추진’ 1억 1,800만원, ‘제안활성화 추진’ 1억 100만원,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확산’ 1억 9,600만원,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 3억 4,900만원 등이다. ‘행정제도개선 추진’과 ‘제안활성화 추진’은 행정 및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국민·공무원들의 우수제안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확산’은 국민참여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혜택을 안내하고 관련 업무의 창구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생산성향상지원	880	880	0	±8	880	764	0	116
행정제도개선 추진	129	129	0	±3	129	118	0	11
제안활성화 추진	102	102	0	0	102	101	0	1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확산	200	200	0	0	200	196	0	4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	449	449	0	±5	449	349	0	100

자료: 행정자치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3-300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행정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은 제안제도 활성화와 정책형성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 사업의 예산집행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의 당초 예산과 계획에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확산’으로 사업 추진비를 제외하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당초 계획상 동 사업의 내역으로 ‘주민참여 정책마당 플랫폼’ 이용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와 국민관점의 행정용어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집행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홍보성 사업에 지출하였다.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확산의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		실제 집행액	
	내역	예산액	내역	집행액
일반 수용비 (210-01목)	국민맞춤 서비스 설명회 및 경진대회	13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홍보	10
	우수사례집, 교육교재 및 홍보물	7		
	주민참여 정책마당 플랫폼 공모전	10	행복출산 홍보영상 제작	10
	국민관점 행정용어 확산	9		
위탁사업비 (210-15목)	주민참여 정책마당 플랫폼 유지보수	100	정부3.0 체험마당 맞춤형서비스관 구축	40
			정부3.0 체험마당 생애주기서비스관 구축	40
			정부3.0 체험마당 미래정부서비스 기획	20
업무용역비 (260-01목)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교재개발	8	공공서비스 성과관리 해외·민간 사례조사 연구용역	19
	국민관점 행정용어 프로그램 개발	11		
포상금등 (310-03목)	정부3.0 국민맞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12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연계기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
	합 계	170	합 계	149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로 ‘국민맞춤 서비스 설명회 및 경진대회’, ‘주민참여 정책마당 플랫폼 공모전’ 등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홍보’와 ‘행복출산 홍보영상 제작’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위탁사업비로 ‘주민참여 정책마당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3.0 체험마당 맞춤형 서비스관·생애주기서비스관·미래정부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집행하였다. 업무용역비로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교재개발’, ‘국민관점 행정용어 프로그램 개발’로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공서비스 성과관리 해외·민간 사례조사 연구용역’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포상금 등으로 ‘정부3.0 국민맞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연계기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당초 계획한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았고 해당 공모전의 보상금을 타 사업의 포상금으로 집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예산의 보상금(310-01목)에 ‘주민참여 정책마당 공모전 포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을 ‘생활공감 우수활동모니터 장관표창 부상금’(630만원), ‘국민디자인과제 등 국민참여 활성화 유공 포상대상자 포상금’(540만원), ‘중앙우수제안 국민평가 참여자 상품권 구입’(200만원) 등으로 집행하였다.

생활공감 우수활동모니터 장관표창 부상금과 국민디자인과제 등 국민참여 활성화 유공 포상대상자 포상금은 각각 ‘생활공감정책추진’ 및 ‘정부3.0 변화관리 지원’사업의 포상금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사업들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의 보상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목	예산		실제 집행액	
	내역	예산액	내역	집행액
보상금 (31001목)	주민참여 정책마당 공모전 포상	30,000	행정생산성 향상 및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시상금	14,000
			생활공감 우수활동모니터 장관표창 부상금	6,300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부상금	2,000
			국민디자인과제등 국민참여 활성화 유공 포상	5,400
			중앙우수제안 국민평가 참여자 상품권 구입	2,000
			합 계	29,700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가. 현 황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¹⁾은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온-나라 지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온-나라 정책연구)의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4억 1,800만원 중 90.5%인 3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유지보수 2억 4,500만원, ‘지식행정활성화, 정책연구용역관리’ 1억 3,300만원 등이다.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418	418	0	0	418	378	0	40
GKMC, PRISM유지보수	267	267	0	0	267	245	0	22
지식행정활성화, 정책연구용역관리	151	151	0	0	151	133	0	18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은 지식관리시스템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책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3-304

첫째,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은 공무원들의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인 ‘온-나라 지식’은 행정기관 단위로 분산된 업무·정책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지식관리시스템이다. 2008년 기관 단위로 관리하던 업무지식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개발된 후 2016년 초 행정망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재개발하면서 메일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동 시스템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1,829,764건의 지식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누적 조회건수는 6,431,475건이다. 연계하여 수집한 것을 제외한 회원들이 개별 등록한 지식은 202,595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의 11.1% 수준이다. 또한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회원은 547,614명인데, 평일 평균 접속건수(접속자수)는 2016년에는 22,368명이었고, 2017년 7월 현재 44,776명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온-나라 지식은 사용대상인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온-나라 지식이 외부 통신망과 단절된 내부망 전용 시스템이어서 공무원들의 지식등록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식조회 및 등록도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내부망으로만 활용가능한 현재의 온-나라 지식을 외부망에서도 활용가능할 수 있는 방안과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활용현황(2008.1~2016.12)]

(단위: 건)

구 분		등록	조회	댓글	추천
등록지식	온-나라 지식	38,985	793,883	69,435	23,184
	온-나라 지식 표준 KMS	87,307	486,550	32,113	9,441
	지식SOS(질문/답변)	30,448	2,815,344	26,754	-
	커뮤니티	44,437	639,560	15,062	2,269
	소통방	1,418	188,382	9,014	0
소 계		202,595	4,923,719	152,378	34,894
연계지식	온-나라문서 및 정책소식 등	1,627,169	1,507,756	50,758	19,242
합 계		1,829,764	6,431,475	203,136	54,136

주: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행정자치부

둘째,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이후 중앙부처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nd Management)인 ‘온-나라 정책연구’ 공개율은 첫째 해엔 약 78%, 둘째 해엔 약 81%, 셋째 해엔 84%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 수행된 연구용역의 공개율은 2015년 조사 시 77.1%, 2016년 조사 시 81.1%, 2017년 조사 시 84.5%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 수행된 연구용역의 공개율은 2016년 조사 시 79.0%, 2017년 조사 시 81.1%로 높아졌다. 연구용역의 비공개 등록 이후에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공개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수행연도가 3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공개율이 8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연구시스템(PRISM)의 정책연구용역 공개율 현황]

연구수행연도	등록과제수	조사시점별 공개율		
		2015년 6월 기준	2016년 5월 기준	2017년 7월 기준
2014년	2,563건	77.1%	81.1%	84.5%
2015년	2,555건	-	79.0%	81.1%
2016년	2,395건	-	-	77.5%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개율이 저조한 하위 10개 기관들은 대검찰청, 기획재정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안보 및 수사 등을 제외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 결과 공개율 하위 10개 부처 현황 (2017년 7월 기준)]

기관명	등록건수	공개건수	비공개건수	공개율
대검찰청	32건	8건	24건	25.0%
기획재정부	107건	52건	55건	48.6%
국방부	79건	40건	39건	50.6%
공정거래위원회	23건	13건	10건	56.5%
외교부	65건	38건	27건	58.5%
중소기업청	13건	8건	5건	61.5%
방위사업청	19건	12건	7건	63.2%
금융위원회	26건	17건	9건	65.4%
산업통상자원부	183건	123건	60건	67.2%
관세청	17건	12건	5건	70.6%
합 계	2,395건	1,855건	540건	77.5%

자료: 행정자치부

가. 현 황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¹⁾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5억 2,600만원 중 99.5%인 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국민아이디어 발굴 및 관리 6,300만원,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2억 100만원,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활동 1억 1,300만원, 생활공감 홈페이지 운영 1억 4,600만원 등이다.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활공감정책추진	526	526	0	0	526	523	0	3
국민아이디어 발굴 및 관리	65	65	0	0	65	63	0	2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202	202	0	0	202	201	0	1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활동	113	113	0	0	113	113	0	0
생활공감 홈페이지 운영	146	146	0	0	146	146	0	0

자료: 행정자치부

동 사업은 4,000여명 내외 규모의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이들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2009년도부터 위촉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인원은 1기(2009년) 3,041명, 2기(2010년) 10,258명, 3기(2011년) 10,036명, 4기(2013년) 5,084명, 5기(2015~2016년) 3,888명, 6기(2017년) 3,858명이다.

모니터단이 온라인 사이트(www.happylife.go.kr)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자문위원들이 심사하여 정책으로 채택·추진되며,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진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46-300

2016년 제안건수는 총 11,581건이며 이중 1,577건이 채택되어 채택률은 13.6%였다.

[생활공감 모니터단 정책제안 및 채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책 제안	건수	33,117	11,553	16,065	15,008	11,581
	채택 (채택률)	693 (2.1%)	304 (2.6%)	792 (4.9%)	1,203 (8.0%)	1,577 (13.6%)

자료: 행정자치부(2017.5)

나. 분석의견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정책제안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동 사업은 성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통한 정책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차별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각 기관별 심사를 통해서 채택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 및 부상을 지급하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 행정자치부의 생활공감정책 제도는 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 포상 및 부상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신문고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 우수제안의 포상 및 부상은 행정자치부의 ‘중앙우수제안’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와 생활공감정책 제안제도의 비교]

구분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	생활공감정책 제안(생활공감 모니터단)
목적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
법령상 근거	「국민제안규정」 제1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2
제안 심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각 행정기관이 심사, 채택여부 결정,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은 행자부에 제출, 행자부는 중앙우수제안 심사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행자부에 제출한 제안을 전문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심사
포상	중앙우수제안에 대해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각기 포상 및 부상 지급	우수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해 포상 및 부상 지급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둘째,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 예산으로 유사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 예산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중앙연찬회, 시도대표 및 장·차관간담회 등 성격이 유사한 행사성 사업을 중복적으로 개최하였다. 세부적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및 시도 대표 장관 간담회 1,000만원, 모니터단 중앙연찬회 및 시도 대표 장관 간담회 3,500만원, 2016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우수활동 모니터단 시상식 및 시도 대표 차관 간담회 5,200만원 등을 집행하여 유사한 행사성 사업으로만 9,7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상금이 부족하자 타 사업인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사업의 포상금등(310-03목) 예산으로 ‘생활공감 우수활동모니터 장관표창 부상금’(63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 행사성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행사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집행액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장관 간담회	'16.4.29.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20명	800
생활공감정책 제안 우수 모니터단 발대식 및 시·도 대표 장관 간담회	'16.6.22.	코엑스	400명	10,000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중앙연찬회 및 시·도 대표 장관 간담회	'16.9.29. ~ 9.30.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300명	35,000
2016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 및 우수활동 모니터단 시상식 및 시·도 대표 차관 간담회	'16.12.15.	롯데호텔	300명	52,000
합 계				97,800

자료: 행정자치부

셋째,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 내역 중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의 위탁사업비 낙찰차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배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 내역으로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 보안S/W 구입을 위해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액(집행액)은 4,800만원이어서 낙찰차액 1,84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2016년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 및 우수활동 모니터 시상식 행사경비(포상금 및 장소임차료)'로 사용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 예산의 낙찰차액은 불용이 원칙으로서 국무회의 등 관련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포상금 등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배하였다.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 낙찰차액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명	예산액	집행액 (계약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 보안S/W 구입(ActiveX 대체 프로그램 설치)	66	48	2016년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 및 우수활동 모니터 시상식 행사 비용 (포상금 및 행사장소 임차료)

자료: 행정자치부

가. 현 황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¹⁾은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216억 7,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금으로 집행된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조성(공공데이터 포털 유지보수 등) 15억 6,400만원, 개방형전환 및 품질개선(open API 전환 등) 140억 6,200만원,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국가오픈데이터 포럼 운영 등) 5억 7,800만원, 개방DB구축(행정DB구축) 22억 5,000만원, 공공데이터 일자리 창출 지원(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5억원, 공공빅데이터활용 활성화(빅데이터 컨설팅 및 분석 등) 27억 2,000만원 등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21,674	21,674	0	0	21,674	21,674	0	0
공공데이터제공 기반조성	1,564	1,564	0	0	1,564	1,564	0	0
개방형전환 및 품질개선	14,062	14,062	0	0	14,062	14,062	0	0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578	578	0	0	578	578	0	0
개방DB 구축	2,250	2,250	0	0	2,250	2,250	0	0
공공데이터일자리창출지원	500	500	0	0	500	500	0	0
공공빅데이터활용활성화	2,720	2,720	0	0	2,720	2,720	0	0

자료: 행정자치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7-502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운영하여 개방된 데이터의 파일데이터와 오픈API 및 표준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수는 총 21,358개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된 공공데이터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파일데이터	4,718	11,796	14,115	19,184
오픈API	554	1,361	1,790	2,143
표준데이터	0	0	7	31
합 계	5,272	13,157	15,912	21,358

자료: 행정자치부(2017.4)

행정자치부는 2014년에 민관합동TF를 구성(공공데이터전략위+민간기업+열려라 데이터활동단)하여 민간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중점데이터 36개 분야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모두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11개 분야(국가재정, 지자체 인허가, 건축, 실시간 수도, 농수축산가격 등)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오픈API형태로 개방하였고, 2016년에는 도로명주소정보, 부동산실거래가, 식의약종합정보, 교육행정정보, 노동보험정보 등 22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다.

2016년까지 개방된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활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데이터 품질관리와 오픈API 개발 등이 수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2015년부터 개방하기 시작한 국가중점데이터는 일부 데이터에 이용실적이 편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개방된 33개 국가중점데이터 중 활용건수 상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픈API 서비스는 18개, 파일데이터는 6개가 상위 100위내에 있으나, 나머지 9개는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2월 현재 누적 민간활용실적²⁾을 살펴보면, 오픈API활용 신청건

수는 2015년 개방한 지방행정인허가정보가 61,78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2016년 개방한 도로명주소정보 14,615건, 부동산실거래정보 2,628건, 2015년 개방한 교통사고정보 1,146건이었다. 그 외 29개 정보는 신청건수가 1,000건 미만이었다. 또한,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2016년 개방한 국가통계정보가 133,710건, 지방재정정보 13,959건, 2015년 개방한 국민건강정보가 6,850건이었다.

그동안 개방한 공공데이터 중 오픈API의 활용실적이 몇몇 우편정보, 대중교통 및 기상관련 DB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오픈API의 활용신청과 이용이 미흡한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³⁾ 이에 대해 정부는 실제 민간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대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개방된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의 민간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방분야 선정시 향후 미래유망산업과의 연계성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세, 전력 등과 같이 민간활용성 및 타 데이터와의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고용보험 데이터 연계’, ‘해운항만+관세 데이터 연계’, ‘국민연금+부동산 거래데이터 연계’와 같은 시너지 높은 데이터 창출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성이 저조하게 되었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개방 이후에 민간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간 시너지와 미래신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개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실적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업로드된 개방형 데이터(오픈API)를 민간이 활용한 실적을 의미하며 이는 오픈API 활용 신청건수 등으로 계산된다.

3) 국회예산정책처(2015.6),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

[주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활용성과]

(단위: 건)

순위	구축 년도	오픈API 서비스	기 관	공공데이터포털	
				신청건수 (누적치)	트래픽건수* (누적치)
1	'15	지방행정인허가정보	행정자치부	61,784	(통계 미수집)
2	'16	도로명주소정보	행정자치부	14,615	(통계 미수집)
10	'16	부동산실거래가정보	국토교통부	2,628	13,912,237
16	'15	교통사고정보	도로교통공단	1,146	177,049
20	'15	부동산종합정보	국토교통부	827	7,493,705
26	'15	건축행정정보	국토교통부	615	42,129,740
28	'16	국가종합전자조달정보	조달청	557	20,038,180
32	'15	농수축산물가격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99	1,688,407
55	'16	국가공간정보	국토교통부	294	5,683,680
56	'16	식의약품종합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93	27,062
59	'15	상권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79	427,695
63	'15	수산물정보	해양수산부	214	58,032
66	'16	재난관리정보	국민안전처	199	22,634
76	'16	건강진료심사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1	293,502
77	'15	등산로·국가생물종정보	산림청	150	6,266
90	'16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115	25,662
92	'15	실시간수도정보	한국수자원공사	113	3,046
96	'15	통합재정정보	기획재정부	98	247,017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가. 현 황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 사업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을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83억 9,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 중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운영 사업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은 28억 6,000만원이며 전액 출연금(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집행하였다.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	8,485	8,485	0	△86	8,399	8,399	0	0
공공아이핀, 마이핀 운영	2,860	2,860	0	0	2,860	2,860	0	0

자료: 행정자치부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서비스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공 및 민간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상 본인식별 수단이다. My-Pin서비스는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오프라인상 본인확인 수단 제공의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7년 2월말 누적치 기준 공공 I-Pin의 가입자(발급자)수는 787만 1,000명이며, My-Pin의 가입자(발급자)수는 285만명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5-502

나. 분석의견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 I-Pin과 My-Pin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도상의 문제와 이용률 하락추세로 인해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공공 I-Pin과 My-Pin 서비스 모두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개인식별번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 I-Pin과 My-Pin은 온라인상으로는 공공아이핀센터, 오프라인상으로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제출)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식별번호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중앙차원(공공아이핀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신 대체번호를 국민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만일 중앙차원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나 회원가입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발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5년 3월에는 82만여 건의 공공 I-Pin이 부정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공공 I-Pin과 My-Pin의 월별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고 이용률도 저조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I-Pin의 경우 2016년 12월까지 누적 발급자수가 758만 2,000명에 이르지만 실제 사용자수(179만 8,000명) 대비 이용건수(95만건)인 이용률은 52.8%였다. 또한 실제 이용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사용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별 이용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5년 1월의 이용건수가 210만 8,000건이었으나, 2016년 1월은 148만 8,000건, 2016년 12월은 95만건이었다.

오프라인 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My-Pin의 경우 2016년 12월까지 누적 가입자수가 267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사용자수(98만 9,000명) 대비 이용건수(1만 8,000건)인 이용률은 1.8%에 불과하였다. 월별 이용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5년 7월의 이용건수는 7만건이었으나, 2016년 1월은 2만 8,000건, 2016년 12월은 1만 8,000건이었다.

공공 I-Pin과 My-Pin의 이용건수가 하락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공공 I-Pin과 My-Pin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 번호를 부여받아 최소 3년에 한번씩 갱신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국민들이 구태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 공공 I-Pin과 My-Pin을 제공받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휴대폰 인증이나 ARS인증과 같은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을 보다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한계가 있고 최근 들어 이용건수도 하락추세에 있는 I-Pin과 My-Pin 서비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 다른 본인확인 수단이 없는 취약계층, 고령자, 청소년 등 I-Pin과 My-Pin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정책보다는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줄여나가도록 계도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I-Pin 가입자, 사용자 및 월별 이용률 현황]

(단위: 천명)

구분	가입자 (누적, A)	탈퇴 및 휴면 (누적, B)	사용자 C=A-B	이용건수 (D)	이용건수 (누적)	월별 이용률 (D/C)
'14년 이전	4,097	65	4,032	39,438	39,438	-
'15년	1월	4,269	67	4,202	2,108	41,546
	7월	5,332	99	5,233	1,610	53,717
	12월	5,841	121	5,720	1,432	60,761
'16년	1월	5,948	123	5,825	1,484	62,245
	2월	6,054	125	5,929	1,444	63,689
	3월	6,226	128	6,098	1,835	65,524
	4월	6,347	132	6,215	1,589	67,113
	5월	6,488	4,575	1,913	1,434	68,547
	6월	6,682	4,770	1,912	1,011	69,558
	7월	6,874	4,995	1,879	1,042	70,600
	8월	7,041	5,197	1,844	995	71,595
	9월	7,181	5,355	1,826	903	72,498
	10월	7,316	5,507	1,809	906	73,404
	11월	7,444	5,639	1,805	897	74,301
	12월	7,582	5,784	1,798	950	75,251

주: 2016년 5월부터 1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자(휴면계정 등)를 대상으로 자동탈퇴 처리하는 공공 I-Pin 재인증 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 처리가 급증

자료: 행정자치부

[My-Pin 가입자, 사용자 및 월별 이용률 현황]

(단위: 천명)

구분		가입자 (누적, A)	탈퇴 및 휴면 (누적, B)	사용자 C=A-B	이용건수 (D)	이용건수 (누적)	월별 이용률 (D/C)
'14년이전		642	26	616	106	106	-
'15년	1월	758	31	727	26	132	3.6%
	7월	1,435	72	1,363	70	466	5.1%
	12월	1,778	98	1,680	22	622	1.3%
'16년	1월	1,851	103	1,748	28	650	1.6%
	2월	1,920	108	1,812	28	678	1.5%
	3월	2,027	114	1,913	28	706	1.5%
	4월	2,106	120	1,986	21	727	1.1%
	5월	2,190	1,135	1,055	17	744	1.6%
	6월	2,272	1,234	1,038	17	761	1.6%
	7월	2,353	1,329	1,024	17	778	1.7%
	8월	2,418	1,412	1,006	18	796	1.8%
	9월	2,472	1,473	999	15	811	1.5%
	10월	2,522	1,532	990	15	826	1.5%
	11월	2,585	1,597	988	16	842	1.6%
	12월	2,670	1,681	989	18	860	1.8%

주: 2016년 5월부터 1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자(휴면계정 등)를 대상으로 자동탈퇴 처리하는 재인증 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 처리가 급증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중 전문기관 인건비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¹⁾은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30억 1,700만원 중 99.8% 129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지출비목은 위탁사업비이며, 위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3,017	13,017	0	0	13,017	12,997	0	20

자료: 행정자치부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동 사업의 국비는 116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방비는 238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다. 국비 예산에서 실제 집행액의 차액은 행정자치부의 세입으로 반납처리된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국비 및 지방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국비	지방비	지방비 비율	국비	지방비	지방비 비율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1,516	20,942	64.5	11,684	23,811	67.0

자료: 행정자치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934-500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의 위탁사업비에는 뚜렷한 근거와 산정기준 없이 전문기관의 인건비가 편성·집행되고 있어서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의 위탁관리비의 2016년 예산은 국비기준으로 116억 8,400만원이고 이를 교부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98억 8,000만원을 직접사업비(외주용역비)로 재위탁하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인건비로 8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행경비로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4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위탁사업비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하면 위탁경비의 인건비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인건비와 노무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기준은 위탁수행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또한 위탁사업비에서 지출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인건비는 예산확정 이후에 결정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위탁사업비로 전문기관의 인건비를 지출할 때, 명확한 산출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의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A)	집행액(B)	잔액(A-B)
직접사업비(외주용역비, 조달수수료 포함)		9,958	9,880	78
인건비 및 수행경비	소 계	1,242	928	314
	인건비	1,159	886	273
	일반운영비, 여비, 회의비 등	83	42	41
일반관리비		484	484	0
합 계		11,684	11,292	392

자료: 행정자치부

가. 현 황

전자정부성과평가 사업¹⁾은 전자정부의 성과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전자정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성과평가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1억 8,700만원 전액을 출연금(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집행하였다.

UN은 2년마다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UN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2016년에는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

[전자정부성과평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정부성과평가	187	187	0	0	187	187	0	0

자료: 행정자치부

동 사업의 세부내역별 집행액은 ‘UN전자정부 평가 대응 및 결과분석’ 5,500만원, ‘OECD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분석 대응’ 1,100만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 구축’ 4,000만원, ‘행정관리역량평가 지원’ 6,400만원 등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936-502

[전자정부성과평가 사업의 내역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상세내용	예산
UN전자정부 평가 대응 및 결과 분석	'16 UN전자정부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5
	'18년 UN전자정부 평가대응을 위한 관계국 동향 파악 및 사전 점검지표(안) 마련	30
OECD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분석 대응	OECD E-Leaders 2015 회의 지원·참석 OECD 주관 전자정부 성과관리 관련 질의 대응	11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전자정부 수준진단 글로벌 컨설팅 톨킷 연구 과제 성과관리 체계 구축 관련 자문 및 용역사업관리	40
행정관리역량평가 지원 (전자정부 부문)	'15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실태점검 지원 및 결과보고 계약직 보수 등	64
합 계		187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국제기구의 전자정부 수준평가는 평가방법이 비공개이고 일부 평가지수가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적 정보화 인프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국제기구 전자정부 평가순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제기구 전자정부 수준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전자정부 평가 대응 및 결과 분석(평가 동향 파악, 사전점검지표체계 마련 등)'에 총 5,500만원을 지출하였다.

UN 전자정부 수준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온라인서비스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등 3가지이다. '온라인서비스 지수'의 경우 평가방법이 비공개이고 UN이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 평가하며,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등은 인터넷 이용자 수, 취학률, 기대교육연수 등 경제·사회적 정보화 인프라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업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6년 UN 전자정부 수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하여 2014년 대비 2단계 하락하였는데, 이는 세부 평가항목 중 인적자본지수의 순위가 2014년 대비 12단계 하락한 18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사업으로 국제기구 전자정부 순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자정부 서비스·국제협력 및 홍보 분야 등에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 전자정부 수준평가의 우리나라 순위 및 산출 방법]

세부 평가항목	'14년 순위	'16년 순위	산출 방법
전자정부 발전지수(종합순위)	1위	3위(↓2)	-하위 3개 지수 합산
- 온라인서비스지수	3위	5위(↓2)	-평가방법 비공개(UN이 직접 웹사이트 방문 평가)
- 정보통신인프라지수	2위	2위(-)	-인터넷·유선전화·이동전화 가입자수 등 5개(ITU 통계)
- 인적자본지수	6위	18위(↓12)	-성인 문해율, 취학률, 기대교육연수 등(UNESCO 통계)

자료: 행정자치부

가. 현 황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 사업¹⁾은 RFID/USN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화분야 신기술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행정 서비스에 적용 ·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²⁾ 행정자치부는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36억원 전액을 출연금(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집행하였다.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	3,600	3,600	0	0	3,600	3,600	0	0

자료: 행정자치부

동 사업의 2016년 사업내역과 실집행액을 살펴보면,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구축(국민안전처)’ 10억 8,600만원,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양수산부)’ 7억 7,600만원,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사업(대구시, 국민안전처)’ 6억 1,700만원, ‘u-공유커뮤니티를 활용한 서초맵 구축(서울시 서초구)’ 4억 6,300만원 등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943-506

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동물·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이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필요한 모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해(Ubiquitous)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Sensor)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 활용토록 하는 통신망을 지칭한다.

[2016년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 사업 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관기관	2016년 집행액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1,086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776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사업	대구시, 국민안전처	617
u-공유커뮤니티를 활용한 서초맵 구축	서울시 서초구	463
합 계		2,942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촉진 사업은 정보화 기반 신기술의 적용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과 유사하다.

정보화 기반 신기술의 적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업 모두 정보화 기반 신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적용한다는 점, 사업내용이 시범사업 발굴 및 표준모델 제작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행정자치부 사업은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내부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은 신기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 시범적용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과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비교]

기준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행자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미래부)
시행주체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서비스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융합서비스부)
사업목적	- 신기술 적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 추진근거: 전자정부법 제18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활용)	- 신기술 적용, 국민 편익 증진 - 추진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및 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수혜대상	국민, 공무원 등	국민, 공무원 등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8년 ~ 계속 지원형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	사업기간: 2013년 ~ 계속 지원형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
사업방식	시범사업 발굴 및 타 지역 확산 검증 표준모델로 제시 주관부처에서 예산 확보하여 자체 확산	시범사업 발굴 및 타 지역 확산 검증 표준모델 제시 주관부처에서 예산 확보하여 자체 확산
적용기술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USN센서, RFID, NFC, IoT 및 모바일 관련 기술)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및 ICT 신기술 (로봇, 인공지능, 3D 스캐너, IoT 등)
적용분야	사회안전 및 정부3.0 분야	국가정보화

자료: 각 부처 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구 행정안전부가 담당해서 추진하였던 신기술의 공공서비스 적용 및 촉진 관련 사업의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고 이관 당시 구 안전행정부는 사회안전 및 정부3.0 분야를 전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외 분야를 전담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2016년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위험도 예측시스템 구축(국민안전처)’, ‘클라우드 자료 저장소 기반의 협업 환경 구현(행정자치부)’ 등 사회안전 및 정부 3.0과 관련된 과제를 추진하여 행정자치부와 차별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방식 등이 유사함에도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사업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간에 차별화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내역]

사업명	추진기관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 지식서비스 구축	법무부
국립검역소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스마트 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	경기도
IoT 기반 스마트 중증도 분류·추적 시스템 구축	강원도
실시간 수출컨테이너 관제서비스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영농교육 및 지능형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확대 구축	국방부, 육군훈련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위험도 예측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개방형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제주도
클라우드 자료 저장소 기반의 협업 환경 구현	행정자치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가. 현 황

국제IT협력센터구축운영 사업¹⁾은 MOU가 체결된 중점 협력국 대상으로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전자정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등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국제IT협력센터구축운영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7억 3,400만원 중 98.9%인 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으로는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운영’ 4억 9,500만원, ‘전자정부 협력 및 MOU후속조치’ 1억 5,600만원, ‘국제부담금’ 7,500만원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운영’의 내역으로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협력센터를 개소하고 공동협력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자정부 협력 및 MOU후속조치’의 내역으로 케냐 등 8개국과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Digital-5 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국제IT협력센터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IT협력센터구축운영	734	734	0	0	734	726	0	8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운영	495	495	0	0	495	495	0	0
전자정부 협력 및 MOU후속조치	156	156	0	0	156	156	0	0
국제부담금	83	83	0	0	83	75	0	8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협력 및 MOU후속조치의 내역으로 Digital-5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946-501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협력 및 MOU후속조치’로 1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다. 세부적으로 Digital-5 운영위원회 참석(뉴질랜드), 한-중앙아시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아제르바이잔, 우즈벡), OECD E-Leaders회의(에스토니아) 등 국외여비로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 개최,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운영,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조사 및 전자정부 수출실적 집계조사 등 출연금으로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 11월에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Digital-5 장관회의 개최²⁾는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협력 및 MOU후속조치라는 사업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행사성 사업이며, 이러한 행사개최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및 행사 진행 위탁사업비까지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국제IT협력센터구축운영 사업의 국외여비 및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		실제 집행액	
	내역	예산액	내역	집행액
국외여비	-국제기구 전자정부 협력회의(영국) -전자정부 협력위원회 (브라질, 우즈벡, 인도네시아)	42	-D-5운영위원회(뉴질랜드) -한-중앙아 공공행정협력단 (아제르바이잔, 우즈벡) -OECD E-Leaders회의(에스토니아)	42
출연금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업무협의 지원 (3개국×29백만원) -국제기구 등 전자정부 관련 회의 참석 (10백만원×3개국)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10백만원×3개국)	112	-제3회 D-5 장관회의(16.11월, 부산) 개최 (홈페이지구축, 홍보, 행사진행 등) -전자정부 협력 사절단 운영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흑해연안국가 등)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조사 -전자정부 수출실적 집계조사	112
	합 계	154	합 계	154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Digital-5는 전자정부 선도국가인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를 의미하며 이들 국가간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지만 공식적인 국제기구는 아니다.

가. 현 황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주민소환투표, 지방의회역량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88억 2,700만원 중 97.5%인 8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8,976	8,976	0	△149	8,827	8,608	0	219

자료: 행정자치부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82억 8,400만원, ‘주민(소환)투표 관리’ 1,400만원, ‘지방의회역량강화 및 자치입법역량강화’ 3억 1,000만원 등이다.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사업의 내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8,848	8,284
주민(소환)투표 관리	41	14
지방의회역량강화 및 자치입법역량강화	87	310
합 계	8,976	8,608

자료: 행정자치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2-300

나. 분석의견

첫째,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 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부서의 사업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사업추진비로 당초 계획과 예산에는 없었던 대변인실의 언론홍보 간담회 등에 20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영상 및 조형물 제작설치’에 1,970만원을 집행하였다.

대변인실의 언론홍보 간담회는 대변인실 기본경비 등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사업추진비로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영상 및 조형물 제작설치’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내용의 사업이다.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비효율적인 집행내역 현황]

(단위: 천원)

비목	집행단위	주요 내역	집행액
사업추진비	대변인실	- 언론홍보 간담회 등	2,000
일반수용비	자치제도과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영상 및 조형물 제작설치	19,700
합 계			21,700

자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둘째,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를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지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현지 지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외업무여비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618만원을 집행하였다. 총 7개 국가에 9명의 공무원들이 국외업무 출장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실제 국외업무 출장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재외선거 준비를 위한 출장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들이 해외 주요국가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참관하는 출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집행은 재외선거 준비라는 당초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 준비를 위한 해외 선거 참관 관련 사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추진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재외선거 관련 준비를 위한 국외 출장을 수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출장 내역]

(단위: 천원)

출장국	출장인원	출장시기	출장목적	집행액
영국, 아이슬란드	2명	2016. 6	영국 국민투표(BREXIT) 등 참관	9,887
일본	2명	2016. 7	일본 참의원 선거 참관	4,328
몽골	2명	2016. 6	몽골 국회의원선거 참관	3,865
미국	1명	2016. 11	미국 대통령선거 참관	3,079
오스트리아	1명	2016. 5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 참관	2,502
마케도니아	1명	2016. 12	마케도니아 총선 참관	2,514
합 계				26,175

자료: 행정자치부

가. 현 황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¹⁾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73억 8,900만원 중 92.9%인 68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7,389	7,389	0	0	7,389	6,862	0	527

자료: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2013년 7월 출범하였으며, 국민통합과 관련된 법제도 사항과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이다.

2016년의 주요 집행내역은 위원회 회의 개최, 지역간담회 5회, 지역간 교류협력사업, 국민통합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이다.

나. 분석의견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예방과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다양한 갈등 이슈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의뢰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원회 운영과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4-300

첫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2016년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회의 개최와 의제발굴 실적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운영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당초 예산과 계획에는 본위원회 4회, 분과위원회 96회, 연석회의 12회, 분과위원장단 회의 12회, 자문위원단 회의 48회 등 총 172회의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고 관련 참석수당 예산은 1억 6,740만원, 안전검토수당 예산은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회의 개최실적은 본위원회 2회, 분과위원회 33회, 연석회의 9회, 분과위원장단 회의 13회, 자문위원단 회의 28회 등 총 8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참석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의 집행액도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여 참석수당의 집행액은 6,555만원이었고 안전검토수당의 집행액은 6,620만원이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결안건과 중요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위원회와 연석회의가 각각 2회, 9회 개최되었지만, 안전 대부분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자체 추진 행사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에 머물렀고, 정작 국민대통합을 위한 의제발굴 및 정책추진방안에 관한 안건은 미흡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당초 예산내역		실제 집행내역	
	참석수당 (산정내역)	안전검토수당 (산정내역)	참석수당 (회의 개최건수)	안전 검토수당
본위원회	14,400 (150천 원×24명×4회)	9,000 (위원장, 300천원×30회) 120,000 (위원, 200천원×20명×30회)	3,600 (2회)	5,000
분과위원회	57,600 (150천원×4명×4분과×24회)		14,200 (33회)	12,150
연석회의, 특별위원회	28,800 (150천 원×16명×12회)		17,400 (9회)	24,100
분과위원장단 회의	9,000 (150천 원×5명×12회)		6,000 (13회)	6,650
자문위원단 회의	57,600 (150천 원×8명×48회)		24,350 (28회)	18,300
합 계	167,400	129,000	65,550	66,200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도 국민대통합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및 안건 내역]

차수(일시)	참석인원	안건
제8차('16.2.26)	위촉위원 15명 당연위원 18명	① 국민대통합과제 점검결과 및 부처 협조사항 ② 갈등해결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간담회 계획 ③ 2016년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추진계획 ④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제9차('16.6.28)	위촉위원 9명 당연위원 18명	① 제3차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안) ② 갈등해결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간담회 추진계획 ③ 법령·제도 개선 국민제안 공모 경과 및 후속 조치계획 ④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소통사업 추진 ⑤ 2016년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추진현황

자료: 행정자치부

둘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한 국민통합 의제발굴 관련 사업 및 토론회 형식의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 내역 중 국민통합 의제발굴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국민통합지원센터(7,000만원)’와 ‘공공정책 갈등현안 진단(6,100만원)’ 사업이 있다.

‘국민통합지원센터’는 국민통합 어젠다발굴 및 논의확산을 위해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연구조사 사업이고, ‘공공정책 갈등현안 진단’은 정책현안의 갈등요인 및 정책대안을 진단하는 것으로 연구문헌 및 매체를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지원센터’와 ‘공공정책 갈등현안 진단’은 갈등현안과 국민통합 어젠다를 발굴하고 진단하기 위한 연구조사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사업 내역 중 토론회 개최 사업은 ‘국민대토론회(3억 8,500만원)’, ‘국민통합가치 컨센서스(3,414만원)’, ‘국민통합지원체계 구축(7,000만원)’, ‘국민통합우수사례(2,942만원)’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의제발굴 이후에 그 확산을 위한 토론회라는 측면에서 모두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다. 또한 이러한 토론회 사업들은 종합토론회에 앞서서 권역별, 지역별 토론회와 집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다수의 토론회 개최가 사업성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¹⁾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정책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13억 7,400만원 중 98.8%인 13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내역별 집행액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7억 1,800만원, ‘생산성지수 측정·활용’ 1억 1,900만원, ‘지방규제개혁 추진’ 1억 4,700만원 등이다.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자체경쟁력지원	1,374	1,374	0	±16	1,374	1,357	0	17
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728	728	0	0	728	718	0	10
생산성지수 측정·활용	122	122	0	0	122	119	0	3
지방규제개혁 추진	150	150	0	0	150	147	0	3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지만, 이질적 성격의 내역사업이 과다하고, 평가의 과잉이 우려되며 일부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은 내역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사업의 성과관리와 효율적 예산집행이 어렵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9-307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의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71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컨설팅 추진(1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11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컨설팅(34백만원),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72백만원), 지방규제개혁 추진(147백만원), 지방자치의 날 추진(234백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합동평가 및 생산성지수 측정은 평가와 환류라는 속성이 있지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지방자치의 날 추진 등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기념식 추진이란 점에서 이질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구성은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와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이하 ‘생산성지수’)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합동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평가대상이고, 생산성지수는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대상이라는 점에서, 합동평가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만, 생산성지수는 시·군·구 자율응모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합동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하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생산성 지수와 차이가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합동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특별교부세로 재정인센티브를 지급(2016년 185억원)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운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정인센티브를 재배분하고 있다.

또한, 합동평가와 생산성 지수 모두 사후적인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 제도 비교]

(단위: 백만원)

내역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행정컨설팅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	지자체 성과관리 컨설팅
사업목적	-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각 부처별 지자체 평가 일원화 - 국정운영의 통합성 및 효율성 제고	지자체 합동 평가 사후관리 강화	지자체(시군구)의 내부 행정역량 측정 및 환류(자율응모)	지자체 내부관리 역량 개선
대상 지자체	17개 광역 지자체	17개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초 지자체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지자체 선정 방법	실적입력→온라인 평가→현지검증→합동실적검증	신청→컨설팅단 구성→컨설팅 및 처방	온라인 상호검증(지자체)→현지실사→분야별심사→최종심사	공고 및 접수 → 실태조사→컨설팅 실시→결과 활용·환류
2016 지출액	718	19	119	34

자료: 행정자치부

가. 현 황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사업¹⁾은 새마을운동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개도국 빈곤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25억 3,200만원 중 99.8%인 25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 중 중점협력국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집행액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7억 2,600만원, ‘새마을 ODA T/F’ 6억원 등이다.

[새마을운동세계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새마을운동세계화(ODA)	2,538	2,538	0	0	2,538	2,532	0	6
새마을운동시범마을 조성	726	726	0	0	726	726	0	0
새마을 ODA T/F	600	600	0	0	600	600	0	0

자료: 행정자치부

나. 분석의견

행정자치부의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사업은 이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을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운동세계화(ODA) 사업으로 2016년에 몽골,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의 37개소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16개국 207명의 개도국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초청교육을 실시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47-305

그런데 이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을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외교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ODA사업들은 ‘수원국 현지인 초청연수 → 새마을시범마을조성 → 현지교육 및 모니터 → 국제기구 행사 등 국제협력’의 순으로 사업방식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행정자치부와 외교부의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추진순서]

	초청연수	시범마을조성	봉사단	국제협력
외교부 (KOICA)	코이카연수원	마을단위 시범사업 및 패키지형 종합 농촌개발사업	월드프렌드 코리아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실시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 연수원		-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자료: 행정자치부

또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대상 국가도 중복적이어서 2016년의 경우 캄보디아, 2017년의 경우 라오스, 우간다, 키르기즈스탄에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모두 각각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였다. 외교부는 주로 수원국의 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로 초기 소규모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단위와 규모가 상이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을 및 지구 단위 농촌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점에서 외교부와 행정자치부 사업은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행정자치부와 외교부의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중복추진 국가 현황]

대상국가	행정자치부 ODA사업	외교부 ODA사업
라오스	라오스 시범마을(4개) 조성사업(~'19)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
우간다	우간다 시범마을(6개) 조성사업(~'19)	우간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건립사업('18)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시범마을(4개) 조성사업(~'21)	키르기즈스탄 새마을 기반 지역개발 사업 ('20)

자료: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540억 5,100만원(3.2%) 이 감소한 13조 7,78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558억 6,800만원(2.7%) 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6,302	6,453	6,453	6,644	191	342
기 금	13,416,677	14,226,445	14,226,445	13,772,203	△454,242	345,252
합계(총수입)	13,422,979	14,232,898	14,232,898	13,778,847	△454,051	355,868

자료: 인사혁신처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693억 7,800만원(1.0%) 이 감소한 16조 3,34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864억 9,700만원(1.8%) 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86,597	221,850	221,850	211,603	△10,247	25,006
기 금	15,861,380	16,282,002	16,282,002	16,122,871	△159,131	261,491
합계(총지출)	16,047,977	16,503,852	16,503,852	16,334,474	△169,378	286,497

자료: 인사혁신처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4억 5,300만원이며, 67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8%인 66억 4,4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4,7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453	6,453	6,453	6,771	6,624	147	0	102.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20	20	0	0	-
합 계	6,453	6,453	6,453	6,791	6,644	147	0	103.0

자료: 인사혁신처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1,940억 9,5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3조 1,838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9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152,223	3,152,223	3,159,081	3,151,666	283	7,132	9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35,014	32,182	0	2,832	91.9
합 계	3,152,223	3,152,223	3,194,095	3,183,848	283	9,964	99.7

자료: 인사혁신처

다.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수입계획액은 20조 6,189억 7,500만원이며, 19조 3,703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조 2,152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A)					
공무원연금기금	20,618,975	20,618,975	19,370,393	19,215,244	155,149	0	93.2

자료: 인사혁신처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지출계획액은 20조 6,189억 7,500만원이며 계획현액은 20조 6,518억 4,300만원이며, 이 중 19조 2,152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58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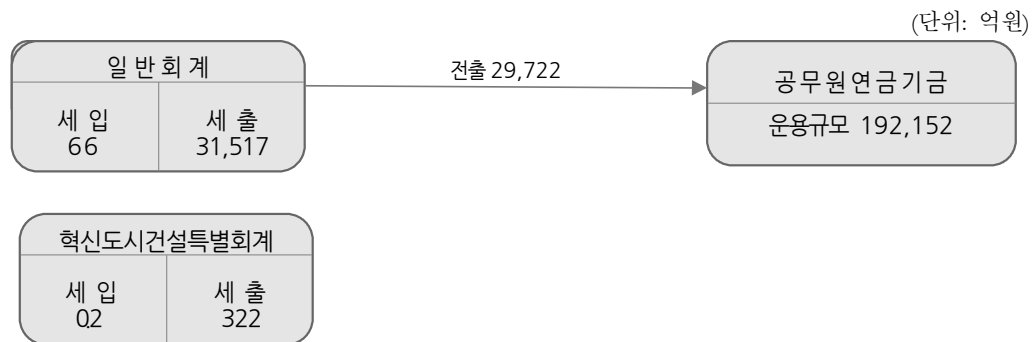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공무원연금기금	20,618,975	20,618,975	20,651,843	19,215,244	6,166	185,833	93.2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정구조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조 9,722억 4,500만원이 전출되었다.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수습행정관등), ② 국가시험시행(공직박람회), ③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공무원노사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구축 및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이 있다.

인건비(수습행정관등)은 최근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억 2,400만원이 감액(241억 5,800만원 → 240억 3,400만원)되었고,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직박람회는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4,000만원이 감액(120억 5,400만원 → 120억 1,400만원)되었으며,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은 최근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3,000만원이 감액(2억 3,800만원 → 2억 800만원)되었다.¹⁾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인사혁신처는 ①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 확대, ②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공직 전문성 강화, ③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④ 근무혁신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과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19개 중앙부처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한 인건비성 국제부담금을 해당 부처의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일 국제기구의 고용휴직 국제부담금을 부처 예산과 인사혁신처 예산으로 나누어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 등의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을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현 황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¹⁾은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한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207억 5,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20,754	20,754	0	0	20,754	20,754	0	0

자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란 공무원이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인건비·부대경비를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의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하고,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제3절(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따라 부처별 고용휴직자 공모, 고용휴직자들의 성과평가, 직위존치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 2016년에는 85개 직위에 국제기구 고용휴직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4-531

2)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제도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100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19개 중앙부처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 휴직 제도와는 별도로 자체 예산 등을 통해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이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으로 63개 직위가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65개의 직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운영은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0장제5절(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³⁾

[2016년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현황]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국제기구명	직위수(개)	휴직부처	국제기구명	직위수(개)	휴직부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	기재부, 산업부 등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5	기재부
세계보건기구(WHO)	7	복지부, 식약처 등	국제통화기금(IMF)	5	기재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4	기재부, 금융위 등	세계식량농업기구(FAO)	4	농식품부, 산업부
미주개발은행(IDB)	5	기재부, 산업부 등	미주개발은행(IDB)	4	기재부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5	교육부, 문체부	세계관세기구(WCO)	4	관세청, 기재부
UN식량농업기구(FAO)	3	농식품부, 해수부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3	기재부
국제노동기구(ILO)	4	고용부, 기재부 등	국제연합(UN)	3	경찰청, 외교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4	특허청, 문체부	UN개발계획(UNDP)	3	기재부, 외교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2	미래부, 외교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3	특허청
국제금융공사(IFC)	2	산업부, 기재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	금융위, 기재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	미래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2	산림청
UN환경계획(UNEP)	2	환경부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	2	특허청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	기재부	미주투자공사(IIC)	2	기재부
생물다양성협약(CBD)	1	환경부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2	교육부, 기재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	식약처	UN공업개발기구(UNIDO)	2	외교부, 산업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	국토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	기재부
국제개발협회(IDA)	1	기재부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1	미래부

규정을 적용한다.

- 3)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5절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제81조(연구기관 등에서의 채용을 위한 휴직) ① 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국제기구명	직위수(개)	휴직부처	국제기구명	직위수(개)	휴직부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	농식품부	아태에너지연구센터(APERC)	1	산업부
국제통화기금(IMF)	2	기재부, 금융위 등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1	방통위
국제해사기구(IMO)	1	해수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	기재부
국제무역센터(ITC)	1	조달청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1	권익위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1	산림청	국제원자력기구(IAEA)	1	산업부
UN인간정주계획(UNHABITAT)	1	국토부	국제형사재판소(ICC)	1	대검찰청
UN여성기구(UNWOMEN)	1	여가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기재부
만국우편연합(UPU)	1	미래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1	농식품부
세계기상기구(WMO)	1	기상청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1	산림청
아시아개발은행(ADB)	1	기재부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1	환경부
아프리카개발행정훈련연구센터(CAFRAD)	1	인사처	세계식량계획(WFP)	1	통일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	기재부	세계보건기구(WHO)	1	환경부
녹색기후기금(GCF)	1	기재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1	외교부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IDI)	1	감사원	한-아세안센터	1	외교부
국제이주기구(IOM)	1	법무부	한중일협력사무국	1	행자부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1	해수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1	외교부			
UN재난방재기구(UNISDR)	1	안전처			
UN마약통제프로그램(UNODC)	1	식약처			
UN세계관광기구(UNWTO)	1	문체부			
세계저축은행협회(WSBI)	1	미래부			
합 계	85	27개 부처	합 계	63	19개 부처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첫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19개 중앙부처는 자체 국제부담금을 편성하여 국제기구 신탁기금 출연,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이와 연계된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동일 국제기구의 국제부담금이 부처 예산과 인사혁신처 예산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관련 국제부담금을 인사혁신처 예산에 일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19개 중앙부처는 소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63개를 운영하였다.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 휴직자의 인건비가 해당 부처의 사업예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위한 국제부담금이 인사혁신처가 아닌 각 부처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한다.

또한 동일한 국제기구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하면서도 관련 인건비성 국제부담금을 부처 사업예산과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지출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9명의 공무원이 고용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국제부담금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예산과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다.

둘째,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달리 「공무원임용규칙」 상 고용휴직자 선발, 복무관리, 성과평가, 직위존치 평가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 국제기구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관리와 성과평가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제3절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전부처 혹은 유관부처 대상 공모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채용되고, 휴직기간 중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가 재외공관과 외교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되고, 휴직이 종료된 후 근무성과·국제기구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반면,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제5절에 의하면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소속 장관이 시행하는 자체 공모를 통해 선발되거나 공무원이 직접 국제기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선발되고, 소속장관은 국제기구 평가결과, 업무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 성과 및 업무실적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일관성 있고 엄정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구 고용휴직직위 존치여부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상·하반기에 국제기구 고용휴직 교체직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해당 직위의 유지, 전환, 폐지 등을 결정하고 있다(이하 ‘직위실효성 검토’). 그런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52개 국제기구 고용휴직직위에 대한 ‘직위실효성 검토’ 결과 해당 직위의 성과가 미흡하여 고용휴직 직위를 폐지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는 직위가 유지(직위 변경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⁴⁾

[연도별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직위실효성 검토 결과]

연도	국제기구 고용휴직 교체직위		직위실효성 검토 결과
	대상 직위수(개)	대상 국제기구	
2013	11	CBD, IAEA, FAO(3), IBRD, ILO, ISTC, OECD, UPU, WIPO	11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2014	6	OECD(4), WHO, WMO	6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2015	17	FAO, ILO(2), IMO, ITU, OECD(7), UNESCO(2), UNWOMEN, WHO, WIPI	17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2016	상반기 7	IBRD(2), UNCCD, UNEP, UPU, WHO, WMO	6개 직위 직위유지 1개 직위 폐지(IBRD)
	하반기 11	OECD(2), AfDB, IFAD, UNESCO, WHO, IDB, IFC, FAO, IAEA, WIPO	11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1개 직위 직위변경)
합계	52		51개 직위 직위유지, 1개 직위 감축

자료: 인사혁신처

4) 2016년 IBRD의 1개 직위가 폐지(감축)되었고, WHO/WPRO의 1개 직위는 변경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면서 사업 담당 직위가 총괄 담당 직위로 변경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에 대한 존치여부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직위실효성 검토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국제기구의 업무수행 평가가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직위 존치평가의 평가설계가 엄밀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직위존치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주요 업무실적, 국익기여도, 향후 계획, 직위유지 필요성으로 설정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직위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소속부처 보고, 본국 업무협조가 주요 업무실적으로 반영되고 향후 계획에는 본국 소속 부처와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일정 등이 반영됨으로써 소속 부처가 직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가 관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위존치평가를 통해 직위 유지나 폐지(감축)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직위존치평가 평가항목 내역]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역(정성평가)
주요 업무 실적	프로젝트/보고서/회의·출장·발표 등/소속부처 보고/본국 업무협조/국제기구 평가
국익기여도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 반영 등 국익 기여도
향후 계획	국제기구 협력사업 일정, 계획 등
직위유지 필요성	타 직위와의 유사중복성 등

자료: 인사혁신처

III

개별 사업 분석

1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사업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가. 현 황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사업¹⁾은 인사혁신처 내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해 기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2억 6,500만원 중 2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내역별 집행액으로는 ‘인사정책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9,900만원, ‘우수공무원 사례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7,500만원 등이다.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265	265	0	0	265	255	0	10
인사정책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100	100	0	0	100	99	0	1
우수공무원 사례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80	80	0	0	80	75	0	5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처내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033-300

인사혁신처의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사업의 목적은 인사혁신처 기관 내부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인사정책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라는 내역의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4개의 연구용역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인사관장기관 발전방안’, ‘공직의 특성을 반영한 보수 비교방법 연구’, ‘합리적 보수 설정을 위한 공무원 보수결정시스템 및 기준연구’, ‘7급 공채시험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용역과제는 중앙정부 전체의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인사혁신처 기관 내부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이라서 동 사업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 인사정책·제도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할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되어, 2016년에 한해 불가피하게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 전체의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에 관한 연구는 타 세부사업인 ‘정책연구개발(R&D)’이나 개별 정책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년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사업 연구용역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용역명	계약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공개여부	계약형태
1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인사관장기관 발전방안	30	2016.3~6	한국인사행정학회	공개	수의
2	공직의 특성을 반영한 보수 비교방법 연구	20	2016.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개	수의
3	합리적 보수설정을 위한 공무원 보수결정시스템 및 기준연구	30	2016.4.~8	한국인사행정학회	공개	수의
4	7급 공채시험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0	2016.10~12	한국인사행정학회	공개	수의

자료: 인사혁신처

가. 현 황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¹⁾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건전노사관계 구축 등을 통해 공무원노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2억 800만원 중 96.2%인 2억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주요 내역별 집행액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9,300만원, ‘공무원노사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및 노사협력사업추진’ 3,600만원,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자문운영’ 7,900만원 등이다.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208	208	0	±20	208	200	0	8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113	113	0	△20	93	88	0	5
공무원노사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및 노사협력사업	36	36	0	0	36	36	0	0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자문운영	59	59	0	20	79	76	0	3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단체 건전육성’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합법노조를 대상으로 한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48-306

정자치부는 ‘공무원단체 건전육성’(2016년 집행액 1억 9,800만원) 사업을 통해 불법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단체와의 협조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합법,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노조와의 건전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사업은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인사혁신처는 합법노조와 교섭, 노사협력사업, 단체교섭 관련 교육 및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행정자치부 역시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노조현황 관리, 유관기관 협조 및 단체 관련 갈등 조정·대응, 단체협약 분석 및 시정 협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가. 현 황

국가시험시행 사업¹⁾은 5·7·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 등 국가시험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120억 1,400만원 중 117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 중 해외공직설명회 개최 관련 집행액은 5,300만원이다.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시험시행	12,014	12,014	0	±635	12,014	11,753	0	261
해외공직설명회 개최	60	60	0	0	60	53	0	7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해외공직설명회의 효율적 운영 등 성과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1년부터 국내공직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해외공직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미국·일본 등 3개 권역 14개 대학의 한인 유학생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공직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직에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5·7·9급 공직시험의 경우 공채시험을 거쳐야 하고, 민간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는 해외유학을 마치고 민간에서의 경험을 쌓은 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대상이 주로 해외 한인 유학생이고 이들은 주로 연구직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직 공채시험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1-300

[2016년 해외공직설명회 개요]

	내 용
개최기간	2016. 5. 23.(월) ~ 5. 27.(수)
개최장소	미국·일본 등 3개 권역 14개 대학
참석대상	한인 유학생(석·박사, 박사후 과정 등)및 재외동포
주요내용	공직 소개, 채용 안내 및 질의·응답 등
참석인원	650여명

자료: 인사혁신처

가. 현 황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¹⁾은 출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하는 사업이다.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은 15억 1,500만원이고, 초과지출 승인액은 7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2억 2,900만원이며, 이중 99.7%인 2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예산으로 2016년에 시·도 지방직 7·9급, 사회복지직 9급 등 75과목과 고졸 경력임용, 일반승진·전직 시험 34과목 등 총 109과목을 출제하였다.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515	1,515	0	714	2,229	2,222	0	7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예산을 매년 과소편성하여 연도 중 초과지출 승인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다.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초과지출승인이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당초예산액 12억 4,500만원, 초과지출 승인액이 1억 300만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당초예산액 11억 2,100만원, 초과지출 승인액이 8억 4,700만원이었고, 2015년에는 당초예산액 10억 6,500만원, 초과지출 승인액은 9억 3,500만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당초예산액 15억 1,500만원, 초과지출 승인액은 7억 1,400만원이다.

2014년부터 지방사회복지직 9급 시험이 수탁되면서 초과지출 승인액이 큰 폭으로 증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42-650

가하였다. 2016년에는 지방사회복지직 9급 시험 수탁출제가 예산에 반영되어 초과지출 승인액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지방직 9급 수탁출제 과목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서 초과지출 승인액의 규모는 7억 1,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초과지출분은 국회 심의를 벗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는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담당 재무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초과집행 한도액을 통지하는 절차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승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도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초과지출 승인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내역사업명	예산액	초과지출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3	지방직 9급 수탁출제	628	103	731	717	14
	지방직 7급 수탁출제	433	0	433	431	2
	일반승진시험 등 수탁출제	184	0	184	160	24
	합 계	1,245	103	1,348	1,308	40
2014	지방직 9급 수탁출제	576	374	950	950	0
	지방직 7급 수탁출제	425	48	473	473	0
	일반승진시험 등 수탁출제	120	166	286	274	12
	지방사회복지직 9급 수탁출제	0	259	259	259	0
	합 계	1,121	847	1,968	1,956	12
2015	지방직 9급 수탁출제	576	230	806	806	0
	지방직 7급 수탁출제	425	51	476	476	0
	일반승진시험 등 수탁출제	64	326	390	376	14
	지방사회복지직 9급 수탁출제	0	328	328	328	0
	합 계	1,065	935	2,000	1,986	14
2016	지방직 9급 수탁출제	622	358	980	980	0
	지방직 7급 수탁출제	429	117	553	553	0
	일반승진시험 등 수탁출제	168	206	367	360	7
	지방사회복지직 9급 수탁출제	296	33	329	329	0
	합 계	1,515	714	2,229	2,222	7

자료: 인사혁신처

가. 현 황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사업¹⁾은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우수민간인재의 영입을 확대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8억 1,100만원 중 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811	811	0	±118	811	760	0	51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사업 중 기타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집행하였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운영비(210-16목)로 편성된 위원수당 등 1억 1,8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하였다. 해당 일반수용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비용과 사물실 이전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검토와 면접기법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는 당초 예산에 없는 사업이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10회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29명의 위원들에게 참석수당과 안전검토사례비 등을 지출하였고 연도말(12월 29일)에 일괄 집행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45-302

가. 현 황

공무원교육훈련 사업¹⁾은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505억 3,000만원 중 48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 중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예산현액 3억 3,900만원 중 집행액은 4,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300만원, 불용액은 1,600만원이다.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교육훈련	50,530	50,530	0	0	50,530	48,379	283	1,868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339	339	0	0	339	40	283	16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대부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2016년 당초 계획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시스템과 e-사람시스템의 연계였다. 그런데, 2015년에 추진하였던 1단계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자 2016년 2단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여 1단계 사업의 개선 사항(훈련비 정산 및 통계 기능, 농협 및 항공사 GTR 연계, DB 설계 기능개선) 등을 e-사람시스템과 연계하는 고도화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범위를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발주가 늦어져 사업비의 대부분(2억 8,3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2-300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계획 및 실제 집행내역]

	구 분	1단계 기반구축('15년)	2단계 고도화('16년)	3단계 활성화('17년)
ISP 계획	사업내용	·통합시스템 구축 ·은행, 항공사(GTR) 연계	·e-사람시스템 연계 ·인재원 이러닝시스템 연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추정예산 (ISP제시)	5.7억원	5억원	3억원
실제 집행	사업내용	·통합시스템 구축 ·은행, 항공사(GTR) 연계	·1단계 사업 중 미흡부분 보완 (국외훈련비 정산기능 오류보완, 항공사 GTR 연계 등) ·e-사람 연계, 통계정보 구축 및 서식 표준화	
	예산	4억원 (개발비 3억원, 자산취득비 1억)	3.4억원 (개발비 3억원, 자산취득비 4천만원)	3억원 (개발비)

자료: 인사혁신처

가. 현 황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 일부를 공무원연금의 수지 차 적자보전금에 충당(이하 “기금운용수익 충당금”)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19조제2항¹⁾과 제69조제8항²⁾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적자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금운용수익 충당금을 미편성하였으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2015년부터 기금운용수익 충당금을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인사혁신처는 기금운용수익 충당금을 공무원연금 수익사업을 통한 현금유입액의 50%로 산정하고 있으며³⁾, 이에 따라 2015년 1,283억원, 2016년 672억원, 2017년 1,002억원의 기금운용수익 충당금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연도별 기금운용수익 충당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기금운용수익(A)	평가이익(B)	현금유입(C=A-B)	기금운용수익 충당금(C×50%)
2015	2,566	-	2,566	1,283
2016	1,602	259	1,343	672
2017	2,270	267	2,003	1,002

자료: 인사혁신처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 1) 「공무원연금법」 제19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②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2)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 3) 기금운용수익 충당금 = 현금유입액(기금운용수익 - 평가이익) × 50%이며, 현금유입액은 기금운용수익에서 평가이익을 제외한 것으로, 평가이익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이 없는 장부상 이익임.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부응하여 공무원연금기금 수익의 일부를 적자보전에 충당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여건에 따라 적자보전 충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금운용수익 중 충당금과 관련된 절차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공단 회계규정」에 규정되어 있다.⁴⁾ 그러나 충당금으로 전입되는 기금운용수익의 범위 및 충당금의 규모와 관련된 법령상 규정은 없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연금 수익사업을 통한 현금유입액의 50%를 충당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기금운용수익의 범위와 충당금의 규모와 관련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 보전금의 충당여부와 규모는 기금운용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 그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기금수익의 적자보전금 충당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공무원연금공단 회계규정」 제6조 ⑫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입충당금은 연금회계에서 수익으로, 기금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며, 그 금액 및 처리시기 등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경찰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75억 5,200만원(9.7%)이 증가한 9,88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 779억 2,600만원(8.6%)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911,061	901,435	901,435	988,987	87,552	77,926

자료: 경찰청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949억 6,800만원(3.0%)이 감소한 9조 5,142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 5,190억 8,600만원(5.8%)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8,995,162	9,809,216	9,809,216	9,514,248	△294,968	519,086

자료: 경찰청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014억 3,500만원이며, 2조 432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89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1조 165억 8,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76억 7,300만원을 불납결손으로 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30,598	830,598	830,598	1,907,014	852,847	1,016,550	37,617	102.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63,483	63,483	0	0	순증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837	70,837	70,837	72,749	72,658	36	55	102.6
합 계	901,435	901,435	901,435	2,043,245	988,987	1,016,586	37,673	109.7

자료: 경찰청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조 8,777억 8,700만원이며, 9조 5,53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65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75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723,225	9,723,225	9,732,786	9,415,009	16,515	301,262	96.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9,551	49,551	63,236	62,310	0	926	98.5
지역발전특별회계	5,467	5,467	5,467	5,467	0	0	10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837	70,837	76,298	70,895	52	5,351	92.9
합 계	9,849,081	9,849,081	9,877,787	9,553,680	16,567	307,540	96.7

자료: 경찰청

다. 재정구조

2016회계연도 경찰청의 회계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58억원 전출되었다.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BTL직장어린이집 사업, ② 유류비, ③ 교통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등이 있다.

BTL직장어린이집 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40억원이 감액(167억원 → 127억원)되었고, 유류비는 단가 인하에 따라 31억원이 감액(804억원 → 772억원)되었으며, 교통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은 통신망 변경에 따른 통신료 지출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5억원이 감액(393억원 → 388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① 제주교통방송국 개국 사업 ② 교통조사계 사무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제주교통방송국 개국 사업은 제주교통방송국 개국에 필요한 건축, 방송장비 및 프로그램 제작비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2016년 8월까지 개국이 지연될 경우 「방송법」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 46억원이 증액(신규)되었고, 교통조사계 사무환경 개선 사업은 개방된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조사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수사정보 유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인권친화적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20억원이 증액(신규)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의경대체지원 사업이 있다. 의경대체지원 사업에 대해 「살수차를 ‘살수차 운용지침’에 부합되도록 질서유지용으로 사용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맞춤형치안**으로 치안만족도 제고, ② 경찰 인력증원·4대 사회악 근절 등 **국정과제 지속 추진**, ③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정, ④ 당당한 경찰상 확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경찰청(본청) 인건비의 집행률은 87.9%로 전년 대비 4.7%p 높게 나타났으나 지방경찰청 인건비의 집행률은 98.5%로 전년 대비 0.2%p 낮게 나타났다.

둘째,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전문교육기관 외에 현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상시학습 교육훈련과 외부전문기관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찰인력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교육의 경우 콘텐츠는 외부강사가 강의한 법이론분야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현장강사 양성교육은 교육축제와 함께 일괄 추진되었다.

셋째, 2016년도에 28개 세부사업에 대해 142건, 363억 2,600만원의 예산을 당겨배정 하였으나 재정조기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이·전용내역의 국회보고 시한 미준수, 월별 재정집행부진 사업 선정 등 재정집행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 인건비 집행의 문제점

가. 현 황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 있으며, 본부인건비 단위사업¹⁾과 소속기관인건비 단위사업²⁾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6년에 인건비로 예산현액 7조 5,540억 6,200만원 중 7조 2,710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830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경찰청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C/A	C/B
본부 인건비	7,478,299	7,478,299	2,542 △12,482	7,468,359	7,191,250	277,109	96.2	96.3
경찰청(본청) 인건비	1,593,148	1,593,148	△3,945	1,589,203	1,397,356	191,846	87.7	87.9
지방청인건비	5,831,733	5,831,733	△5,995	5,825,738	5,741,694	84,043	98.5	98.6
방위비인건비	53,418	53,418	0	53,418	52,200	1,218	97.7	97.7
소속기관 인건비	81,276	81,276	+4,446 △19	85,703	79,777	5,926	98.2	93.1
계	7,559,575	7,559,575	+6,988 △12,501	7,554,062	7,271,027	283,034	96.2	96.2

주: “소속기관”은 경찰청 소속 4개 교육기관(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을 말함
자료: 경찰청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101

2) 예산코드: 일반회계 7102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³⁾의 경우 당초 예산액 1조 5,931억 4,800만원 중 39억 4,500만원을 이·전용 감액한 예산현액 1조 5,892억 300만원 중 1조 3,97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18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 코드	목명	세목 코드	세목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110	인건비	01	보수	1,588,068	1,583,429	1,391,588	191,841
110	인건비	02	기타직보수	0	48	47	0
110	인건비	04	연가보상비	1,837	1,976	1,971	5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3,243	3,750	3,750	0
소 계				1,593,148	1,589,203	1,397,356	191,846

주: 경찰청인건비 보수(110-01목)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의 봉급, 제수당, 지방청·교육기관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지방경찰청 이하 일선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편성되어 있음.

자료: 경찰청

지방경찰청인건비 사업⁴⁾은 당초 예산액 5조 8,317억 3,300만원 중 59억 9,500만원을 이·전용 감액한 예산현액 5조 8,257억 3,800만원 중 5조 7,41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840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지방경찰청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 코드	목명	세목 코드	세목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110	인건비	01	보수	5,530,851	5,524,027	5,441,617	82,409
110	인건비	02	기타직보수	0	1,612	1,609	3
110	인건비	04	연가보상비	106,965	106,689	105,469	1,220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193,917	193,410	192,999	411
소 계				5,831,733	5,825,738	5,741,694	84,043

자료: 경찰청

3) 예산코드: 일반회계 7101-111

4) 예산코드: 일반회계 7201-112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과 지방경찰청인건비 사업이 당초 예산편성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경찰청인건비 사업으로 부터 직급보조비 5억 600만원, 연가보상비 1억 4,000만원 등 6억 4,6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치안활동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의 인건비 중 45억 9,100만원을 행정업무지원 사업⁵⁾의 특정업무경비로 전용하였다.⁶⁾

[인건비 사업 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으로			전용 등 사유
	사업명	비목	금액	사업명	비목	금액	
전용	경찰청인건비	110-01 (보수)	4,591	행정업무지원	250-03	4,591	특정업무경비 부족
내역 변경	지방경찰청 인건비	<u>250-01</u> (직급 보조비)	<u>506</u>	경찰청인건비	<u>250-01</u> (직급 보조비)	<u>506</u>	정·현원 차이
내역 변경	지방경찰청 인건비	<u>110-04</u> (연가 보상비)	<u>140</u>	경찰청인건비	<u>110-04</u> (연가 보상비)	<u>140</u>	정·현원 차이
세목 변경	경찰청인건비	110-01	48	경찰청인건비	110-02	48	한시임기제 보수 지급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본청 및 지방경찰청 전체 연가보상비를 소속기관별 인원을 기준으로 재배정하고 있으며, 정·현원 차이에 따른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의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지방경찰청인건비 사업의 연가보상비 잔여재원에서 내역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5) 예산코드: 일반회계 7131-311(행정업무지원 사업은 경정 이하 경찰관 모두에게 월 170,000원씩 치안활동비 지원, 노후 경찰관서 신·개축에 따른 비품 지원,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6) 예산집행지침에서는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16, p172.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7)에서는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건비(110목)의 경우 기타직보수(110-02목)으로의 전용을 제외하고는 자체전용을 허용하고 있다.⁹⁾

따라서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의 연가보상비 총당과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 내 세목조정을 통해 총당이 가능한 직급보조비를 지방경찰청인건비 사업에서 내역변경 집행한 것은 지방경찰청 인건비 사업을 별도 편성한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¹⁰⁾

한편,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인건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으며,¹¹⁾ 경찰청(본청) 인건비의 불용률이 전년대비 4.4%p(26.3%) 감소한 반면, 지방경찰청 인건비의 경우 0.2%p(11.8%) 감소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경찰청(본청) 및 지방경찰청 인건비 불용 규모]

(단위: 백만원, %)

연도	경찰청(본청) 인건비				지방경찰청 인건비			
	예산액(A)	집행액	불용		예산액(C)	집행액	불용	
			금액(B)	B/A			금액(D)	D/C
2015	1,531,712	1,275,471	256,840	16.7	5,476,074	5,381,278	86,948	1.7
2016	1,593,148	1,397,356	191,846	12.3	5,81,733	5,741,694	84,043	1.5

자료: 경찰청

7)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1, p.57.

8) 연가보상비는 2013년부터 보수항목에서 분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9)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1, p.212.

10)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의 110목은 예산액 1조 5,880억 6,800만원 중 행정업무지원 사업의 250목으로 45억 9,100만원을 승인 전용한 후에도 1,918억 4,100만원을 불용한 점에서 경찰청(본청)인건비 사업에서 세목조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청은 예산 부족분 발생 시 내부적으로 예산총당 우선순위를 세목조정(관서장 결재), 내역변경(기획조정관 결재), 자체전용(차장 전결), 승인전용 및 이용(청장 결재 후 기획재정부 승인) 순서로 설명하였다.

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6.9.1.

가. 현 황

「경찰법」 제2조는 국가경찰의 조직으로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 및 252개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 지역경찰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43조는 경찰서를 최대 252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경찰서의 위치·관할구역 등은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에서는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경찰서의 등급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경찰청훈령)에서 등급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 조직 및 등급 관련 규정]

경찰법	경찰청직제 ¹⁾	경찰청직제 시행규칙 ²⁾	경찰청훈령 ³⁾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7조(경찰서장)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경찰서) ①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52개 경찰서의 범위 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제21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은 별표 2와 같다. 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 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경찰서의 등급기준) 경찰서의 등급결정 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인 요인인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의 변경 또는 치안 수요의 현저한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경찰법	경찰청직제 ¹⁾	경찰청직제 시행규칙 ²⁾	경찰청훈령 ³⁾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으로 정한다.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경찰청훈령)

경찰서의 등급지 결정은 경찰서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서 등급 결정기준]

등급	경찰서 등급결정기준 [별표2]	추가 기준(제8조)
1 급 지 (대도시형)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경찰서 인구 25만명 이상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25만명 이상 관할 경찰서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인 요인인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
2 급 지 (중소도시형)	인구 25만명 미만 시에 소재한 경찰서 인구 15만명 이상 25만명 미만 관할경찰서	
3 급 지 (농어촌형)	인구 15만명 미만 군에 소재한 경찰서	

자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 제8조 및 [별표2]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6년말 기준 252개 경찰서의 등급지 현황을 보면, 1급지 경찰서가 143개(5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3급지 경찰서 68개(27.0%), 2급지 경찰서가 41개(16.3%)이다.

[2016년 등급지별 경찰서 현황]

(단위: 개소, %)

등급	개소	등급결정기준	경찰서 현황
1급지	143 (56.7%)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경찰서	82개소(서울31, 부산15, 대구10, 인천8, 광주5, 대전6, 울산4, 제주3)
		인구 25만명 이상 시에 소재한 경찰서	58개소(경기29, 강원2,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2, 경북5, 경남10)
		인구 25만명 이상 관할 경찰서	1개소(목포1)
		치안수요 고려 등급상향조정 경찰서	2개소(강릉1, 서산1)
2급지	41 (16.3%)	인구 25만명 미만 시에 소재한 경찰서	33개소(경기10, 강원9, 전북3, 전남2, 경북6, 경남3)
		인구 15만명 이상 25만명 미만 관할 경찰서	1개소(당진1)
		치안수요 고려 등급하향조정 경찰서	3개소(세종1, 홍성1, 무안1)
		치안수요 고려 등급상향조정 경찰서	4개소(완주1, 고흥1, 해남1, 칠곡1)
3급지	68 (27.0%)	인구 15만명 미만 군에 소재한 경찰서	6개소(경기3, 강원10, 충북7, 충남5, 전북7, 전남13, 경북12, 경남10)
		치안수요 고려 등급하향조정 경찰서	1개소(강화1)
합계	252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치안서비스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2016년도에 경찰서에 배정한 예산 7,954억 1,100만원의 등급지별 배정 내역을 보면, 76.0%인 6,047억 7,900만원이 1급지에 배정되었고, 2급지와 3급지에는 각각 11.5%, 12.4%를 배정하였다.

[2016년 등급지별 경찰서 개수 및 예산배정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등급	경찰서 수		2016년 예산		
	개소	비율(A)	금액	비율(B)	평균 예산액
1급지	143	56.7	604,779	76.0	4,229
2급지	41	16.3	91,717	11.5	2,237
3급지	68	27.0	98,915	12.4	1,455
계	252	100.0	795,411	100.0	3,156

자료: 경찰청

2016년 12월 현재 파출소는 1,473개소, 지구대는 516개소가 있다. 1급지 경찰서에는 757개 파출소와 410개의 지구대에 경찰인력 35,940명(78.4%)이 배치되었고, 2급지 경찰서에는 294개 파출소와 65개의 지구대에 경찰인력 4,975명(10.9%)이 배치되었으며, 3급지 경찰서에는 422개 파출소와 41개의 지구대에 경찰인력 4,908명(10.7%)이 배치되어 있다.

[2016년 등급지별 파출소 및 지구대 개수 및 인력 현황]

(단위: 개, 명)

등급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 및 지구대 수(%)	인력 계(%)
	수(%)	인력(%)	수(%)	인력(%)		
1급지	757(51.4)	16,014(69.4)	410(79.5)	19,926(87.6)	1,167(58.7)	35,940(78.4)
2급지	294(20.0)	3,088(13.4)	65(12.6)	1,887(8.3)	359(18.0)	4,975(10.9)
3급지	422(28.6)	398(17.2)	41(7.9)	930(4.1)	463(23.3)	4,908(10.7)
계	1,473	23,080	516	22,743	1,989	45,823

자료: 경찰청

이와 같이 경찰청은 경찰서 등급에 따라 조직·인력·차량·장비 및 예산 등 치안인프라를 차등 배정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인력 및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도시와 도시이외지역의 범죄발생건수의 비중을 비교해 볼 때 도시지역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도시이외 지역은 오히려 감소 추세이다.¹⁴⁾ 따라서 경찰청은 도시지역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 및 도시이외 범죄발생건수 비교]

(단위: 건, %)

	계(A)	도시 ¹⁾		도시이외	
		발생건수(B)	비중(B/A)	발생건수(C)	비중(C/A)
2015	1,861,657	1,745,863	93.8	115,794	6.2
2014	1,793,400	1,680,157	93.7	113,243	6.3
2013	1,857,276	1,728,761	93.1	128,515	6.9
2012	1,778,966	1,654,386	93.0	124,580	7.0

주: 1) 범죄발생지 구분에서 도시이외의 각 도시 및 기타도시를 합한 것임.

자료: 경찰청의 연도별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제작됨

13) 경찰청의 주요사업 중 생활안전활동 사업(경미범죄심사위원회, 기동순찰대),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사업(가정폭력 등 솔루션팀, 학대전담경찰관), 인권보호활동(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치안서비스 사업은 1급지 대도시 경찰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14) 경찰청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발생지별 범죄발생건수 통계를 53개 도시·기타도시 및 도시이외로 구분하였고 2015년에는 86개 도시·기타도시 및 도시이외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어 도시 및 도시이외의 범죄발생건수 비교는 도시와 기타도시를 합하여 “도시”로 하고 “도시이외”와 비교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¹⁵⁾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 단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 포함)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¹⁶⁾ 「경찰법」 및 경찰청 조직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경찰청은 시·도에 모두 설치하고 있으나,¹⁷⁾ 경찰서는 총 261개 시·군·구 중 1개 경찰서를 둔 지역이 196개이고 2개 경찰서를 둔 지역이 56개인 반면, 경찰서를 설치하지 않은 시·군·구 지역도 9곳이 있다.¹⁸⁾

그러나 치안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찰서는 최소한 시·군·구(자치구 포함) 단위에서는 경찰서를 모두 설치하는 방안과 최소 개수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 경찰서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개 설치	2개 이상	미설치 시·군·구	관할경찰서	
			명칭	등급지
196	56	부산 수영구	부산남부·연제	1
		인천 동구	인천중부	1
		인천 옹진군	인천중부	1
		울산 북구	울산중부·동부	1
		양양군	속초	2
		증평군	괴산	3
		태안군	서산	1
		계룡시	논산	2
		신안군	목포	1

자료: 경찰청

15)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군·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16)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행정체계 중 특별시에는 자치구, 광역시에는 자치구·군, 도에는 시·군을 두고 있다.

17) 경기도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2016년 3월에 분할되었다.

18) 경찰청은 2017년 6월 현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의 경찰서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6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은 9조 8,491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87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조 8,778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9조 5,537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6억원이며, 불용액은 3,075억이다.

[2016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인건비	75,596	0	△55	75,541	72,710	0	2,830
	기본경비	3,949	0.2	9	3,958	3,945	0.1	13
	사업비	17,688	95	46	17,829	17,495	165	169
	소계	97,232	96	0	97,328	94,150	165	3,012
책임운영기 관특별회계	인건비	348	0	△3	345	331	0	13
	기본경비	37	0	3	40	40	0	1
	사업비	324	55	0	378	338	1	40
	소계	708	55	0	763	709	1	5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소계		496	137	0	632	623	0	9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55	0	0	55	55	0	0
합계		98,491	287	0	98,778	95,537	166	3,075

자료: 경찰청

3-1. 재정조기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당겨배정 예산집행 부적절

가. 현 황

2016년 1월 정부는 1분기의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진작효과와 경제파급효과가 큰 SOC사업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하였고,¹⁾ 이를 통해 소비심리 제고 및 제조업 등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²⁾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 정기배정³⁾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시기보다 당겨서 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되, 당겨배정 현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⁴⁾

경찰청은 2016년도에 28개 세부사업에 대해 142건, 363억 2,600만원의 예산을 당겨배정하였다.

[2016년도 당겨배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수 (당겨배정 집행 건수)	예산액	당겨배정액			집행액			불용액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28(142)	9,849,081	33,487	2,638	201	2,765,633	4,984,781	7,249,349	304,540

주: 이월 제외

자료: 경찰청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일호 부총리, 1/4분기 총력 재정조기집행 당부”, 2016.1.26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14.3조원 초과달성-소비심리회복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기대”, 2016.4.5

3)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산의 배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분기별로 배정하는 정기배정(제43조제1항),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긴급배정(제43조제2항), 수시배정(제43조제4항), 배정유보(제43조제5항) 등 예산배정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p.14.

나. 분석의견

첫째, 경찰청은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당겨배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⁵⁾의 2016년도 예산현액 861억 4,900만원 중 97.6%인 840억 5,500만원을 소속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였다.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86,064	86,064	85	86,149	86,072	76
복리후생비	84,060	84,060	△4	84,056	84,055	1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료 지급을 위해 260억원을 당겨배정(2016.2.5.)하였다. 그러나 이 중 50.3%인 128억 6,400만원을 2월 11일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4월 26일에 2/4분기 보험료로 집행하였다. 이는 경찰청이 단체보험 계약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입하기로 계약한 데 따른 것이다.⁶⁾

향후 경찰청은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당겨배정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청은 환율 등을 고려하여 당겨배정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범죄감식 및 관리 사업⁷⁾의 2016년도 예산현액 168억 5,400만원 중 56.7%인 95억

5) 예산코드: 일반회계 7111-222

6) 경찰청은 2016년도에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보험업체로부터 분기별로 보험료 납입요청을 받아 집행하였다. 2016년도 단체보험 보험료 중 1/4분기분 128억 6,400만원은 2016년 2월 11일에, 2/4분기분 129억 3,200만원은 2016년 4월 26일에, 3/4분기분 103억 5,000만원은 2016년 6월 2일에, 4/4분기분 89억 3,900만원은 2016년 10월 19일에 집행하였다. 경찰청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재무관은 공사, 제조,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금전체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누락되어 당겨배정 요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4/4분기까지의 보험료 전액을 당겨배정하지 않고 2/4분기 보험료만 당겨배정한 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5,100만원은 범죄자 DNA은행 운영비이다. 경찰청은 범죄자 DNA은행 운영을 위해 9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범죄감식 및 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죄감식 및 관리	16,854	16,854	16,854	16,815	0	39
범죄자 DNA은행 운영	9,551	9,551	9,551	9,538	0	13

자료: 경찰청

당초 DNA시약 구입을 위한 예산은 1/4분기에 49억 300만원, 3/4분기에 30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경찰청은 DNA시약을 연초에 일괄구매하기 위하여 3/4분기 배정 예산 30억 2,000만원을 당겨배정(2016.2.17.)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DNA 오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증받은 외국 수입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괄 구입을 통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당겨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2016.2.19. 기준 1달러당 1,233원에서 2016.9.7. 기준 1,090.5원으로 변동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구매하였을 경우에 비해 손실이 발생⁸⁾하였다. 따라서 향후 경찰청은 수입품 구매 시 환율변동 등을 고려하여 당겨배정 대상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청은 예산을 당겨배정한 후 당겨배정에 따른 조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생활안전활동 사업⁹⁾의 2016년도 예산현액 140억 100만원 중 9.4%인 13억 1,900만원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경찰청은 동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다.

7)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2-311

8) 원달러 환율 1\$=1,233.00원(2016.2.19. 기준)인 상반기에 63억원을 집행하여 510,949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수량을 구입하였으나, 만약 하반기에 1\$=1,090.50원(2016.9.7.기준)으로 63억원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577,717달러에 해당하는 수량을 구입할 수 있어 총 66,768달러에 해당하는 수량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11

[생활안전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활안전활동	13,789	13,789	212	0	14,001	13,981	0	20
자율방범대 지원	1,107	0	212	0	1,319	1,319	0	0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6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중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을 위해 3억 1,600만원을 당겨배정(2016.4.6.)하여 부산·충북·경북지방경찰청에 재배정(2016.4.28.)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방경찰청에서는 2016년 9월~11월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당겨배정한 예산이 8개월 후에야 전액 집행되었다.¹⁰⁾

[자율방범대 방한복 보급 예산 집행현황]

연도	구분	수량 (벌)	단가 (원)	예산 재배정일	계약일	예산집행액 (백만원)	보급일
2015	서울청	2,248	48,000	2015.8.28	2015.11.9 2015.12.5	108	2016.01.13
	강원청	2,280	48,000	2015.8.28	2015.9.16	108	2016.01.23
2016	부산청	2,245	46,800	2016.4.28	2016.9.30	105	2016.11.24
	충북청	2,245	46,800	2016.4.28	2016.9.5. 2016.11.24	105	2016.11.14
	경북청	2,241	46,800	2016.4.28	2016.10.10 2016.11.10	105	2016.12.14

자료: 경찰청

향후 경찰청은 예산을 당겨배정한 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겨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10) 경찰청은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매 시 기성품이 아닌 방한점퍼 제작을 조달 의뢰하고 이에 따른 낙찰 차액분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구매를 함에 따라 연도말에 물품이 보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전용내역 국회보고 시한 준수 필요

가. 현 황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¹¹⁾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용·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용·이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예산의 이·전용 내역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한에 제출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경찰청은 2016년도 이·전용한 전체 40건의 내역을 2017년 1월에 일괄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경찰청은 예산 이·전용 내역에 관한 국회보고 시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도 이·전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계
건 수	2	38	40
집행액	966	11,728	12,694

자료: 경찰청

11)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3. 재정집행관리의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국가재정법」 제97조제1항¹²⁾은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¹³⁾은 매월 예산의 월별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6년도에 기획재정부에 매월 제출한 재정집행결과보고서에 집행부진사업으로 선정·보고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19건이다.¹⁴⁾

-
- 12)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 14) 경찰청 소관 세출 사업은 2개 분야, 3개 부문, 15개 프로그램, 54개 단위사업, 153개 세부사업(인건비·기본경비사업 96개 포함)으로 구성된다.

[2016년 재정집행결과보고서상 월별 집행부진사업 선정·보고 현황]

(단위: %)

세부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고 횟수 (회)
교통과학장비관리	○ (3.5)	○ (10.4)	○ (20.3)		○ (32.1)		○ (47.4)	○ (54.9)		○ (70.6)	○ (77.8)	○ (95.7)	9
경찰기동력강화				○ (0.3)	○ (3.7)	○ (33.2)	○ (55.2)	○ (56.9)		○ (63.3)			6
청사시설관리		○ (0.9)		○ (9.4)			○ (39.7)	○ (45.8)		○ (67.6)			5
경찰복지증진					○ (19.0)	○ (33.3)			○ (52.6)				3
의경대체지원									○ (56.4)		○ (70.3)	○ (81.5)	3
경찰유무선망개선										○ (73.1)	○ (78.8)		2
피복관리						○ (34.6)						○ (93.9)	2
헬기운용 및 현대화	○ (1.9)					○ (22.4)							2
경찰대학이전			○ (84.1)										1
경찰정보보호기반 고도화											○ (80.6)		1
도로교통출연금									○ (86.6)				1
사이버범죄수사						○ (20.2)							1
생활안전활동					○ (14.9)								1
의경운영및관리												○ (93.4)	1
아동안전지킴이		○ (8.9)											1
진료업무운영관리	○ (3.6)												1
차량관리			○ (18.6)										1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 (0.0)									1
형사사법업무 전산화	○ (0.0)												1
보고 사업수 소계(개)	4	3	3	3	4	5	3	3	3	4	4	4	-

주: 1. ()는 해당월까지 누계집행률임.

2. 정렬순서는 보고횟수가 많은 사업>가나다 순서임.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재정집행결과를 매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재정집행관리를 하고 있다. 동 법률에 집행부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찰청은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예산배정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큰 사업 3~5개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역량과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사업¹⁵⁾의 경우 월별 집행률이 경찰청 소관 57개 주요 사업의 평균 집행률보다 저조하였고, 1월·4월·5월을 제외한 매월 누계집행률이 부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집행률보다 저조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에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실무역량과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사업 월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경찰청 소관 57개 주요사업 집행실적		재정집행부진 선정사업 집행실적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 경찰관선발·교육 집행실적	
	총 집행액	평균 집행률	최저집행률	최고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1월	2,215	8.0	0.0	3.6	3	4.0
2월	3,362	14.2	0.9	10.4	7	8.5
3월	5,698	25.6	18.6	84.1	14	16.1
4월	6,694	31.6	0.0	9.4	19	21.6
5월	7,963	39.1	3.7	19.0	21	24.5
6월	11,202	54.0	20.2	34.6	29	32.7
7월	11,247	56.0	39.7	55.2	33	37.4
8월	12,222	62.0	45.8	56.9	37	42.3
9월	13,707	69.4	52.6	86.6	44	50.4
10월	14,784	76.0	63.3	73.1	52	59.4
11월	15,963	82.3	70.3	80.6	59	67.5
12월	17,815	96.7	81.5	95.7	72	83.0

자료: 경찰청

15) 예산코드: 일반회계 4135-311

향후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집행관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규모와 집행률을 고려하여 집행부진사업을 선정하는 등 재정집행관리
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¹⁶⁾

3-4. 지방경찰청별 재정정보 공표 필요

가. 현 황

경찰청은 2016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현액 9조 8,777억 8,700만원 중 10.0%인 9,966억 1,000만원을 경찰청(본청)에, 86.6%인 8조 5,581억 700만원은 지방경찰청에 배정하였다.

[경찰청 소관 예산의 경찰청·지방경찰청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청(본청)	982,648	982,648	9,280	9,446 △25,928	996,610	689,677	15,702	291,231
지방경찰청	8,557,826	8,557,826	281	48,104 △35,507	8,558,107	8,549,244	103	8,760
합 계	9,540,474	9,540,474	9,561	57,550 △61,436	9,554,717	9,238,921	15,805	299,991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지방경찰청별 예산집행 상황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9조제3항¹⁷⁾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16)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부진 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겨배정을 하였거나 긴급배정한 사업 등도 재정집행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17)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 지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관련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경찰청 소관 예산 중 약 90%를 지방경찰청에 배정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방경찰청별 예산운용상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¹⁸⁾

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경찰청은 「국가재정법」에서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경찰청별 예산운용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경찰청 소속 전문교육기관 교육,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경찰청 소속 전문교육기관 교육은 경찰대학운영 사업¹⁾, 경찰보수교육 사업²⁾, 신임순경교육 사업³⁾, 수사경찰전문교육 사업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대학 및 경찰교육원의 경찰간부 양성 교육, 중앙경찰학교의 신임순경 교육,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수사관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4개 전문교육기관 교육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450억 6,700만원 중 99.1%인 44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9,100만원은 불용하였다.

[전문교육기관 교육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대학운영	11,647	11,647	0	△85	11,562	11,509	0	53
경찰보수교육	8,340	8,340	0	85	8,574	8,251	0	323
신임순경교육	28,281	28,281	0	△73	22,392	22,378	0	14
수사경찰전문교육	2,466	2,466	0	73	2,539	2,538	0	1
합 계	50,734	50,734	0	316	45,067	44,676	0	391

자료: 경찰청

다음으로, 실무역량과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사업⁵⁾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 경찰관 상시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실·국(경무인사기획국, 교통국, 과학수사관리관, 사이버안전국, 외사국 등)은 개별 세부사업들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4131-311

2) 예산코드: 일반회계 4132-311

3) 예산코드: 일반회계 4133-311

4) 예산코드: 일반회계 4134-311

5) 예산코드: 일반회계 4135-311

4-1. 경찰관 상시학습 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현 황

경찰청은 실무역량과 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사업⁶⁾을 통해 경찰관 상시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예산현액 88억원 중 7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4,500만원은 이월, 2억 4,100만원은 불용하였다.

[실무역량과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실무역량과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8,517	8,517	283	8,800	7,314	1,245	241
경찰관 상시학습	1,909	1,909	283	2,192	2,188	0	4

자료: 경찰청

경찰관 상시학습은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집행액은 17억 1,300만원, 4억 7,500만원이다.

[경찰관 상시학습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관 상시학습	1,909	1,909	283	2,192	2,188	0	4
사이버교육	1,431	1,431	283	1,714	1,713	0	1
현장교육	478	478	0	478	475	0	3

자료: 경찰청

6) 예산코드: 일반회계 4135-311

나. 분석의견

첫째, 법이론분야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비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경찰관 상시학습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직무·법이론·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6년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1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찰직무분야의 제작건수와 집행액은 계속 감소한 반면,⁷⁾ 외부강사가 참여하는 법이론 분야의 강좌 수는 2014년에 비해 1건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약 9배 증가하였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현황]

(단위: 백만원)

콘텐츠 구분	도입 방식	2017.1 강좌수	2014		2015		2016	
			강좌수	집행액	강좌수	집행액	강좌수	집행액
직무	제작	491	148	955	102	722	84	467
법 이론	제작	26	6	48	3	102	7	497
교양	임차	314	332	104	174	99	173	107
계		831	486	1,107	279	923	264	1,071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 등 경찰실무분야 법이론 교육을 위해 법이론분야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외부강사의 법이론 분야 콘텐츠는 경찰청의 수사연수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부 법무연수원⁸⁾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경찰직무분야의 경우 강좌수는 2014년 148건 대비 2016년 84건으로 64건(43.2%)이 줄었고, 집행액은 2014년 9억 5,500만원 대비 2016년 4억 6,700만원으로 4억 8,800만원(51.1%)이 감액 집행되었다. 법이론분야의 경우 강좌수는 2014년 6건 대비 2016년 7건으로 1건(16.7%) 늘었고, 집행액은 2014년 4,800만원 대비 2016년 4억 9,700만원으로 4억 4,900만원(935.4%) 증가하였다.

8) 법무부의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은 법무부 및 검찰청 공무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과 국가송무수행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예산코드: 일반회계 5131-301)

[2016년 제작 법이론 콘텐츠]

콘텐츠명	교육내용
경찰실무 형법	형법 개관/총론(죄형법정주의 등)/각론(살인의 죄 등)
경찰실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개관/임의수사의 이해/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경찰실무 민사소송법	사이버불법행위의 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구상가능여부를 판단하라/당사자와 법원을 속여 편취한 판결,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경찰실무 행정학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정책집행/자치경찰제도 등
경찰실무 헌법	수사대상자의 권리/적법절차의 원칙/헌법에 규정된 형사원칙 등
경찰실무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철거대집행과 경찰개입/직접강제와 즉시강제 등
경찰실무 민법	동업, 말도 많고 탈도 많은...(조합계약)/내가 산 시계가 장물이었다니!(법률에 의한 물건변동)/이름 좀 빌립시다!(명의신탁)

자료: 경찰청

둘째, 현장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경찰교육축제로 일괄 추진하였다.

2016년도 현장교육 사업의 당초 계획은 현장교육 6,017회 실시, 동료강사 150명과 학습리더 50명 양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동료강사 경진대회(2015.10.15.)에 2,200만원, 시니어강사 양성교육(2015.11.30.-12.2)에 2,000만원을 각각 집행하는 등 사업을 개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경찰교육축제를 통해 시니어강사 선발 및 양성교육, 주니어강사 보수교육, 학습모임리닝코치 양성교육, 동료강사 경진대회, 학습모임성과발표회,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발표회 등을 일괄 추진하였다. 동 경찰교육축제는 제71주년 경찰의 날 및 아산경찰교육타운 첫 해를 기념하여 각종 교육 관련 행사를 5일간(2016.10.25~28) 경찰교육원에서 개최하면서 동 사업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5,700만원을 집행하였다.⁹⁾

9) 경찰청은 「2016 경찰 교육 페스타(Festa) 개최 계획」(2016.10.13. 수립)에서 ‘창경 71주년 경찰의 날 및 아산 경찰교육타운 첫해를 맞아 각종 교육 관련 행사를 한 주간에 개최, 경찰 교육 발전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비는 2016년도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의 내역으로 2억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경찰청은 경찰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경무인사기획관 기본

[경찰관 상시학습 현장교육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			집행실적	
상세내역	산출기준	예산액	상세내역	집행액
현장교육 운영경비	6만원×6,017회	361	지방청(경찰서) 현장순회교육 운영 경비 배정액 310 상반기 현장순회교육 워크숍 29 하반기 현장강사 직무연수 26	365
동료강사 및 학습리더 양성	동료강사 20만원×150명 + 학습리더 30만원×50명	45	현장학습모임 간담회 2 현장학습모임 리더 워크숍 21 우수현장학습모임 선지원 4 학습모임 보수교육 8 학습모임 운영비 중간지원 6 현장학습모임 현장방문 1	42
경찰관 상시 학습 경진대회	본청 및 지방청 54	54	경찰 교육축제 (동료강사 강의경진대회 등)	57
동료강사 등 워크숍경비	900만원×2회	18	현장강사 보수교육 워크숍 5 현장강사 보수교육 2 하반기 상시학습 담당자 워크숍 4	11
계		478		475

자료: 경찰청

이와 같이 현장강사 양성교육을 동료강사 경진대회·학습모임성과발표회 등과 일괄하여 교육축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의 목표달성여부 등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비사업의 예산은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 예산에 경찰의 날 부상품비로 편성된 3,9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2016년 경찰교육축제 개최 내역]

구분	실적
행사명 및 기간	경찰교육페스타, 2016.10.25.-10.28(3박4일)
참석대상 및 인원	- 대상: 현장강사 1,068명, 학습모임(271개 12,221명 활동) 리더(지방청당 1인) - 총 참석인원: 215명
행사내용	시니어강사 선발 및 양성, 주니어강사 보수교육, 현장학습모임 러닝코치 양성교육, 동료강사 경진대회, 학습모임 성과발표회
포상실시	대상 1건 200만원, 최우수상 2건 150만원, 우수상 3건 100만원, 장려상 4건 50만원 등 총 800만원
집행액	총 5,700만원(강사료 2,500만원, 우수현장학습모임 운영지원비 1,000만원, 기타 기념품, 포상금 등 2,200만원)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2. 각 부서 실시 교육사업의 집행방식 부적정

가. 현 황

과학수사관리관, 교통국, 경무인사기획국, 사이버안전국, 외사국은 각각 범죄감식 및 관리 사업¹⁰⁾, 교통안전활동 사업¹¹⁾, 퇴직경찰관취업지원 사업¹²⁾, 사이버범죄수사(정보화) 사업¹³⁾, 외사경찰활동 사업¹⁴⁾을 통해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였다. 2016년도에는 19개 과정 2,1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다.

[각 세부사업별 교육훈련 현황]

세부사업 (집행부서)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인원 (명)	집행 (백만원)
범죄감식 및 관리 (과학수사관리관)	포렌식 기본과정	과학수사요원	120	0 ¹⁾
	화재감식전문	화재전문가	60	0 ²⁾
	폴리그래프	폴리그래프요원	50	3
	체취견	핸들러 요원	39	13
	수중과학수사	수중과수요원	8	21
	특성화전문	법취면, 범죄분석전문 수사관	120	11
	검시조사관 보수	검시조사관	60	10
교통안전활동 (교통국)	교통조사관 전문화과정	교통조사관	300	164
	교통범죄 수사과정	교통범죄수사탐근무자, 교통조사분야근무자 중 뺑소니조사관양성과정을 거친 자	200	
	교통운영 실무 과정	시설및교통정보센터 근무자,	50	7
	ITS 전문화과정	3년 이내 동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자	60	47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경무인사기획국)	미래컨설팅	50~57세 경찰관	240	310 ³⁾
	퇴직설계	3년 이내 퇴직 예정 경찰관	550	
	귀농귀촌		151	54

10)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2-311

11) 예산코드: 일반회계 1331-312

12) 예산코드: 일반회계 7135-312

13)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3-511

14) 예산코드: 일반회계 3132-311

세부사업 (집행부서)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인원 (명)	집행 (백만원)
사이버범죄 수사 (사이버안전국)	맞춤형 석사과정 ⁴⁾	경찰관 또는 공업연구관(사)	20	500
	사이버테러 수사	사이버테러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45	60
	디지털증거분석전문 교육	디지털증거분석 업무에 종사하는자	40	60
외사경찰활동 (외사국)	산업보안전문 경찰 관양성교육	산업기술유출수사요원	15	10
	산업기술유출수사요원 전문화교육	산업기술유출수사요원	38	26
합 계			2,166	1,296

주: 1), 2) 경찰청은 동 사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설명함.

3) 경찰청은 동 사업 집행액 중 1억 6,200만원은 위탁사업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4) 위탁사업비로 집행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일반수용비를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찰청은 각 세부사업별 교육훈련경비를 대부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였고, 각 부서에서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교육경비를 지급하여 사실상 위탁교육훈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재무관(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관(지출)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여야 하나,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1항¹⁵⁾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납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서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위탁사업비는 지출 금액과 무관하게 관서운영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15)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운영비의 관서운영경비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 (210목)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 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단,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 시험 연구비 중 연구개발비는 제외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경찰청은 각 세부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경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차량관리 사업¹⁾은 경찰차량 유류공급·정기검사 및 수리 등을 통해 차량이 최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 예산현액 1,028억 9,300만원 중 95.4%인 98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7억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차량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차량관리	103,859	103,859	0	±966	102,893	98,186	0	4,707
공공요금 및 제세	19,442	10,442	0	90	10,532	10,520	0	12
차량선박비	93,417	93,417	0	△966 △90	92,361	87,667	0	4,695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차량관리 사업을 통해 공공요금 및 제세를 지원하고, 유류공급 및 차량정비를 실시하였다. 2016년 1월 1일 현재 경찰청 차량은 총 16,133대로 본청 137대, 지방청 및 교육기관 15,996대이다. 차량관리 사업은 2015년부터 「국가재정법」 제43조²⁾에 따른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4231-312

- 2)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6년 경찰청 차량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단위: 대, 백만원)

구분	차량정수	보유현황		차량관리 예산집행액		
		2016.1	2016.12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선박비	계
본청	142	137	140	213	64,579	64,792
지방경찰청	16,337	15,996	16,337	10,307	23,087	33,394
계	16,479	16,133	16,477	10,520	87,666	98,186

자료: 경찰청

5-1. 본청 석유저장소용 석유류 구입비 지출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경찰청은 본청 청사 내 석유류(휘발유·경유·등유) 총 26,000리터³⁾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30조⁴⁾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6년도 차량관리 사업의 차량선박비로 저장용 및 차량사용용 유류비 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본청 차량선박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리터)

석유류 구분	저장용		차량사용용		계		월평균 사용량 (A/12)
	구입금액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량(A)	
휘발유	210	150,145	4	2,681	214	152,827	12,735
경 유	98	81,758	7	6,170	105	87,928	7,327
계	308	231,903	11	8,851	319	240,755	20,062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휘발유 13,000리터, 경유 10,000리터, 등유 3,000리터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본청 석유저장소용 석유류 구입량과 예산집행 규모를 감안할 때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차량 유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차량용 유류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고, 저장소용 석유류 구입경비도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다.⁵⁾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재무관(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관(지출)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여야 하나,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1항⁶⁾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납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서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경우 지급범위에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소용 유류구입은 구입목적·구입용량 및 집행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용 유류와 달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운영비의 관서운영경비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 (210목)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개발비는 제외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경찰청은 정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유류구매카드를 구입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조달할인율(△5.74%) 외에 리터당 8원을 추가할인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6)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5-2. 경찰차량 수리비 중 정기검사비 및 검사대행비 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경찰청은 2016년도 차량관리 사업의 차량선박비 중 157억 3,400만원을 수리비로 집행하였다. 여기에는 경찰차량 14,430대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 정비 및 고장수리, 콜센터 운영 등을 위탁관리서비스 비용과 정기검사비 및 검사대행비가 포함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경찰차량 정기검사비 및 검사대행비를 수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내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7)에 따라 자동차를 정상기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8)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대행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자동차검사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비는 차종·차령에 따라 정하여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검사대행비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차량관리 사업 예산을 제세,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소독비까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편성하여 용도를 정한 것은 경찰차량이 정수 기준으로 14,460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차량의 정기검사비와 정기검사대행비도 수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기보다는 별도 내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⁹⁾

7)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8) 「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 2016년도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집행한 정기검사비와 정기검사대행비의 각각의 집행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차량관리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코드	내역			집행액
		세부내역	수량	예산액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제 세	9,320대	1,118	1,106
		보험료	14,277대	9,324	9,324
차량선박비	210-10	유류비	52,456,397리터	77,234	71,483
		수리비	16,333대	15,734	15,734
		소독비	3,934대	450	450

자료: 경찰청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2016년도 경찰청 소관 과태료¹⁾ 세입예산현액은 6,200억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의 141.9%인 1조 4,997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7.0%인 5,547억 1,000만원을 수납하고 9,093억 2,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57억 1,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6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과태료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목명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태료	620,000	620,000	620,000	1,499,747	554,710	909,326	35,711	37.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과태료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원인을 점검하여 수납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의 과태료 수납률은 전년도 36.3%에 대비 37.0%로 0.7%p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297억 200만원(5.1%)이 감소(5,884억 1,200만원 → 5,547억 1,000만원)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무인단속기·이전 설치 및 제한속도 조정 기간 중 충분한 홍보를 위해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여 단속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찰청 소관 과태료 세입현황을 보면, 2014년에 1,337억 4,700만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도로교통법」 및 「경비업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임.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380억 4,200만원과 357억 1,1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에도 2016년말 기준 누적 미수납액이 9,093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다.²⁾ 따라서 경찰청은 과태료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소관 과태료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2	751,215	1,641,230	396,098	1,245,032	99	24.1
2013	844,425	1,743,018	503,557	1,239,461	99	28.9
2014	646,459	1,789,096	545,232	1,110,118	133,747	30.5
2015	665,853	1,609,734	584,412	987,280	38,042	36.3
2016	620,000	1,499,747	554,710	909,326	35,711	37.0

자료: 경찰청

2)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경찰청에 대해 2015년도 과태료 누적미수납액이 1조 672억 700만원에 달하고, 시효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도 385억 8,6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제도개선할 것을 시정 요구한 바 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6).

가. 현 황

경찰청은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사업¹⁾을 통해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실종아동 등 유전자분석, 지문 및 얼굴사진 사전등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 유전자분석과 지문 등 사전등록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 37억 300만원 중 99.8%인 36억 9,400만원 집행하였으며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실종아동등 유전자분석,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성청소년보호활동	13,684	13,684	13,684	13,665	19
실종아동등유전자분석	766	766	766	766	0
지문 등 사전등록	2,937	2,937	2,937	2,928	9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유괴·실종경보를 방송, 인터넷, 신문사 등 매체중심으로 발령하고 있으나,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9조의2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³⁾에 따라 실종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함)의 신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2-311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실종경보·유괴경보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

속한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공개수색·수사를 위한 유괴·실종정보발령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이 발생할 경우 언론매체, 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방송, 공공기관, 인터넷, 신문사, 금융기관 등 총 6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본청) 유괴·실종정보발령시스템 참여기관 현황]

방송(14)	공공기관(13)	인터넷(7)	신문사(22)	금융 등(7)
KBS·MBN·KTV·지상파 DMB 6개사·케이블방송협회·기독교방송·불교방송·평화방송·사회안전방송	서울시·국립공원공단·중소기업청·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LH공사·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네이버·페이스북·네오위즈·다음·네이트온·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경향·국민·내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연합·조선·중앙·한국·한경·헤럴드·뉴시스·한겨레·민중의 소리·파이낸셜뉴스·한국국정일보·노컷뉴스·메트로·프레시안	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휠라코리아·보훈병원

자료: 2016 경찰백서, 경찰청, p.84

경찰청은 이외에 지방경찰청에서도 29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지방경찰청 유괴·실종정보발령시스템 협업기관 현황]

(단위: 개)

방송	공공기관	금융기관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기타	총계
44	146	2	6	0	0	95	293

자료: 경찰청

아동등의 공개 수색·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괴·실종정보발령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실종경보 협약기관에 보건복지부·해양경찰본부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유괴·실종 경보발령 협약기관에 보건복지부·해양경비안전본부 등과도 상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정부조직법」 개정(2017.7.26.시행)으로 행정안전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됨.

가. 현 황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¹⁾은 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경찰관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예산에 20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204억 700만원이 집행되었다.

동 사업의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지도 및 정보수집비 9억 2,500만원, 사이버분석관활동비 6,800만원, 사건수사비(부서활동비) 85억 7,700만원, 제20대 총선 사건수사비 8억 8,000만원 등 총 10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중앙관서별로 특정업무경비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다.²⁾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 연도별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사지도 및 정보수집비	802	925	1,001
사이버분석관활동비	-	68	68
사건수사비 (부서활동비)	9,096	8,577	8,577
선거사건수사비	-	(제20대 총선) 880	(제19대 대선) 880
계	9,998	10,450	10,526

주: 수사지도 및 정보수집비는 2016년도부터 수사활동비로 편성됨

자료: 경찰청 소관 연도별 세입세출각목명세서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1-311

2)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pp.172~175.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소속 관서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의 특정업무경비 중 사건수사비는 부서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수사지도및정보수집비, 사이버분석관활동비 등은 부서활동비로 명시하지 않고 편성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지도및정보수집비, 사이버분석관활동비를 개인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사건수사비는 부서활동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2016년도 수사지도및정보수집비, 사이버분석관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에 사이버안전국, 2016년에 과학수사관리관이 각각 수사국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음에도 각 국·관별 사업으로 분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국 관서경비출납공무원이 다른 국·관 소속직원 개인에게 정액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이버안전국과 과학수사관리관 관서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 후 이들이 소속 직원 개인에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각 국·관 소속직원에 대한 수사지도및정보수집비·사이버분석관활동비는 해당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하도록 개선하여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¹⁾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²⁾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음주단속장비 등을 보강·운영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945억 1,600만원 중 95.7%인 90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11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통과학장비리	93,746	93,746	770	±7	94,516	90,487	2,840	1,188
교통과학장비 보강	9,858	9,858	0	0	10,628	7,615	2,840	172
교통과학장비 운영	83,888	83,888	0	△7	83,881	82,865	0	1,016
포상금 등	0	0	0	7	7	7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임차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 구입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6,268대(2016년 기준) 중 33.8%인 2,120대는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물품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비이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331-313

2)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계	과속	구간	다기능	이동식
2016년	구입사용	467	217	42	155	53
	임차사용	515	108	68	338	1
	계	982	325	110	493	54
총계	구입사용	4,148	2,079	120	1,643	306
	임차사용	2,120	444	126	1,549	1
	계	6,268	2,523	246	3,192	307

자료: 경찰청

지방경찰청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보험료, 인
수 및 정기검사비, 위탁사업비 등의 경비가 지출되어야 한다. 경찰청은 2016년 기준 무인
교통단속장비 대당 연평균 운영비는 약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

따라서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연도별 보급계획 및 구입·임차 수량을 명확히
하고 지방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장비 임차사용계약관련 사항(장비기준, 사용료 등)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2016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예산 838억 8,8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보험료는 5,733대, 통신
료는 5,728대, 정기검사비는 5,361대, 위탁사업비는 4,386대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가. 현 황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¹⁾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및 면허증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출연금을 수지차(收支差) 보전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출연금 사업의 2016년도 예산 1,009억 4,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도로교통공단출연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도로교통공단출연금	100,949	100,949	0

자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23조제3호2)는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방송법」 제9조제1항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교통방송(TBN, Traffic Broadcasting Network)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공단의 교통방송운영 사업의 수입액은 44억 400만원이고, 교통방송프로그램 제작경비는 수입액의 약 6.6배인 288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244억 5,700만원이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331-314
- 2)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 3)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6년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운영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방송협찬 및 광고 수입액(A)	교통방송프로그램제작경비 지출액(B)	결산(A-B)
4,404	28,861	△24,457

자료: 도로교통공단

나. 분석의견

수지차보전기관인 공단이 사업손실이 큰 교통방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출연금 지원 및 사업계획 승인시 동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비절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통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송신소와 중계소를 확대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 구입 경비와 임차료가 소요된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편성, 제작기술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한국교통방송은 본부에 서울방송센터를 두고, 1997년 광주본부를 개국한 이래 2002년까지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인천, 전주본부 등 총 6개 방송본부를 추가 개국하였고, 2012년 이후 울산, 창원, 경북, 제주본부를 추가 개국하여 총 11개의 방송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본부 운영현황]

(단위: 명, kw, 개소)

구분	본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	울산	창원	경북	제주
인력(현원)	27	37	37	34	36	38	34	36	36	36	34	31
방송출력	-	3	3	3	3	1	1	1	1	1	1	1
중계소	-	0	1	0	3	1	4	0	0	1	1	1

자료: 도로교통공단

또한, 서울방송센터와 지방본부간 프로그램 제작 비율은 30%(1일 7시간):70%(1일 1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본부 프로그램 중 교통정보(띠정보)는 5%로 1일 총 254분(4.2시간) 정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정보 편성 현황]

시간대	교통정보 띠 편성 현황(할당정보제공시간 ^{주)})					총 교통정보
06-07	15분(2분)	30분(2분)	45분(2분)	57분(2분)		8분×2시간=16분
07-21	5분(1분)	15분(3분)	30분(3분)	45분(3분)	55분(4분)	14분×15시간=210분
21-22	15분(2분)	30분(3분)	45분(2분)	58분(1분)		8분
22-02	15분(1분)	30분(1분)	45분(1분)	58분(1분)		4분×5시간=20분

주: 제작프로그램 방송 중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할당시간

자료: 도로교통공단

이와 같이 각 지방방송본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지방방송본부의 유사프로그램은 공동제작보급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프로그램제작경비를 절감하고 공동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여 청취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⁴⁾

[교통방송 프로그램 현황]

시간대	프로그램	서울 방송센터	지방 방송국	주요 제공 내용
06-07	굿모닝 00		○	생활정보
07-09	출발! 00대행진		○	출근길 실시간 교통상황 및 날씨, 교통뉴스, 생활정보
09-11	<u>스튜디오 00</u>		○	실시간 교통, 기상, 관광 및 지역의 문화 등 생활정보
11-12	TBN 교통시대	○		실시간 교통상황과 자동차 정비, 보험, 법률, 정책 등 운전관련 정보
12-14	TBN 차차차		○	실시간 교통상황 및 교통안전 콘텐츠(꽂트)와 음악
14-16	신나는 운전석	○		실시간 교통상황 및 가수 등 게스트 출연과 음악성
16-18	<u>지역 프로그램</u>		○	실시간 교통상황 및 지역 정보

4)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도로교통공단의 한국교통방송(TBN) 청취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력하여 교통방송 홍보용 스티커를 출고되는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에 지역별 교통방송 주파수를 사전 등록하는 등 교통방송 청취율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 p.1038.)

시간대	프로그램	서울 방송센터	지방 방송국	주요 제공 내용
18-20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	퇴근길 실시간 교통상황 및 날씨, 교통뉴스, 생활정보
20-22	운전가요 앨범	○		실시간 교통상황 및 음악
22-00	낭만이 있는 곳에		○	실시간 교통상황 및 안전코너, 음악
00-02	한밤의 교차로	○		심야시간 운전자를 위한 교통, 기상정보, 안전코너 및 음악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회계연도 공단의 방송부문 사업 손실은 전년 대비 54억 6,900만원(28.8%) 증가한 244억 5,700만원이다.⁵⁾ 공단은 수지차를 보전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방송본부운영사업 결손 금액의 증가는 국고 출연금액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찰청과 공단은 방송본부 확대를 지양하고 방송본부별 방송제작비율 축소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보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국회는 도로교통공단의 2015년도 주요사업별 수입·지출 결산내역 중 방송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사업 손실(189억 8,8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6.9.1., p.1038).

가. 현 황

의경운영및관리 사업¹⁾은 의경의 피복·장비·급식 등을 보급하여 현장 경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038억 7,000만원 중 97.9%인 1,024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6,200만원을 이월하고 4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경운영및관리	109,514	109,514	224	△5,868	103,870	102,444	962	464
급량비	65,621	65,621	0	△6,925	58,696	58,515	0	180

자료: 경찰청

이 중 급량비는 의경급식비, 소단위부대특식비, 육군훈련소 위탁교육 급식비, 의경부대 지휘요원 급식비 등으로 총 65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²⁾ 이 중 10.6%인 69억 2,500만원을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 감액하였다.

나. 분석의견

의무경찰 급량비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2016년 집회시위 등 각종 경비상황으로 인해 경찰부대 출동이 많아지면서 외부 매식비용인 동원급식비가 부족하게 되어 부대 내 급식비인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의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1-312

2) 2016년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의 급량비 예산은 의경급식비 573억 4,800만원, 소단위부대특식비 20억 6,300만원, 육군훈련소 위탁교육 급식비 34억 8,200만원, 의경부대 지휘요원 급식비 24억 4,600만원, 울릉도 근무자 특식비 8,800만원, 독도경비대 근무자 특식비 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급량비(1일 7,334원)를 경비경찰활동 사업의 특근매식비(동원급식비, 1식 6,000원)로 내역 변경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³⁾

[의경운영및관리 사업 급량비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집행 구분	집행 일자	-를			-로		
		사업명	비목	금액	사업명	비목	금액
내역 변경	8.12	의경운영및관리	급량비	-2,240	경비경찰활동	특근매식비	4,283
	11.1	의경운영및관리	급량비	-2,616	경비경찰활동	특근매식비	2,616
	11.30	의경운영및관리	일반수용비	-44	경비경찰활동	특근매식비	1,646
			피복비	-709			
			급량비	-504			
	12.20	의경운영및관리	일반수용비	-17	경비경찰활동	특근매식비	239
			공공요금 및체세	-23			
			피복비	-72			
이용	12.20	차량관리	차량선택비	-966	의경운영및관리	급량비	360

- 주: 1. 경비경찰활동사업 특근매식비로의 내역변경에는 의경운영및관리사업 외에 의경생활문화개선사업 및 의경대체지원사업으로 부터 내역변경한 금액도 포함한 것임.
2. 차량관리사업 차량선택비는 의경운영및관리사업 급량비 외에 의경대체지원사업 급량비로도 이용되었음.

자료: 경찰청

그러나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의 급량비를 경비경찰활동 사업의 특근매식비로 집행한 후 차량관리 사업의 차량선택비를 다시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의 급량비로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경운영의 필수재원인 급량비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⁴⁾

3) 의경 급량비(210-04목)는 부대 내 자체 취사시설에서 조리·취식하는 비용으로 매년 군장병과 동일한 단가로 편성·운용하고 있으며, 동원 특근매식비(210-05목)는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외부로 출동 매식하는 비용이다.

4) 경찰청은 차량관리 사업의 차량선택비를 급량비로 이용한 것은 급식이 아닌 빵·우유 등 간식(1인 1,000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¹⁾은 신원조사기록 등 치안정보활동에 필요한 정보전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6년도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의 예산현액 15억 400만원 중 99.3%인 1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비’ 4억 4,300만원 중 4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1,504	1,504	1,504	1,494	0	10
기존시스템 기능 개선	443	443	443	436	0	7

자료: 경찰청

또한,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정보화) 사업²⁾은 경찰관서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사무용PC등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6년도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정보화) 사업의 예산현액 564억 5,800만원 중 95.4%인 53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노후 주전산기 교체 사업비’ 30억 8,200만원 중 30.3%인 9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1,700만원을 이월,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정보화)	56,458	56,458	56,458	53,842	2,117	499
노후 주전산기 교체	3,082	3,082	3,082	933	2,117	32

자료: 경찰청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3-511

2) 예산코드: 일반회계 4234-511

나. 분석의견

경찰청이 당초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노후 주전산기 교체’ 등 단순한 기능 개선 또는 기기 교체 사업명으로 시스템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 중 기존 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집회통계·채증판독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견문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 내역]

사업명	당초 계획	추진 실적
정보업무 전산화 (정보화)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 사업내용: 집회시위·채증판독 시스템 및 견문관리시스템 고도화 - 서버장비: 동영상, 보안솔루션, 스트리밍, 시큐어코딩 등 - 프로그램 개발: BI솔루션, 동영상관리 등 - 총 투입인력: 52명 - 집행액: 3억 4,900만원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사업 중 노후 주전산기 교체 사업비로 주전산기 교체와 함께 경찰청 통합포털(POLNET)과의 통합운영을 위한 통합포털용 DB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 사업을 같이 진행하였다.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사업 추진 내역]

사업명	당초 계획	추진 실적
경찰정보화 기반고도화 (정보화)	노후 주전산기 교체 사업	- 사업내용: 주전산기교체, 경찰청 통합포털 DB통합 등 고도화 - 총 투입인력: 312.5명 - 총 사업예산: 79억 3,000만원 - 2016년 집행액: 2억 300만원 집행, 21억 1,700만원 이월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향후 경찰청은 정보화사업 중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 등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장비의 신규 구입 또는 증설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순 성능개선이나 기기 교체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대테러상황관리 사업¹⁾은 고도의 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한 경찰특공대 육성으로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테러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6년도 대테러상황 관리 사업 예산현액 76억 6,000만원 중 7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대테러상황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테러상황관리	7,490	7,490	170	0	7,660	7,412	27	222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6년도에 동 사업을 통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에게 대테러방탄방검복을 보급하였다.²⁾

나. 분석의견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보고서는 입찰자격을 결정하는 요건인 만큼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영문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3134-311

2)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생명·안전확보를 위한 신체보호장치(방탄·방검복등) 개발·구매 계획’을 수립(2016.4.5.)하고 보급계획(2016.12.27.수립)에 따라 일반경찰관 방탄방검복은 순찰차량(4,051대) 2벌, 지구대(515개소) 4벌, 파출소(1,467개소) 2벌,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차량(375대) 2벌, 지방경찰청 형사 1명당 1벌, 경찰서 급지별 형사용 5-15벌을 보급하여 총 6,117벌을, 대테러방탄방검복은 112타격대(255개 부대)에 1,823벌을 보급하였다.

경찰청은 일반경찰관방탄방검복 구매계약과 대테러방탄방검복 구매계약을 수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업체로 동일한 1개의 업체를 선정하였고, 동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³⁾을 각각 체결(2016.9.21.)하였다.⁴⁾

[방탄방검복구입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방탄방검복 구분	세부사업 (비목)	2016					2017년 예산
		예산	당초계약		납품 및 집행액		
			수량	계약액	수량	집행액	
일반경찰관	생활안전활동 (자산취득비)	2,900	5,750	2,299	6,117	2,299	4,640
대테러	대테러상황관리 (피복비)	1,669	1,757	1,608	1,823	1,669	1,669
합 계		4,569	7,507	3,907	7,940	3,968	6,309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대테러방탄방검복에 대해 미국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⁵⁾, 이하 “NIJ”라 함)에서 설정한 NIJ 0101.06기준(NIJ Level III:방탄재), NIJ 0115.00기준(NIJ Level 2:방검재), NIJ 0101.06기준(NIJ Level III+ α :방탄판)을 갖춘 방탄방검복을 구입하기로 하였다.⁶⁾ NIJ기준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방탄·방검성능(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과 시험방법(Test Methods)을 정하고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일반경찰관방탄방검복 구매계약과 대테러방탄방검복 구매 계약은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에서 주관하였다.

5) NIJ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OJP(Office of Justice Program) 소속기관으로 방탄방검 등의 기술표준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6) 경찰청, 「대테러방탄방검복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p.4.

[방탄 및 방검 NIJ기준의 제시사항]

방탄 NIJ Standard 0101.06	방검 NIJ Standard 0115.00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u>establish 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u> for the ballistic resistance of personal body armor intended to protect against gunfire. ¹⁾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u>establish 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u> for the stab resistance of personal body armor intended to protect the torso against slash and stab threats. ²⁾

주: 1) Ballistic Resistance of Body Armor NIJ Standard-0101.06, 2008.6, p.1.

2) Stab Resistance of Personal Body Armor NIJ Standard-0115.00, 2000.9, p.1.

자료: https://www.nij.gov/topics/technology/standards_testing/pages/active.aspx

이와 함께, 경찰청은 대테러방탄방검복 구입시 NIJ기준 외에 무게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도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⁷⁾

2016년도 대테러방탄방검복 구매사업 입찰업체는 입찰시까지 경찰청의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공인시험기관(NIJ)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⁸⁾ 경찰청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공인시험기관(NIJ)의 시험성적서’는 입찰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경찰청의 대테러방탄방검복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결과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먼저 제안요청내용에서는 ‘성적서’ 제출방법을 제시하면서 경찰청 해당 사업 담당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및 이메일로 ‘결과보고서’를 수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밀도를 ‘시험성적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다.⁹⁾

7) 경찰청, 「대테러방탄방검복 제안요청서(제안서평가기준)」, p.4.

8) 경찰청, 「대테러방탄방검복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p.15.

1. 제안서 평가방법

1.2 기술능력평가방법

1.2.5 제안요청서 상 방탄과 방검에 대한 경찰청의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공인시험기관(NIJ)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경찰청 요구성능 미충족시에는 제안할 수 없다.

9) 경찰청은 일반경찰관 및 대테러 방탄방검복 성능요구기준으로 방탄·방검성능을 방호성능으로 요구한 것 외에 단위면적당 중량을 측정하는 면밀도(Areal Density) 8kg/m² 이하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면밀도는 단위면적당 밀도로서 제품의 방탄방검복의 중량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NIJ기준이 없다. 이에

[방탄방검복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내용]

1.1 경찰청 요구 시제품 및 성적서 제출방법

1. 1.1 아래 국제공인시험기관 중 1개 기관에 시험의뢰 및 결과확인

- HP White Laboratory Inc.(미국), Beschussamt Mellrichstadt(독일), TNO(네덜란드)

1. 1.2 시험의뢰용 시제품 외 경찰청 보관용 시제품 추가제작, 경찰청에서 1개 시제품 무작위 추출 후 보관, 그 외 시제품 공인시험기관에 송부

※ 경찰청 해당 사업 담당자가 직접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및 이메일로 결과보고서 수신(관련 비용은 업체 부담)

※ 경찰청에서 무작위로 면밀도 확인용 지정

1.2 경찰청 요구 방탄방검복 및 방탄판 성능

1.2.1 제안서 기술평가용

(중략)

※ 시험성적서 내 면밀도 표기 필수

자료: 대테러 방탄방검복 구매사업 제안요청서(경찰청), p.4.

다음, 제안서 평가방법에서는 방탄·방검에 대한 경찰청의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국
제공인시험기관(NIJ)의 ‘시험성적서’를 입찰시한까지 미제출시에는 입찰제안을 할 수 없도
록 하였으며, ‘공인시험결과’는 H.P White Lab, 체사피크, TNO 등 미국 NIJ 공인시험기
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방탄방검복 제안요청서의 제안서평가방법]

1.2.5 제안요청서 상 방탄과 방검에 대한 경찰청의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공인시험기관(NIJ)
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경찰청 요구
성능 미충족시에는 제안할 수 없다.

1.2.6 공인시험결과는 美-NIJ 공인시험기관(H.P White Lab, 체사피크, TNO 등)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자료: 대테러 방탄방검복 구매사업 제안요청서(경찰청), p.15

경찰청은 면밀도 기준을 8kg/m^2 이하로 제시하였고, 경찰청이 제시한 기준을 NIJ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
여 시험한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표기하도록 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2016년 일반경찰관 방탄방검복 및
대테러방탄방검복 납품 업체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미국 H.P. White Laboratory에 시험의뢰하였으며, H.P.
White Laboratory는 ‘ASTM-D-3776(Standards Test Methods for Mass per United Area of Fabric, Option C) with
exceptions’에 따라 해당업체의 방탄재 충전 원단(unstritched ballistic filler meterial)을 시험하였다

우선협상대상업체는 방탄·방검재에 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치가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¹⁰⁾

[우선협상대상업체의 시험성적관련 서류 제출 내역]

구분	제안서 기술평가용		기술협상과정		최종 성능 평가용	
	작성일자	서류 제목	작성일자	서류 제목	작성일자	서류 제목
방탄 방검재	2016.7.29	없음 (시험결과치)	2016.8.25	Test Report	2016.12.16	Test Report
방탄판	2016.7.14	Test Report	경찰청에서는 기술협상 시 변경사항이 없었으며, 시험을 미실시한 것으로 설명함		2016.12.14	Test Report

자료: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입찰자격 요건인 동시에 방탄방검복의 성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여러 용어가 혼재되고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찰청은 국제기준을 인용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시험결과치’를 시험성적서로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경찰유무선망개선 사업¹⁾은 전국 경찰관서의 교환기·전화기 등의 유선망과 무선망을 구축하여 현장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6년도 경찰유무선망개선 사업의 예산현액 582억 5,200만원 중 95.9%인 558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600만원은 이월, 12억 700만원은 불용하였다. 이 가운데 모바일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6억 3,000만원 중 9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800만원은 불용하였다.

[경찰유무선망 개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유무선망개선	58,252	58,252	0	58,252	55,839	1,206	1,207
모바일장비운영	14,122	14,122	0	14,122	13,370	406	346
자산취득비	1,630	1,630	0	1,630	946	406	278

자료: 경찰청

자산취득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는 휴대용단말기 10억 1,300만원, 업무용휴대폰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휴대용단말기 구입에 6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4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업무용휴대폰 구입은 4억 6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예산코드: 일반회계 4233-311

[모바일장비교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²⁾	예산액 ¹⁾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휴대용단말기	1,013	614	0	264
업무용휴대폰	271	0	406	0
휴대용프린터	346	332	0	14
계	1,630	946	406	278

주: 1) 각 장비 및 장비별 예산액은 경찰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각목명세서 기준

2) 경찰청은 휴대용단말기는 경찰관이 외근 현장에서 각종 조회 및 단속,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핸드폰이고, 업무용휴대폰은 업무연락 및 전화통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함.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업무용휴대폰을 당초계획을 초과하여 구입하였고 계약액 전액을 이월하였는바, 향후 업무용휴대폰 구입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당초 업무용 휴대폰을 1대당 19만원씩, 1,430대 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대당 6만원씩, 6,710대를 구입하였다. 이는 당초 예산액 2억 7,100만원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4억 600만원을 집행한 것이다.

[업무용휴대폰 구입 예산 집행실적]

구분	수량(단위: 대, %)				단가(단위: 만원, %)				총 집행액(단위: 백만원)			
	계획	실적	계획대비		계획	실적	계획대비		계획	실적	계획대비	
			수량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또는 금액	1,430	6,710	5,280	369.2	19	6	△13	△68.4	271	406	135	49.8

자료: 경찰청

한편, 경찰청은 동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제안하도록 하면서 업체의 추가제안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입찰업체의 제안서는 기술평가점수 90%와 가격 10%로 평가되었으며, 기술능력평가 총점 100점 중 추가제안 항목(업무개선과 추가제안)에 20점을 배점하였다.

[경찰청의 업무용휴대폰 제안서 평가 배점 현황]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기술내용	세부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 /정량평가		제안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5
	사업 수행 계획	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0
	단말 기	제안규격	모바일단말기 사양 적정 및 최신성	20
		구성품	모바일단말기 구성품의 규격적합성	10
	요 금 제	요금제	제안된 업무용휴대폰 기본요금제 ※ 음성·문자·데이터요금조건 및 총액을 비교하여 국가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제안에 유리한 점수 부여	20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제공용량 및 과금조건 ※400KBPS이하 속도제한 제공량 제외	10
	추가 제안	업무개선	외근현장 활력을 높이거나 치안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안	10
		추가제안	부대품, 보험 등 제안사 제안내용	10
	유지 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5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제안서 평가 결과 KT 96.25점, SKT 93점으로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SKT가 KT의 추가제안 항목은 지원금 과다지급에 해당한다며 조달청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이의신청²⁾을 하였다. 이로 인해 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으며, 업무용휴대폰 구입비 4억 6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다.

향후 경찰청은 업무용휴대폰 수요 조사 등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조달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률검토를 요청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위반 여부 적용기준은 계약시점이고, 경찰청은 KT와 추가협상결과 지원금(삼성 기어S3 무상제공)에 대하여 계약시점에 모든 유통망에 동일하게 공시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KT가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체결시 공시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예정이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SKT에 송부하였다. 이후 KT는 경찰청과 계약하는 당일(2016.12.29)에 삼성 갤럭시 S6 엣지플러스(SM-G928K) 599,500원 구입가격을 유통망에 공시하면서 스페셜패키지 상품으로 단가 477,000원인 기어 S3프론티어 블루투스(SM-R760)를 포함하고 요금은 51,000원 정액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가. 현 황

2016년도 경무인사기획관¹⁾ 소관 사업은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사업, 경찰복지증진 사업,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사업,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276억 6,700만원이고 이 중 1,23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8,300만원을 이월, 265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경무인사기획관 소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실무역량과 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	8,517	8,517	283	0	8,800	7,314	1,245	241
경찰복지증진	22,769	22,769	0	0	22,769	20,145	2,624	26,191
퇴직경찰관취업 지원	1,838	1,838	0	0	1,838	1,801	0	27
경무인사기획관 (총액인건비)	85,064	85,064	0	85	86,149	86,073	0	77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7,946	7,946	0	165	8,111	8,068	14	29
계	126,134	126,134	283	250	127,667	123,401	3,883	26,565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이용·전용 등의 예산변경 절차가 아닌 예산비목 정정에 의한 국고금 집행은 지양하여야 한다.

2016년도 경무인사기획관 관서운영경비 출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국내여비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경무인사기획관은 경찰청의 경무·경리·청사·복무관리·경찰박물관 등 경찰청 운영을 위한 업무와, 인사기획 및 운영, 교육기획 및 운영·인재선발, 복지정책기획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특근매식비·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이후 총 120회 예산비목을 정정하여 지급과목정정 형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서운영경비 지급과목정정은 편성목적은 변경하는 이용·전용과 달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관서운영경비로 자금을 배정받기 전 지급기한이 도래된 시 급한 대금을 집행하거나 착오로 인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류정정 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한 이후 비목(과목)을 변경(정정)하는 것은 경찰청의 예산집행이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의 변경제도 비교]

구분	전용	이용	이체	조정
개념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 목에 편성된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에 편성된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	정부조직의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제도	-세목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 -동일 목을 세세항(세부사업)간에 상호 융통하는 제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46조	「국가재정법」 제47조	「국가재정법」 제47조	법률 규정 부재
사례	A프로그램 내 a세부사업의 예산을 동일 프로그램 내 b세부사업으로 융통	A프로그램 내 a세부사업의 예산을 B프로그램 내 b세부사업으로 융통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a세부사업 소관을 가 부처에서 나 부처로 변경	-일반수용비(210-01)를 위탁사업비(210-15)로 융통(세목간 조정) -동일한 단위사업내 a세부사업의 운영비를 b세부사업 운영비로 융통(내역변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5.

국민안전처
(現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소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5억 6,400만원(40.9%)이 증가한 226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4억 4,200만원(39.8%)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6,172	16,050	16,050	22,614	6,564	6,442

자료: 국민안전처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846억 6,200만원(5.6%)이 증가한 3조 4,62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92억 1,100만원(3.3%)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2,958,223	2,935,225	3,001,378	3,116,641	115,263	158,418
지역발전특별회계	394,775	276,169	276,169	345,568	69,399	△49,207
합계(총지출)	3,352,998	3,211,394	3,277,547	3,462,209	184,662	109,211

자료: 국민안전처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0억 5,000만원이며, 423억 4,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3.4%인 226억 1,400만 원을 수납하고 195억 4,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8,6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050	16,050	16,050	42,341	22,614	19,541	186	140.9

자료: 국민안전처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5,649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7.1%인 3조 4,622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542억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4억 6,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935,225	3,001,378	3,219,401	3,116,641	54,297	48,463	96.8
지역발전특별회계	276,169	276,169	345,568	345,568	0	0	100.0
합 계	3,211,394	3,277,547	3,564,969	3,462,209	54,297	48,463	97.1

자료: 국민안전처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 시행)으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중앙소방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소방청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개편·신설하였다.¹⁾²⁾

1) 동 보고서의 결산 현황은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보고서 당시의 조직 편제에 따라 舊 국민안전처의 소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 現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의 사업별 분석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의 2016년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재난대책비** 등이 있다. 재난대책비 사업은 매년 집행율이 저조하여 50억원이 감액(300억원 → 250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②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30억원이 증액(190억원 → 220억원)되었고,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소방 특수구조대 신설을 위하여 43억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¹⁾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② **소방안전교부세** ③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이 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여성안심구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확대 지원할 것」,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²⁾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이 있다. 노후가 심한 재해위험저수지 31개 지구 정비를 조기에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104억원이 증액(3,590억원 → 3,694억원) 되었다.³⁾

1)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2)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 9.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는 ① 안전사회 구현, ② 재난대응역량 강화, ③ 재난안전 핵심역량 강화 등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보전금(310목)은 민간 또는 공무원에게 이전되는 현금성 예산으로서 반대급부나 채권채무계약 없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금 집행 시 법령상 지급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보전금 집행의 지급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집행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은 법령상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5년 12월 발대한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의 신축청사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는 별도의 청사가 없이 기존 소방서 및 중앙소방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소방청은 건설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現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공통 소관】

1 보전금 지급근거 마련 및 집행관리 필요

보전금(310목)은 민간 또는 공무원에게 이전되는 현금성 예산으로서 유공자 포상금, 신고포상금, 예산성과금, 대회 시상금 등의 현금 소요를 위하여 편성된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예산현액 28억 5,700만원 중 26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6년 보전금(310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목	세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310 (보전금)	01(보상금)	1,845	862	2,707	2,498	209
	02(배상금)	10	0	10	0	10
	03(포상금)	140	0	140	137	3
계		1,995	862	2,857	2,635	222

주: 이·전용 8억 6,200만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사상민간잠수사 보상금으로 집행됨.

자료: 국민안전처

1-1. 보전금의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보전금(310목) 가운데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상금(310-01)이나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310-03)은 장려금이나 상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즉, 반대급부나 채권채무계약 없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은 보전금 집행 시 법령상 지급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181p

나. 분석의견

국민안전처가 집행한 일부 보전금은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거나 근거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보전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거나 장관 지시사항만을 근거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는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세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용	지급근거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3-301)	310-03	27	26	국민안전처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	장관 지시사항
기획조정실	310-03	2.4	0	국민안전처 발전방향	없음
기본경비(7011-254)	310-03	3.3	4	안전지킴이 상	장관 지시사항
계		32.7	30		

자료: 국민안전처

또한 법령상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다. 비상대비훈련에서 집행된 포상금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2조²⁾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훈련 여비를 비롯한 실비 보상 근거일 뿐, 훈련 포상금 지급근거는 아니다.

[법령상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세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용	지급근거
비상대비훈련 (1134-300)	310-03	24	24	훈련 포상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2조

자료: 국민안전처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1-2. 예산편성내역에 맞는 보전금 집행 필요

가. 현 황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2012년부터 “안전문화대상” 행사를 열고 있으며, 동 행사에서는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모·심사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 수상자 시상금으로 편성된 보상금(310-01목)은 3,700만원이다.

나. 분석의견

“재난안전 협력단체 성과 공유·확산대회” 행사는 사전계획 없이 개최되어 행사 관련 포상금 예산이 없음에도 시상금이 지급되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내에는 “안전문화대상” 수상자 시상금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안전문화대상”의 시상금으로 1,450만원만을 집행하고, 잔여 예산 중 1,970만원을 당초 계획에 없던 “재난안전 협력단체 성과 공유·확산대회”(2016. 12. 28.)를 개최하면서 시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보전금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세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용	지급근거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310-01	37	15	안전문화대상 수상자 시상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87조
		0	20	재난안전 협력단체 성과 공유·확산대회 시상금	

자료: 국민안전처

동 행사의 수상단체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이거나 국민안전처 소관 사업 관련 단체들이 다수 포함¹⁾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안전문화단체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1) (사)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는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1)사업의 안전신문고 운영 유관단체이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2)사업 수탁기관이다.

그러나 사전계획 없이 추진된 행사의 시상금을 본래 편성된 사업인 “안전문화대상” 시상금보다 많이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 협력단체 성과 공유·확산 대회 시상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시상내역	수상자	시상금액
재난안전 협력단체 유공자 개인표창	(사)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안OO	300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최OO	300
	국민안전처온라인기자단 : 박OO	300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한OO	300
	(사)패트롤맘대구시지부 : 이OO	300
	(사)세이프키즈코리아 : 홍OO	300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박OO	300
	(사)한국해양구조협회 : 김OO	300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장 : 김OO	300
재난안전 협력단체 활동성과 우수단체	최우수 : (사)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3,000
	우수 :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00
	우수 : 온라인안전디딤돌기자단	2,000
	우수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2,000
	장려 : 사단법인 패트롤맘	1,000
	장려 : (사)세이프키즈코리아	1,000
	장려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1,000
	장려 : (사)한국해양구조협회	1,000
	장려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1,000
	참가 : 대한산업안전협회	500
	참가 : 전국재해구호협회	500
	참가 : (사)한국안전시민연합	500
	참가 : (사)재해극복범시민연합	500
	참가 : (사)한국소방기술사회	500
	참가 : 시민안전파수꾼협회	500
계		19,700

자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등 연구기관·부서에 위촉연구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100명, 소방과학연구실에는 7명의 위촉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촉연구원 보수지급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매년 기간제근로자로 위촉연구원을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촉연구원은 100명 내외¹⁾이다. 동 연구원의 보수는 3개의 R&D 세부사업에 편성된 시험연구비(210-13목)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 전체 시험연구비 예산현액 107억원 가운데 27%인 29억원을 위촉연구원 보수로 지급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 사업 내 시험연구비(210-13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 (5160-603)	4,298	45	△120	4,223	3,577	237	409
위촉연구원 보수					1,198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5160-604)	4,320	0	△130	4,190	4,190	0	171
위촉연구원 보수					1,192		
재난상황관리기술개발 (5160-605)	2,105	0	△50	2,055	2,046	0	9
위촉연구원 보수					500		
시험연구비 합계	10,723	45	△300	10,468	9,813	237	589
위촉연구원 보수					2,890		

자료: 국민안전처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2017년 4월 기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촉연구원은 100명이다.

나. 분석의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위촉연구원 보수를 시험연구비에서 지급하여 왔으나, 시험연구비는 통합성 경비로서 장기간 고용되는 위촉연구원 및 간접적인 연구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적합하지 않다.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촉연구원 보수가 지급되는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도로 지급될 수 있는 통합성 경비¹⁾이다. 이는 시험연구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만을 정해두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험연구비의 용도에는 인건비인 일용임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위촉연구원 보수를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체 위촉연구원의 근속기간은 평균 20개월 수준이며,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20명,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도 6명에 이른다. 또한 위촉연구원 가운데 육아휴직자도 있는 등 장기근속자가 많아 시험연구비에서 지급되기에 적합한 성격의 인건비가 아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촉연구원 근속 현황]

(단위: 명)

근속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위촉연구원 수	22	58	10	4	0	6	100

주: 2017년 4월 기준

자료: 국민안전처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출, 인사, 업무계획 수립, 청사관리, 연구과제 관리, 홍보 등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상적인 연구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위촉연구원의 보수로 시험연구비에서 1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시험연구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험연구비의 편성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1)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①일용임금, ②일반수용비, ③공공요금 및 제세, ④폐복비, ⑤임차료, ⑥연료비, ⑦시설장비유지비, ⑧재료비, ⑨여비, ⑩연구개발비로 지급될 수 있다.

[직접적인 시험연구를 담당하지 않는 위촉연구원 담당업무 및 보수]

(단위: 원)

집행 내역	2016년 보수
지출, 서무보조, 인사, 청사관리, 홍보, 기관장 리더십 과제 지원 등 연구행정지원 위촉연구원 보수(8명)	181,435,545

자료: 국민안전처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2017년부터 위촉연구원 보수 전액을 2017년 신설된 상용임금²⁾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개선으로 보인다. 다만, 상용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나 사업비에 편성되므로, 향후 물가상승률,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관한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2.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위촉연구원 보수지급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은 소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부서로서, 2016년도부터 소방 R&D 실용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리빙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촉연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과학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위촉연구원은 6명 내외인데, 연구원의 보수는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R&D) 세부사업³⁾에 편성된 일용임금(110-03목)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 예산액 2억 5,6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 사업(R&D)]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소방안전 및 119구조· 구급기술 연구개발	19,600	0	0	19,600	19,508	0	92
리빙랩 운영	1,000	0	0	1,000	908	0	92
위촉연구원 보수	256	256	0	256	222	0	34

자료: 국민안전처

2) 상용임금(110-03목)은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로 편성되며, 2017년 신설된 예산비목이다.

3) 예산코드: 일반회계 7102-101

리빙랩(Living Lab)은 실제 생활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 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 베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연구개발과정 참여를 통해 연구과정에서의 실행착오를 줄이고, 신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과학연구실에 리빙랩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R&D) 사업 내 편성된 196억원 중 186억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출연금이며, 이 중 10억원은 리빙랩 시스템 운영경비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위촉연구원의 보수는 리빙랩 사업비에서, 명절휴가비·고용보험료 등은 인건비에서 지출되는 등 집행재원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예산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있다.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위촉연구원의 주요 과업은 리빙랩 연구 지원이며, 동 연구는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외 기타 인건비 중 일부 고용보험료 및 명절휴가비는 중앙소방학교 인건비 사업⁴⁾에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과목 상 4대 보험료가 연금지급금(320-03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일용임금(110-03목)에서, 고용보험료는 기타직보수(110-02목) 및 일용임금(110-03목)에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4) 예산코드: 일반회계 7101-100

[2016년 소방과학연구실 위촉연구원 보수 지급 현황]

(단위: 원)

지급내역	집행액	세부사업	예산과목
보수	204,655,040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	일용임금(110-03)
건강보험	6,507,570		
국민연금	9,244,640		
산재보험	1,485,420		
고용보험	2,470,560	중앙소방학교 인건비	기타직보수(110-02)
	874,420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	일용임금(110-03)
명절휴가비	7,056,690	중앙소방학교 인건비	기타직보수(110-02)

자료: 국민안전처

둘째, 소방과학연구실 위촉연구원은 2016년부터 추진된 리빙랩 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동 부서에서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기존 연구원과 단년도계약을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리빙랩 운영성파를 검토하여 지속적인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용임금보다는 상용임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 시스템은 소방R&D 현장실용성 강화를 위해 2016년 도입한 연구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소방기술·장비 등이 재난현장의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발되어 상용화에 실패한 사례가 많고, 중앙소방본부에서 시행하였던 구매조건부 사업(한국형소방방재장비개발보급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수요자 참여 및 환류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소방기술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R&D사업이 검증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 산하 국가재난안전연구원을 비롯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주요 국가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연구원 보수는 2017년부터 상용임금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촉연구원의 보수를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5) 예산코드: 일반회계 3132-301

III

개별 사업 분석

【現 행정안전부 소관】

1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공정관리 및 타당성검토 강화 필요

가. 현 황

우수저류시설설치¹⁾ 사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 도심지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다. 2016년 예산액 718억 3,9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우수저류시설설치	71,839	71,839	0	0	71,839	71,839	0	0

자료: 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은 침투홍수량²⁾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서 2016년까지 66개 시설(62개 지구)이 설치되었으며, 2017년 이후 6,242억원(국비 3,121억원)을 투자하여 81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하여 50%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2-301

2) 침투홍수량(Peak Flood)은 수공구조물의 설계에 있어 구조물이 수용가능한 최대의 홍수량을 말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의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의 국고부담분 예산액은 718억 3,9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685억 9,300만원(95.5%)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의 국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B/A)
	본예산	추경(A)								
330-03	71,839	71,839	71,839	71,839	9,346	81,185	68,593	6,999	5,593	95.5

자료: 국민안전처

그러나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2016년 본예산 1,436억 7,800만원 가운데 실집행액은 920억 1,900만원(64.0%)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515억 6,800만원(35.9%)이다.³⁾ 즉, 사업비 집행 시 국비부터 집행하여 국비 실집행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지방비 부담분 718억 3,900만원 중 집행액은 272억 500만원(37.9%)이며, 445억 8,9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37개 사업(계속 29, 신규 8) 중 이월액 없이 집행된 사업은 4개 사업에 불과하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71,839	71,839	143,678	64,815	27,205	92,019	6,979	44,589	51,568	45	45	90

자료: 국민안전처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사업조기(이월방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정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는 2016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현황으로, 이월(2015년도 본예산) 및 재이월(2014년도 본예산)액 286억 6,300만원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39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6억 2,100만원이 재이월되었으며, 110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6년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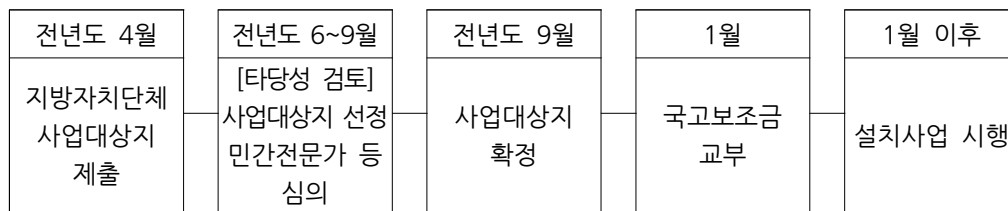
사업명		국비				지방비				전체
시·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률
서울	양재공원	2,282	1,000	1,282	56.2%	2,282	0	2,282	100.0%	78.1%
부산	수영	1,822	1,817	5	0.3%	1,822	1,817	5	0.3%	0.3%
	좌동	1,800	1,800	0	0.0%	1,800	1,800	0	0.0%	0.0%
	반여	1,459	1,459	0	0.0%	1,459	1,459	0	0.0%	0.0%
	서·금사	1,025	1,025	0	0.0%	1,025	0	1,025	100.0%	50.0%
	부산외대	1,718	1,718	0	0.0%	1,718	1,718	0	0.0%	0.0%
울산	옥동	848	133	715	84.3%	848	0	848	100.0%	92.2%
경기	수택	7,150	6,416	734	10.3%	7,150	0	7,150	100.0%	55.1%
충남	대천1	2,800	1,158	1,642	58.6%	2,800	0	2,800	100.0%	79.3%
	장항	4,969	4,569	400	8.0%	4,969	0	4,969	100.0%	54.0%
	동문	1,300	1,300	0	0.0%	1,300	0	1,300	100.0%	50.0%
	마전	1,500	1,500	0	0.0%	1,500	316	1,184	78.9%	39.5%
	불당	389	333	56	14.4%	389	0	389	100.0%	57.2%
전북	모현	2,262	2,262	0	0.0%	2,262	2,101	161	7.1%	3.6%
	신평	1,930	1,930	0	0.0%	1,930	1,230	700	36.3%	18.1%
	대실	3,314	3,314	0	0.0%	3,314	839	2,475	74.7%	37.3%
	전주초	1,400	1,400	0	0.0%	1,400	1,315	85	6.1%	3.0%
	매화	1,400	1,400	0	0.0%	1,400	1,330	70	5.0%	2.5%
	남계2	1,800	1,800	0	0.0%	1,800	1,630	170	9.4%	4.7%
	현포	1,350	1,350	0	0.0%	1,350	1,221	129	9.6%	4.8%
	삼례	1,800	1,800	0	0.0%	1,800	1,800	0	0.0%	0.0%
	송천1	500	500	0	0.0%	500	468	32	6.4%	3.2%
전남	벌고2	2,029	2,029	0	0.0%	2,029	50	1,979	97.5%	48.8%
	조곡	1,875	1,875	0	0.0%	1,875	43	1,832	97.7%	48.9%
	성동로타리	1,283	1,283	0	0.0%	1,283	1,096	187	14.6%	7.3%
	천암1	741	741	0	0.0%	741	149	592	79.9%	39.9%
경북	공단	4,915	4,915	0	0.0%	4,915	2,633	2,282	46.4%	23.2%
	교대	2,000	2,000	0	0.0%	2,000	1,600	400	20.0%	10.0%
	오포	2,170	2,170	0	0.0%	2,170	677	1,493	68.8%	34.4%
	남양	317	317	0	0.0%	317	254	63	19.9%	9.9%
경남	여좌	2,469	693	1,731	70.1%	2,469	0	2,424	98.2%	84.1%
	강누	3,761	3,402	359	9.5%	3,761	0	3,761	100.0%	54.8%
	팔용	300	245	55	18.3%	300	0	300	100.0%	59.2%
	읍내	800	800	0	0.0%	800	700	100	12.5%	6.3%
제주	오라	1,741	1,741	0	0.0%	1,741	0	1,741	100.0%	50.0%
	서중천	1,350	1,350	0	0.0%	1,350	0	1,350	100.0%	50.0%
	보목	1,271	1,271	0	0.0%	1,271	959	312	24.5%	12.3%
계		71,839	64,815	6,979	9.7%	71,839	27,205	44,589	62.1%	35.9%

주: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이월액이 없는 사업임.

자료: 국민안전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업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대상지를 제출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공사가 진행된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집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국민안전처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로서 보조사업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지역에 관한 서류조사 등을 수행하며, 이후 민간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그런데 2016년 사업이 취소된 3개 지구 중 대전 샘머리지구 및 밀양 송지지구 등 2개 지구는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로 선정되었다.⁴⁾ 대전 샘머리지구의 경우, 침수지역과 배수구역이 서로 달라 설치예정지역의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이 없는 사례이며, 밀양 송지지구는 하천의 영향으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애초에 우수저류시설이 아닌 배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침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는 사업타당성 검토과정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수사업의 특성상 전문가가 지리적 구조 및 배수 현황 등 물리적인 환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관한 현지조사는 관련 전문가 1명이 1~2일에 걸쳐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지조사 인원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 등 충실한 현지조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나머지 1개 지구인 제주 흘천지구의 경우, 2014년 타당성조사 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비를 43억원으로 추정하고 2015년 3월 설계를 착수하였으나, 2015년 사업부지 공시지가가 1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비 확보가 곤란해져 사업이 취소되었다.

가. 현 황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봉사단¹⁾ 운영사업은 안전문제 신고사이트 구축·운영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²⁾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동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11억 6,700만원 중 97.0%인 1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1,283	1,283	0	0	1,283	1,239	0	44
안전신문고 및 안전 모니터 봉사단 운영	1,167	1,167	0	0	1,167	1,133	0	34

자료: 국민안전처

나. 분석의견

국민안전처는 민간단체인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식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³⁾에 근거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 3,300만원을 지원하였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2010년 (구)안전행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안전문제 신고를 제보하는 등 안전문화 실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④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단위: 천원)

편성내역	예산비목	예산액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워크숍 개최)	일반수용비(210-01)	13,752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활성화(워크숍 임차료)	임차료(210-07)	2,000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사업비(210-15)	14,400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활성화(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사업추진비(240-01)	2,890
계		33,042

자료: 국민안전처

그러나 동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위탁사업비 1,440만원을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⁴⁾의 유지보수 사업에 지원하였는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로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는 홈페이지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민간보조형태로 집행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 관련 권역별 설명회 기념품 구입대금(일반수용비) 470만원을 안전모니터봉사단으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기념품 구입을 민간단체가 대행하게 한 것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단체 지원 시에 적정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 등 사업수행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⁵⁾는 재정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은 보조금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4)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는 2010년 6월 (舊)행정안전부에서 봉사단 회원들의 안전신고 참여 활성화 등을 주목적으로 구축하였고 광주통합전산센터에서 서버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가. 현 황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사업¹⁾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전문인력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1억 3,000만원 중 99.9%인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 원을 불용하였다.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0	0	130	0	130	129	0	1

자료: 국민안전처

동 사업은 안전교육이 분야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 안전교육 관련 자격증이 분야별로 제각기 운용되면서 신뢰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국민안전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수탁기관 별로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4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일정, 교육과목, 교육방식, 교육인력, 적정인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탁기관이 제시하게 하는 한편, 교육교재도 수탁기관이 자체 개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위탁교육사업을 시행하였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2-302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권역	수행기관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간	집행액
1권역(서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육일반, 생애주기별 안전, 교수 학습법, 프로그램개발, 체험·실습	'15. 11~'16. 2	33
2권역(경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본소양, 역량, 전문영역	'15. 10~'16. 1	36
3권역(충청)	(사)산업안전보건진흥원	1권역 프로그램과 유사	'15. 12~'16. 3	36
4권역(인천)	한국표준협회	안전의식고취, 안전지식 확보, 교수법 및 과정 설계	'15. 12~'16. 2	33

주: 집행액은 2015년 선급금과 2016년 준공금을 합한 금액임.

자료: 국민안전처

당초 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용역 4,500만원, 양성교육 시범 운영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2015년 9~10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2016년 초까지 진행된 반면,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용역은 2015년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2016년 4월에 완료되었다. 그 결과 각 수탁교육기관에 따라 교육내용 및 강사 구성 등이 다르게 사업이 실시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지역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바, 향후 본격적인 사업 시점에는 지역별 균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교육과정이 2주, 60시간에 불과하고 교육수료자의 활동실적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각 교육은 2주, 60시간 동안 안전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관리는 보건, 자연재난, 범죄, 화재,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데 동 사업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짧은 교육과정으로 인해 개괄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전문인력으로서의 교육강사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교육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지고, 수료자명단을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여 지자체 등에 안전교육강사로 추천하는 등 기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활동실적 모니터링 등 별다른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분야 및 관련 자격증 제도 설계, 인력양성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現 소방청 소관】

4

안정적인 국가인명구조견 양성 추진 필요

가. 현 황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 사업¹⁾은 인명구조견 양성·보급 및 핸들러 교육 등 인명구조견 운영 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동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7억 100만원 중 21.3%인 3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200만원을 이월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	1,600	1,600	101	0	1,701	362	1,332	7

자료: 국민안전처

인명구조견은 2년 내외의 양성·훈련기간을 거쳐 길러지며, 2017년 기준으로 26두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보급되어 있다. 중앙소방본부는 2021년 이후 총 75두를 운용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대구 중앙119구조본부 내 인명구조견 재난훈련장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재난구조견 양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명구조견 양성·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119구조본부는 2014년 12월 남양주에서 대구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 청사 내 국가인명구조견 재난훈련장²⁾ 설치의 필요성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3171-300

2) 재난훈련장은 재난환경을 구현하는 구조물·시설물로서, 재난붕괴·건물붕괴 훈련장 등을 갖춘 시설이다. 「인명구조견 관리운영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2조에 따르면 구조견은 재난구조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으로 구분되나, 동 훈령 제3조는 사고 발생빈도를 감안하여 재난1, 2급 구조견, 산악 1, 2급 구조견만 규정하고 있다. 구조견 훈련사는 산악지형이나 재난환경에 인명구조견을 반복적으로 노출시

이 제기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에 14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설계비 5,800만원 및 조달수수료 300만원만 집행되고, 13억 3,200만원은 이월되었다.

[인명구조건 재난훈련장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본조사설계비	25	25	0	0	25	23	0	2
실시설계비	38	38	0	0	38	35	0	3
시설비	1,314	1,314	0	0	1,314	3	1,309	2
감리비	16	16	0	0	16	0	16	0
부대비	7	7	0	0	7	0	7	0
계	1,400	1,400	0	0	1,400	61	1,332	7

자료: 국민안전처

당초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재난훈련장 건립 사업기간을 8개월(설계 2개월, 공사 6개월)로 잡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한꺼번에 계상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내 유사사례가 없어 외국시설 연구 등 1월부터 4월까지 자료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실시설계는 6월에 시작되어 9월에 완료되었으며, 설계 완료 시기에 수립된 “국가인명구조건 재난훈련장 신축공사 발주계획”에서는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수정되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 시의 설치계획이 추진과정에서 재검토되어 설계 및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제 준공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2017년 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119구조본부 이전 및 재난훈련장 건립 지연으로 인해 2014년 12월 이후 훈련을 시작한 인명구조건은 재난환경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산악구조건만 양성되고 있다. 따라서 인명구조건 재난훈련장 건립은 구조본부 이전 시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김으로써 인명구조건을 훈련하고 있는데, 산악지형 훈련의 경우 별도의 구조물이나 특수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재난환경에 인명구조건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재난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물·시설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재난구조건 양성시설인 남양주 도시탐색 재난훈련장은 인명구조건 전용 훈련장이 아닌 도시탐색 구조대원 훈련장이며, 재난구조건 훈련이 병행되는 형태로 운용되어 왔다.

둘째, 인명구조건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훈련사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명구조건은 총 26두인데, 시·도별 인명구조건 운용 현황을 보면, 중앙119구조본부를 제외한 17개 광역시·도 중 9개 시·도는 인명구조건이 운용되지 않고 있다.

[시·도별 인명구조건 운용 현황]

(단위: 두)

운용 시·도									미운용 시·도									계
중앙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5	3	3	2	3	3	3	3	1	0	0	0	0	0	0	0	0	0	26

주: 중앙은 중앙119구조본부이며, 중앙본부에서 운용 중인 5두는 미운용 시·도를 비롯한 각 시·도 요청 및 국제출동(지진, 쓰나미 등)에 지원됨.

자료: 국민안전처

이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는 본부 자체운용 구조건 24두를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각각 3두씩 운용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전체 구조건을 75두로 확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건 확대보급계획은 현재 미운용 시·도의 비율이 높고, 구조건의 운용실적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인명구조건 운용실적]

(단위: 건)

연도	운용 실적		
	출동횟수	생존자 구조	사망자 발견
2013	400	7	43
2014	753	15	10
2015	617	17	12
2016	589	14	17

자료: 국민안전처

그러나 인명구조건 훈련사는 2011년 사업시행 이후 계속 4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구조건 보급량 및 보급시기에 대한 불확실성³⁾이 많아 안정적인 구조

3) 국민안전처는 훈련과정에서 질병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로 인해 인명구조건 탈락가능성이 있어, 4명의 훈

건 양성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훈련사는 예산 및 기타 행정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구조건 훈련을 전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구조건 미운용 시·도의 신규보급요청 등 인명구조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연평균 5두의 보급으로는 은퇴건 대체양성만 가능할 것이므로 소방청은 훈련사 추가채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련사가 평균적으로 연평균 5두를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사업¹⁾은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지역별 119특수구조대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동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43억 4,100만원 중 84.6%인 36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700만원을 이월하고, 300만 원을 불용하였다.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4,356	4,356	0	△15	4,341	3,671	667	3
119특수구조대 임시청사운영	236	236	0	0	236	236	0	0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건립	1,906	1,906	0	0	1,906	1,356	550	0
차량 및 장비 보강	2,214	2,214	0	△15	2,199	2,079	117	3

자료: 국민안전처

119특수구조대는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특수재난사고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119특수구조대는 2017년 현재 전국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4년 11월 수도권 및 영남, 2015년 12월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가 발대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설계비가 전액 이월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일반회계 3171-304

2015년 12월 발대한 호남 119특수구조대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현재 별도의 청사가 없이 기존 소방서 및 중앙소방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에 19억 600만원(토지매입비 14억원, 기본설계 2억원, 실시설계 3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6년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집행되었고, 설계비 5억 5,000만원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이월되었다.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건립	1,906	1,906	0	0	1,906	1,356	550	0

자료: 국민안전처

신축사업이 지연된 주된 사유는 호남 119특수구조대의 청사부지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었기 때문인데²⁾,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의 부지는 2015년 11월에 결정되었으나 호남 119특수구조대 부지는 2016년 8월에야 결정되었다. 그런데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부지선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³⁾, 토지계약 등 이후 사업추진이 호남 119특수구조대 사업과 함께 진행됨에 따라 각각의 청사신축 기본계획은 2016년 10월 동시에 수립되었다.

2) 당초 호남 119특수구조대의 부지로 국민안전처 현안조정회의(2015. 11.)에서 장성군 소재 새마을연수원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부지협의를 결렬(2016. 7.)된 바 있다.

3) 부지매입비 8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현 부지 분양가 144억원보다 58억원이 부족하여 기획재정부와 부지매입비 증액 협의(86억원 → 144억원)가 2016년 7월에 완료되었다.

[호남,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청사신축 기본계획]

사업명		호남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수용시설		본관, 항공대, 종합훈련타워, 수난구조, 인명구조견 훈련센터	
사업비		283억원	377억원
부지규모		부지 101,919㎡ / 연면적 9,822㎡	부지 112,575㎡ / 연면적 9,822㎡
부지 선정 경과	부지공모	2016. 7.	2014. 12.
	부지접수	2016. 7. 18. ~ 7. 23.(13개소 신청)	2015. 4. ~ 7.(17개소 신청)
	부지평가	2016. 7. 27.	2015. 10.
	최종선정	2016. 8. 5.	2015. 11.
추진 계획	설계	2016. 10. ~ 2017. 6 → 2016. 12. ~ 2017. 09.(변경)	
	공사	2017. 12. ~ 2019. 10.	

자료: 국민안전처

동 계획에서는 설계를 2016년 10월에 시작하여 2017년 6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8월 최종 부지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7월~8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8월~9월) 및 ‘설계공모’(10월~12월)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말에 설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7년 9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편성된 사업비 180억원 중 상당액은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남 119특수구조대의 경우, 장성군 새마을연수원과 부지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대체 부지선정, 설계 및 건축공사 등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7월 한 달 간 신축청사 부지공모 및 접수, 부지평가를 완료하였는데, 부지선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개의 신축청사 사업비는 283억과 377억원이나 차액 94억원은 토지매입비 차이로 나머지 건축시설의 규모는 동일하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9,822㎡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본관, 항공대, 종합훈련타워, 수난구조훈련장, 인명구조견 훈련센터 등 각 시설물의 세부시설 규모도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현원 규모가 각각 46명, 21명으로 다르고, 관할구역 면적을 비롯하여 관할구역 내 인구·산업단지·원전여부·위험물제조소·주요지형 등 위험요인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특수구조대 관할구역의 범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설계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현황]

관할구역 현황	호남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면적	22,714km ²	33,516km ²
인구	590만명	689만명
국가산단	11	9
지방산단	113	207
원전시설	6	0
위험물제조소 등	19,659	26,375

자료: 국민안전처

둘째,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자산취득비 중 일부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화학재난합동센터 비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집행시기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사업 내 자산취득비는 4개 지역 119특수구조대에 필요한 출동차량 및 구조장비 보강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액 22억 1,400만원 중 20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다. 그런데 예산액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19특수구조대 소요 물품 및 장비구입액은 16억 2,500만원이고, 3억 4,300만원은 화학재난합동센터 소요 비품, 1억 1,100만원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요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119특수구조대 신청사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산취득비(430-01)	2,214	2,214	0	△15	2,199	2,079	117	3

자료: 국민안전처

[타기관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물품 내역	집행액
화학재난합동센터 신청사 집기 구입	냉장고, 세단기 등 15종 1,704점	343
중앙119구조본부 집기 구입	냉장고, 세탁기 등 10점	111
계		454

자료: 국민안전처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화학재난합동센터 내 화학구조센터가 119특수구조대의 소속 기관이므로 특수구조대 시설보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나, 중앙119구조본부와 화학재난방재센터 운영을 위한 각각의 세부사업이 별도로 편성⁴⁾되어 있고 2016년에 자산취득비가 각각 1억 6,500만원, 21억 3,200만원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사업에서 다른 기관의 물품을 구입한 것은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관련 사업의 실제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이러한 집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집행액 21억원 가운데 9억 6,100만원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연도별 장비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시기에 물품을 구매·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19특수구조대 자산취득비 집행시기]

(단위: 백만원)

집행월	5	6	7	8	9	10	11	12	계
집행액	5	16	16	153	594	207	128	961	2,079

자료: 국민안전처

4)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장비등 확충 및 운영(일반회계 3171-301),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일반회계 3171-3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12억 2,400만원(11.6%)이 감소한 9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3억 4,900만원(889.1%)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939	10,512	10,512	9,288	△1,224	8,34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162억 500만원(2.5%)이 감소한 6,219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299억 3,800만원(113.0%)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292,054	638,197	638,197	621,992	△16,205	329,93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5억 1,200만원이며, 92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512	10,512	10,512	9,288	9,288	0	0	88.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381억 9,7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6,21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38,197	638,197	638,197	621,992	249	15,956	97.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② 재보궐선거관리 사업, ③ 재외선거관리 사업 등이 있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은 공정선거지원단 및 중앙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법정 운영기간을 초과하는 20일분 2,100만원이 감액(1,921억 3,900만원 → 1,921억 1,800만원)되었고,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일에 동시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관련 예산 1억원이 전액 감액(1억원 → 0원)되었다.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의 파견인력 업무지원 예산 1억 1,200만원이 감액(87억 9,300만원 → 86억 8,1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 사업, ②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등이 있다.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중 선거·정당관계자 과정이 5억원 증액(20억 100만원 → 25억 100만원)되었고,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선거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34억 2,100만원이 증액(21억 6,900만원 → 55억 8,900만원)되었다²⁾.

1)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1.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2)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1.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②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③ 열린 소통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④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 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⑥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 ⑦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회 역량 강화, ⑧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정치환경 조성, ⑨ 세계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은 사업집행 과정에서 일부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목조정으로 위탁사업비를 15억 7,200만원 증액하여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1회 개최할 계획이었던 국회의원선거평가회를 2회 개최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둘째,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투표관리인력을 미확보하였고,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을 과다편성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과 투표관리인력이 당초 계획과 법령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함에 따라 관련 수당 및 사례금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재외선거 투표자수를 과다 추정하여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셋째, 위탁선거관리 사업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의 위탁관리 실적과 경선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선관리 예산 1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당내 경선의 위탁관리 실적이 전무하여 관련 예산을 미집행하였다.

1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¹⁾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921억 1,800만원 중 98.0%인 1,88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주요 비목별 집행 내역은 일반수용비 879억 4,900만원, 특근매식비 83억 9,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9억 300만원, 임차료 110억 8,800만원, 위탁사업비 41억 3,400만원, 업무용역비 5억 4,400만원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비목 중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을 조정감액하여 일반수용비와 위탁사업비를 증액 집행하였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회의원선거관리	192,118	192,118	0	±12,549	192,118	188,241	0	3,877
일반수용비	83,401	83,401	0	△1,770 6,883	88,514	87,949	0	565
특근매식비	11,409	11,409	0	△2,492 260	9,177	8,397	0	780
공공요금 및 제세	27,762	27,762	0	△4,091 1,390	25,061	24,903	0	158
임차료	13,321	13,321	0	△3,238 1,230	11,313	11,088	0	225
위탁사업비	2,643	2,643	0	△80 1,652	4,215	4,134	0	81
업무용역비	530	530	0	20	550	544	0	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비(210목)의 일부 세목을 조정하였는데, 예컨대, 공공요금 및 제세 9억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설치 보관사업을 실시하였고, 특근매식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등 15억 4,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개표사무원 수당 등 각급위원회 절차사무관리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운영비(210목)의 주요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으로		사 유
목-세목	금액	목-세목	금액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906	일반수용비(210-01)	906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보관사업 실시
특근매식비(210-05)	△719	일반수용비(210-01)	1,540	개표사무원 수당 등 각급위원회 절차사무관리 부족분 충당
임차료(210-07)	△650			
차량·선박비(210-10)	△171			
일반수용비(210-01)	△75	임차료(210-07)	285	개표의 공정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투표지 심사계수기 추가 임차, 선거물품 집중보관 등에 활용
특근매식비(210-05)	△515			
연료비(210-08)	△90	위탁사업비(210-15)	411	
차량·선박비(210-10)	△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세부내역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투·개표관리가 533억 3,300만원, 선거관리일반이 304억 5,500만원, 사전투표관리가 300억 6,000만원, 위법행위 예방단속이 293억 7,300만원, 후보자선거운동관리가 257억 4,600만원, 계도·홍보가 125억 5,600만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이 40억 3,100만원 등이다.

세부내역별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큰 사업과 사유를 살펴보면, 투·개표관리의 경우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40억 3,100만원 초과하였는데, 이는 사전투표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리인력(투·개표 사무원, 투표안내 도우미 등)이 증가하여 각종 수당 및 사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계도·홍보의 경우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11억 5,400만원 초과하였는데, 이는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관련 캠페인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사전투표관리는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12억 100만원 적었는데, 이는 사전투

표소 설치비 등이 당초 예산액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법행위예방단속은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48억 4,600만원 적었는데, 이는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운용규모를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세부내역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예산액(A)	예산현액	집행액(B)	차이(A-B)	집행률(B/A)
투·개표관리	49,302	49,973	53,333	△4,031	108.2
선거관리일반	29,655	30,637	30,455	△800	102.7
사전투표관리	31,261	30,908	30,060	1,201	96.2
위법행위예방단속	34,219	33,935	29,373	4,846	85.8
후보자선거운동관리	27,638	25,774	25,746	1,892	93.2
제도·홍보	11,402	12,250	12,556	△1,154	110.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5,552	5,552	4,031	1,521	72.6
보전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654	654	834	△180	127.5
정책선거추진	1,333	1,333	735	598	55.1
선상투표관리	664	664	476	188	71.7
선거여론조사심의	185	185	379	△194	204.9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 운영	253	253	263	△10	104.0
총 계	192,118	192,118	188,241	3,877	98.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세목조정으로 추진한 일부 내역사업의 비효율적 집행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운영비(210목) 중 일부를 세목조정하여 위탁사업비를 15억 7,200만원 증액하였고, 위탁사업비 집행액은 41억 3,400만원이었다.

위탁사업비 사업 중 당초 예산에 없었던 사업으로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보안 용역’,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으로 집행액은 총 10억 3,200만원이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위탁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 없었던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집행액	사업내용	관련 세부사업 (내역사업)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보안 용역	934	전국 253개소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	-
공보활동 역량강화 행사위탁	18	시·도 선관위 공보업무 담당자 대상 언론 매체별 취재 지원 및 대응방법 강의 (2016.4.28~29)	홍보국 기본경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고도화	19	홈페이지 기능개선 (콘텐츠 현행화, 편의기능 강화 등)	위법행위예방활동 (홈페이지 고도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20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 후보자 검색기능 강화	-
똑똑한 선거법령정보 알리미 기능개선	15	시기별·사안별 주요 생활·의정활동 관련 법규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국회의원선거관리 (통합법규안내시스템 고도화)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 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6	후보자의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 비교· 검색을 위한 기능 개선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대비 과천청사 특별방호 용역	10	선거기간 중 청사주변 경비 등 위원회 청사방호 강화(2016.3.16.~4.14)	청사관리 (청사 유지관리)
합 계	1,03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한 일부 사업은 당초 예산에 없고 시급성이 떨어지며, 타 세부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사업비 증액을 통해 추진하였고 당초 예산에 없던 7개 사업 중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보안 용역’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보안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집행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사업은 시급성이 없고 타 세부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다. ‘공보활동 역량강화 행사위탁(1,800만원)’은 시·도 선관위 공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언론매체별 취재 지원 및 대응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서 선거일정이 끝난 2016년 4월 말에 추진되었고 사업내용상 홍보국 기본경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고도화(1,900만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2,000만원)’, ‘똑똑한 선거법령정보 알리미 기능개선(1,500만원)’,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1,600만원)’ 등의 사업은 모두 홈페이지 기능개선(콘텐츠 현행화, 편의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시급성이 없으며, 타 세부사업인 ‘위법행위예방활동’ 등의 내역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대비 과천청사 특별방호 용역(1,000만원)’은 선거기간 중 청사주변 경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방호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었다.

1-2. 국회의원선거 평가회의 사업의 과다집행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내역으로 국회의원선거관련 제도개선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관련 회의장 사용료, 강사사례금, 회의자료 인쇄 등 7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선관위 사무처 종합평가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평가회, 13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평가회 등이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된 경비로 총 1억 5,454만원이 집행되었다.

[국회의원선거관련 제도개선평가회 개최 예산 및 실제 집행액]

(단위: 천원)

예산액		실제집행	
내역	예산액	내역	집행액
- 회의장 사용료, 강사사례금 - 회의자료 인쇄, 결과보고서 인쇄 등	7,620	- 중앙선관위 사무처 종합평가회 관련 경비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평가회 관련 경비 - 시·도선관위 평가회 관련 강사 사례금 행사물품, 평가회장 사용료 등	154,537

주: 실제 집행은 중앙선관위와 13개 시·도 선관위의 평가회 관련 집행내역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관련 제도개선 평가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불요불급한 평가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행사 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국회의원선거관련 제도개선 평가회의’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 762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절차사무 평가회 및 종합평가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평가회, 13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평가회 등으로 1억 5,454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하였다.

특히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의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후 5월 초

에 평가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연도말인 12월에 비슷한 성격의 국회의원선거 평가회를 다시 개최하여 평가회 회의장 사용료, 행사물품 관련 경비를 지출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평가회를 개최할 때마다 기념품을 제작한다거나, 평가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반기에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국회의원선거 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조기 대통령선거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개최하려던 교육을 앞당겨 개최한 것으로 상·하반기 평가회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관련 선거사무 종사자들이 선거관리와 제도 관련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기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계획에 없었던 평가회를 개최하고 행사경비를 대규모로 추가 지출한 것은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전국 단위 선거 이후 선거관련 평가회가 내실있게 개최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관련 제도개선 평가회 개최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집행부서(개최수)	집행내역	집행액
중앙선관위 절차사무 평가회	중앙선관위 사무처	홍보물품, 사무용품 등	7,676
중앙선관위 종합평가회	중앙선관위 사무처	종합평가회 분야별 우수사례 모음집 제작, 외부강사 사례금, 교육교재 제작 등	21,82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평가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념품 제작(2400천원), 토론자 및 발제자 사례금, 회의장 사용료 등	5,865
시·도 선관위 평가회	부산광역시 선관위(1회)	평가회 관련 물품구입비, 평가회의장 사용료 등	6,188
	울산광역시 선관위(1회)	회의장 사용료, 문화탐방비 지급, 평가회 준비물품 구입, 특별강사 수당 지급 등	11,977
	경기도 선관위(1회)	관련 진행물품 구입, 리플릿 제작, 회의장 사용료 지급 등	10,798
	전라남도 선관위(1회)	외부강사 사례금, 행사물품 구입, 평가회 행사비, 평가회 장소 사용료 등	7,619
	전라북도 선관위(2회)	평가회 사례금 지급, 기념품 제작(5,000천원), 평가회 장소 사용료 등	24,087
	충청북도 선관위(1회)	평가회 관련 물품구입, 평가회장 사용료 지급 등	4,413

구분	집행부서(개최수)	집행내역	집행액
	경상북도 선관위(1회)	평가회 관련 물품구입(양산), 평가회장 사용료 등	3,498
	강원도 선관위(2회)	평가회 관련 물품구입(USB메모리), 평가회장 사용료, 안내현수막 제작 등	17,727
	충청남도 선관위(2회)	평가회 관련 기념품 구입, 평가회장 사용료, 평가회 행사비 등	14,998
	광주광역시 선관위(1회)	평가회 관련 물품구입, 평가회장 사용료 등	1,011
	대전광역시 선관위(1회)	현장체험비, 평가회 세미나실 사용료 등	1,540
	서울특별시 선관위(1회)	평가회 소요물품, 평가회장 사용료 등	12,448
	세종시 선관위(1회)	평가회 운영물품, 평가회 세미나실 사용료, 강사료 지급 등	2,867
합 계			154,53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외선거관리 사업¹⁾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와 재외선거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12억 5,000만원 중 86.2%인 97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주요 내역별 집행액은 재외선거관리일반 73억 3,800만원, 공명선거 계도홍보 11억원, 위법행위 예방단속 7,200만원, 재외선거 인력운영 11억 9,300만원 등이다.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선거관리	8,681	8,681	0	△55 2,624	11,250	9,703	0	1,547
재외선거관리일반	6,245	6,245	0	△55 2,624	8,814	7,338	0	1,476
공명선거 계도홍보	1,100	1,100	0	0	1,100	1,100	0	0
위법행위 예방단속	84	84	0	0	84	72	0	12
재외선거 인력운영	1,252	1,252	0	0	1,252	1,193	0	5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를 위하여 총 169개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총 198곳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재외투표를 실시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 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수는 11개가 늘어났고 재외투표소 수는 40곳이 늘어났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투표자 수는 총 63,797명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 비해 7,341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추정재외선거권자수 대비 투표율은 3.22%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0.69%p 증가하였다. 반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5

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확정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41.4%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4.3%p 감소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자수 및 투표율 현황]

(단위: 명, %)

재외선거명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A)	확정선거인수 (B)	투표자수 (C)	투표율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C/A)	확정선거인수 대비(C/B)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4)	2,233,193	123,571	56,456	2.53	45.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4)	1,978,197	154,217	63,797	3.22	41.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관리인력 미확보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69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재외투표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기간 동안 198개 재외투표소에 책임위원,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안내요원(도우미), 경비요원 등의 투표관리인력을 운영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주요 투표관리인력의 운영내역과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169개 재외 공관별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공관별 5명씩 총 845명이었으나 실제 위촉된 위원은 620명이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다.

투표사무원은 책임위원의 지시를 받아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서는 총 4,402명(연인원)이었다. 투표사무원의 수당 및 사례금으로 4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사람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서는 총 2,500명(연인원)이었다. 투표참관인의 수당으로 2억 500만원이 집행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 및 투표관리인력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위촉 및 고용인원		수당 및 사례금 집행액
	예산상 정원 및 고용	실제 위촉 및 고용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45명 (공관당 5명)	620명 (공관당 3.7명)	217
투표사무원	연인원 6,228명 (투표소당 31.5명)	연인원 4,402명 (투표소당 22.2명)	456
투표참관인	연인원 6,192명 (투표소당 31.3명)	연인원 2,500명 (투표소당 12.6명)	205
합 계			87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과 투표관리인력이 당초 계획과 법령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함에 따라 관련 수당 및 사례금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의 법령상 정원은 845명이었으나 실제 위촉된 위원수는 620명이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의 회의 관련 수당의 집행액은 2억 1,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18조2) 에 의하면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2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각 1명, 공관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인원이 정원보다 적은 것은 국회 교섭단체 정당추천위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의 정당 추천위원 정수는 338명이었으나, 실제 위촉된 위원은 113명으로서 위촉률이 33.4%에 불과하였다. 또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2개 정당 모두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3명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공관이 전체 공관(169개)의 59.8%인 101개에 달하였다.

정당추천 재외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이 저조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 재외선거관리위원 위촉률은 38.9%였고,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위촉률은 41.4%였다.

2) 「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②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역대 선거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단위: 명, 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원	실제 위촉	위촉률	정원	실제 위촉	위촉률	정원	실제 위촉	위촉률
중앙선거위 지명	338	338	100.0	316	316	100.0	328	328	100.0
공관장추천	169	169	100.0	158	158	100.0	164	164	100.0
정당추천	338	113	33.4	316	123	38.9	328	136	41.4
합 계	845	620	73.4	790	597	75.6	820	628	76.5
3인 위원회 구성공관	101(59.8)			85(53.8)			83(50.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제19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제18대 대통령선거총람」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투표참관인의 경우 연인원 6,192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위촉된 투표참관인은 연인원 2,500명이었고, 이에 따라 관련 수당의 집행액은 2억 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투표사무원의 경우 연인원 6,228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운영된 인력은 연인원 4,402명이었고, 이에 따라 관련 수당 및 사례금의 집행액은 4억 5,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1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투표참관인의 운영이 저조한 것은 정당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투표참관인 신고인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재외투표소별 투표참관인을 2명까지 신고할 수 있어 연인원 4,752명의 투표참관인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실제 정당 신고인원은 연인원 816명으로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2명을 자체 선정하여 참관하게 한 투표참관인은 총 1,684명(연인원)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 및 투표관리인력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및 계획		실제 집행		차이 (A-B)
	내역	예산액 (A)	내역	집행액 (B)	
재외선거관리위원 수당	\$70×5명×4.5회×172공관 (위원정원 845명)	309	위원 위촉인원 620명	217	92
투표참관인 수당	\$35×2명×3정당×6일×172투표소 (연인원 6,192명)	247	연인원 2,500명 (정당추천 816명, 자체선정 1,684명)	205	42
투표사무원 수당 및 사례금	\$70×1,038×6일 (연인원 6,228명)	497	연인원 4,402명(공무원 366명, 행정원 1,743명, 일반인 2,293명)	456	41
	합 계	1,053	합 계	878	17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2.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내역 중 재외선거 투표자 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이 있다.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은 재외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용지를 국내에 등기우편으로 회송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2016년도 예산은 3억 2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4,2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g 무게의 투표용지 등기우편 단가 1,930원, 재외투표자 수 313,283명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등기우편 단가는 2,220원이었고 재외투표자 수는 63,797명이었다.

[2016년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예산		2016년 실제 집행	
	내역	예산액	내역	집행액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	1,930원×313,283명×0.5 (우편단가×재외투표자수×조정률)	302	2,220원×63,797명 (우편단가×재외투표자수)	14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자 수를 과다 추정하고 이에 따라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 예산을 과다편성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양대 재외선거 및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자수를 313,283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치러진 3차례의 재외선거에서 확정(등록)선거인수는 25만명을 넘어선 적이 없고 투표자수도 16만명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자수를 30만명 이상으로 추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치리질 재외선거에서 그동안의 선거결과를 반영한 투표자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통해서 투표자수와 연동이 되는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대 재외선거 확정선거인수 및 투표자수 현황]

(단위: 명, %)

선거명	추정 재외선거권자수(A)	확정선거인수	투표자수(B)	투표율(B/A)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233,193	123,571	56,456	2.53
제18대 대통령선거	2,233,193	222,389	158,225	7.0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978,197	154,217	63,797	3.2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각 연도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위탁선거관리 사업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 경선의 공정한 위탁관리와 공공단체 위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4억 6,100만원 중 17.9%인 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1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주요 내역별 집행액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경선관리’는 예산현액 11억 9,2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는 예산현액 2억 6,9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선거관리	1,461	1,461	0	±14	1,461	261	2	1,198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경선관리	1,192	1,192	0	0	1,192	27	0	1,165
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	269	269	0	±14	269	234	2	3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경선관리의 대규모 불용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내역 중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경선관리’ 사업으로 11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선거의 당내 경선 위탁이 총 73.8회(246선거구×3정당×0.1), 재보궐선거의 당내 경선 위탁이 8회(4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1-306

선거구×2정당)로 총 81.8회의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할 것으로 계획하였고 경선별 비용을 14,582천원으로 설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실제 집행은 경선관련 소모품 2,700만원이었고, 경선 위탁 관련 집행액은 전무하였다.

[2016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경선관리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예산		2016년 실제 집행	
	내역	예산액	내역	집행액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경선관리	· 14,582천원(경선 회당비용)×81.8회(경선 위탁수)	1,192	· 경선 관련 소모품 (경선 위탁 관련 집행 전무)	27
	경선회당 비용 · 투표장비, 소모품, 장소임차료 등 · 위원 및 투개표 사무원 수당 등			
	경선 위탁수 · 국회의원선거: 246선거구×3정당×0.1=73.8회 · 재보궐선거: 4선거구×2정당=8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의 위탁관리 실적과 경선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선관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관련 예산을 대규모 미집행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와 관련하여 총 81.8회의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관련 예산 1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내 경선의 위탁관리 실적이 전무하여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미집행하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2016.3.3. 확정)되어 주요 정당이 경선위탁 신청기한(2016.2.15.) 내에 위탁신청을 하지 못하고,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역대 선거 중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내 경선 위탁관리 건수는 평균 1.3건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총 81.8회의 당내 경선 위탁관리를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해인 2008년은 당내 경선 위탁이 없었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위탁 3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위탁실적이 없었다.

당내경선의 실시 및 위탁 여부는 정당의 내부사정에 따라 유동적이고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과거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하여 미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경선관리(위탁) 건수]

(단위: 건)

연도	위탁건수	위탁관리 내역
2007	3	제17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위탁
2008	0	-
2009	0	-
2010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위탁
2011	0	-
2012	3	제18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위탁(2),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위탁(1)
2014	362	지방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의 당내 경선 위탁
2015	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위탁
2016	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위탁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2. 민간 위탁선거경비 관련 제도개선 필요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경선관리’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로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단체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민간단체 위탁선거경비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수·산림조합장 선거 54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11회 등 총 67건의 위탁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탁의뢰단체로부터의 위탁선거경비 18억 6,800만원을 납부받아 1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200만원을 반환하였다.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외 위탁선거경비 수납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선거종류	선거수	납부액	집행액	반환액
농·수·산림조합장	54	1,447	1,100	347
농협중앙회장	1	55	39	16
대한체육회장	1	70	38	32
새마을금고 임원	11	296	249	47
합 계	67	1,868	1,426	44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단체 선거의 위탁관리경비를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외로 운영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의 수입·지출을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탁선거경비를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별도 계좌에 예치한 후 선거관리경비로 지출하고 정산차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²⁾

2) 세부절차는 「선거관리경비 산출(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 경비납부(위탁주체) → 별도계좌 신설(중앙선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집행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규모, 시기, 선거운동방법 등의 예측가능성도 낮으며,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면 세입고지서 발부·납부, 예산의 재배정(중앙 → 시·도 → 구·시·군)³⁾, 자금 배부 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 기간 내에 진행되는 위탁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탁선거경비의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위 및 지역선관위) → 관련경비 지출(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 집행잔액 반납(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순으로 진행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예산의 일부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배정하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A-WEB 운영경비의 회원국간 재정분담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¹⁾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한국선거제도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36억 4,700만원 중 98.5%인 3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내역별 집행액으로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운영지원금 18억 2,800만원, 선거관계자 역량강화 8억 3,300만원 등이 있다.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3,647	3,647	0	±23	3,647	3,594	0	53
A-WEB운영지원금	1,835	1,835	0	0	1,835	1,828	0	7
선거관계자 역량강화	837	837	0	0	837	833	0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WEB은 세계 102개국이 참여하는 선거기관 관련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4년에 설립되었고 사무처는 인천 송도에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의 운영지원금을 2014년부터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고 있다.

2016년 A-WEB 운영지원금의 세부내역별 집행액은 인건비 7억 4,700만원, 기본경비와 사업비가 포함된 운영비 10억 8,000만원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3-334

[2016년 A-WEB 운영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 인건비	747	747	- 국외파견자 지원금, 직원 보수
■ 운영비	1,088	1,080	
- 기본경비	456	454	- 사무용품,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 직책수행경비, 국제업무활동비
- 후발민주국가 지원	143	143	- 사업타당성조사 국외출장여비 등
- 선거제도 연구 등	236	236	- 선거제도 DB 구축 및 홈페이지 유지비 - 시드니대학교 공동연구비, 상설 선거체험관 운영
- 국제기구협력	253	248	- 집행이사회 통역인건비, 국외여비, 기타 제경비 - 홍보 및 자금모집을 위한 국외여비 등
합 계	1,835	1,82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출범 4년차인 A-WEB은 세계 10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임에도 운영경비 전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향후 회원국간 재정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014년 출범 이후 2016년 현재까지 A-WEB 운영경비는 거의 대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민간경상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A-WEB의 운영지원금이 매년 증가(2014년 963백만원 → 2015년 1,314백만원 → 2016년 1,828백만원 → 2017년 1,828백만원)하고 있지만, 2016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A-WEB에 국제분담금을 납부하는 회원국은 없었다.

또한 2017년 현재 A-WEB 사무국의 인력은 총 28명인데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도정원이 5명(2·3급 1명, 3·4급 1명, 4·5급 2명, 6급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견이 3명(5급 1명, 7급 2명), 외교부 파견이 1명, 자체 채용이 19명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도정원 및 파견직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015년 8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연회비 1만달러 납부가 결정되어 2017년부터 회비가 납입되고 있으며, 외국의 공여기관을 대상으로 펀드레이징 및 ODA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등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통해

자체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비로 마련된 연간 약 12억원 규모의 재원은 주로 총회·집행이사회 개최 시 해당 회원국의 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WEB의 출범을 주도하였다는 점,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범 초기에 우리나라가 운영경비를 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A-WEB이 선거와 민주주의 분야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경비 중 선관위 지원금의 비중을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의 파견인력 또는 자체채용 비중을 높임으로써 선관위의 인력이 과다하게 파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공명선거기반조성¹⁾ 사업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상시홍보 활동과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2억 4,700만원 중 99.8%인 1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별 집행액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4억 9,700만원, 공명선거 저변 확산 7억 4,700만원이다.

동 사업의 목적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공명선거 저변확산 등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재교부되고 있다.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명선거기반조성	1,247	1,247	0	±54	1,247	1,244	0	3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552	552	0	△54	498	497	0	1
공명선거 저변 확산	695	695	0	54	749	747	0	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동 사업의 예산을 재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 동 사업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부문에 지출하였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등을 목적으로 동 사업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교부받았다.

그런데 2016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정착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3-332

을 위한 홍보 사업 이외에 사무실 운영 및 잡비(신문대금, 명패제작, 프린터 토너 구매 등)에 지출하거나 위원회 청사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지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사업에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 선관위에 교부하였지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받은 예산을 홍보사업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하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홍보사업 이외에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의 주요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천원)

지역 선관위명	주요 사용내역	지출액
인천광역시 선관위	신문대금, 청사 홍보시설물 등 경비, 명패제작	3,326
충청남도 선관위	칼라프린터 토너, 위원회 청사 현황판 등 시설물 경비	2,651
경기도 선관위	3분기 신문대금	1,393
대전광역시 선관위	복사기 소모품 구입	872
강원도 선관위	프린터 토너 구입	752
포항시 남구 선관위	위원회 청사 보수 공사 대금 지급	575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복사용지 구입	580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	복사용지 구입	565
전라북도 임실군 선관위	사무기기 프린터기 토너등 구입	696
부산 북구 선관위	업무용 용품 제작	69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예비금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금의 2016년도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98.3%인 4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비목별 집행액은 일반수용비 300만원, 기타운영비 9,200만원, 사업추진비 1억 9,9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 5,800만원 등이다.

[예비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비금	460	460	0	±3	±460	460	452	0	8
예비금	460	460	0	0	△460	0	0	0	0
일반수용비	0	0	0	3	0	3	3	0	0
기타운영비	0	0	0	△3	100	97	92	0	5
사업추진비	0	0	0	0	200	200	199	0	1
특정업무경비	0	0	0	0	160	160	158	0	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금의 일부를 직원 격려금, 업무추진 활동비 및 각종 행사 개최비용 등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하여 예비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금의 비목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운영비 9,200만원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137-430

대부분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으로, 사업추진비 1억 9,900만원은 업무협의회 개최와 직원 격려 간담회로 지출되었고,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직무·감찰활동 관련 업무추진비와 업무협의회 개최 경비로 지출되었다.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²⁾에 근거하여 예산에 계상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례적으로 발생되어 예측 가능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의 집행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금의 일부를 소속 직원들의 축·조의금, 격려금, 업무추진 활동비, 간담회나 각종 행사 개최비용 등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하였다. 이는 예비금 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금의 비목별 집행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기타운영비(210-15)	97	92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사업추진비(240-01)	200	199	업무협의회 개최, 직원 격려 간담회 등
특정업무경비(250-03)	160	158	예산·직무·감찰활동 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 개최 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부서는 특정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음에도 예비금 비목 중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과, 선거연수원, 총무과 등 수사·감사·예산·조사 등과 관련없는 부서에도 특정업무경비를 재배정하여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건비·선거관리경비·정당보조금 등 법정경비가 전체 예산의 80~90%를 차지함에 따라 269개 지역위원회의 기본경비가 일상적으로 부족함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국회법」 제23조, 「법원조직법」 제82조, 「헌법재판소법」 제11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적 집행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비금이 일상적·경상적 경비에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업무경비를 조사·예산·감사 등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예비금 중 특정업무경비의 부서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집행부서	집행내역	집행액
경기도 선관위 사무처	중점과제 추진 간담회, 간부회의 간담회 등	3,000
중앙선관위 사무처 감사관실	감사업무수행경비 지급	9,454
중앙선관위 사무처 기획재정과	예산관련 업무협의	18,009
중앙선관위 사무처 정보기반과	각종 현안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7,000
중앙선관위 사무처 공보과	언론관계자 업무협의 등	7,000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연수원 사업관련 업무협의 개최	4,859
중앙선관위 사무처 법제과	업무관련 의견청취	7,000
중앙선관위 사무처 선거1과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17,000
중앙선관위 사무처 조사1과	선거범죄 정보수집 조사활동비 등	6,994
중앙선관위 사무처 총무과, 재무관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49,987
서울특별시 선관위, 세종시 선관위	광역조사팀 예방단속 활동 등	3,785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유관기관 업무협의	20,151
합 계		154,23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심의 |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명현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오명희 예산분석관
김경수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지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8월 16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26-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